



2022.8.

국회예산정책처 | 결산 분석

# 2021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정무위원회]

NABO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21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 결산분석시리즈 II

### 2021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총괄** | 최병권 예산분석실장

**기획·조정** | 서세욱 사업평가심의관  
이현종 예산분석총괄과장  
박주연 산업예산분석과장  
김현중 사회예산분석과장  
이종구 행정예산분석과장  
전용수 경제산업사업평가과장  
김애선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  
이은경 공공기관평가과장

**작성** | 김윤성 예산분석관  
김용오 예산분석관  
김국찬 예산분석관  
강지혜 예산분석관

**지원** | 김범준 예산분석관보  
장유진 행정실무원  
최보경 자료분석지원요원

본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문의 :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 02) 6788-3769 | eba@nabo.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결산분석시리즈 II

# 2021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 정무위원회 】

2022. 8.

---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2022. 8. 5.)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

# 발간사

2021년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정부는 총 2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소상공인지원, 취약계층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육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하였습니다.

정부가 지난 5월 31일 국회에 제출한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총수입은 570.5조원, 총지출은 601.0조원으로 관리재정수지는 전년 대비 21.4조원이 개선되어 90.6조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정의 적극적인 운용으로 2021년 말 기준으로 국가채무는 전년 대비 120.6조원이 증가한 967.2조원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효율적인 결산 심의 과정을 지원하고자 「2021회계연도 결산 분석시리즈」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총괄 분석」, 「위원회별 분석」, 「공공기관 결산 분석」, 「2020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 「성인지 결산서 분석」 등 총 5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 「총괄 분석」에서는 재정건전성,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증액사업 등 재정 전반에 걸친 주제에 대해 분석하는 한편, 소비활성화지원 사업, 소상공인지원 사업, 주거안정지원 사업,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등 주요 재정정책을 선별하여 심층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② 「위원회별 분석」에서는 각 부처의 개별사업 단위로 집행 상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었고, ③ 「공공기관 결산 분석」에서는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④ 국회 결산 심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2020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을 작성하였으며, ⑤ 「성인지 결산서 분석」을 통하여 성인지 제도 운영 전반과 각 부처 성인지 대상사업을 점검하였습니다.

본 보고서가 국회의 결산 심의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으로 국회의 예·결산 심의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022년 8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임 의 상



## 정무위원회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I. 결산 개요

- 1. 현 황 ..... 3
- 2. 2021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 8
- 3. 2021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 9

#### II. 주요 현안 분석

- 1. 특별자치시도 지원조직 운영사업 검토 ..... 10

#### III. 개별 사업 분석

- 1. 부패예방추진단의 지속적 활동기한 연장 문제 ..... 24
- 2. 정부업무평가 운영사업의 민간위탁사업 분석 ..... 31
  - 2-1. 정부업무평가 지원 위탁사업 계약방식 등 검토 필요 ..... 36
  - 2-2. 정부업무평가 지원센터 민간위탁사업 집행 문제 개선 필요 ..... 39

## [국민권익위원회]

### I. 결산 개요

- 1. 현 황 ..... 47
- 2. 2021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 51
- 3. 2021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 51

### II. 주요 현안 분석

- 1. 부패·공익신고자 등 보호·보상 제도의 보상금 지급 및 상환 관련 개선 필요 사항 ..... 52
  - 1-1. 보호·보상 제도 별 보상금 내역변경 및 불용액 최소화 필요 ..... 54
  - 1-2. 부패 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자체 및 공공기관 상환액의 납부실적 제고 필요 ..... 59

## [국가보훈처]

### I. 결산 개요

- 1. 현 황 ..... 65
- 2.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 72
- 3. 2021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 73

## II. 주요 현안 분석

1. 보훈대상자 등록 및 보훈급여금 지급 관리 철저 필요 등 ..... 74

## III. 개별 사업 분석

1. 봉안당 확충 사업 적기 완료를 위한 사업관리 강화 필요 ..... 82
2. 교통시설 이용감면액 국가 지원을 위한 사업방식 개편 검토 필요 ..... 87
3. 보훈회관 건립 보조금 교부를 위한 사전검토 강화 필요 ..... 93
4. 적정 진료단가 반영 및 진료인원 추계 정확성 제고 필요 ..... 97

## [공정거래위원회]

### I. 결산 개요

1. 현 황 ..... 107
2. 2021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 111
3. 2021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 112

### II. 주요 현안 분석

1. 기관 고유사업 집중을 위한 적정 규모의 출연금 편성 필요 ..... 113

### III. 개별 사업 분석

- 1. 소비자상담 위탁수당 추계 정확성 제고 필요 등 ..... 119
- 2. CP 제도 활성화를 위한 실효적인 인센티브 발굴 필요 ..... 125
- 3. 수탁사업 예산 편성 정합성 제고 필요 ..... 130
- 4. 세입항목 임의체납액 관리 방안 마련 필요 ..... 134

### [금융위원회]

#### I. 결산 개요

- 1. 현 황 ..... 141
- 2.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 149
- 3. 2021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 150

#### II. 주요 현안 분석

- 1.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코로나19 금융지원 관련 기금사업 분석 .... 151
  - 1-1. 만기연장·상환유예 종료에 따른 보증기금 리스크 사전관리 필요 ..... 153
  - 1-2. 소상공인 이차보전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 미비 문제 검토 등 ..... 161
- 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 제도의 일반회계 사업화 검토 필요 ..... 169

## III. 개별 사업 분석

1. 핀테크 지원 보조사업 편성 및 집행상 문제 ..... 179
  - 1-1. 핀테크 해외진출 지원 관련 연구개발비 편성 및 집행 지양 필요 등 .... 181
  - 1-2. 금융 테스트베드 운영 및 참여 지원 보조사업 집행시 주의 필요 등 .... 188
2. 효과적인 CTR 통보방식 방안 마련 필요 ..... 195
3. 채무자대리인 선임 수요예측의 정확성 제고를 통한 적정예산 편성 필요 ... 200
4. 효과적인 팩토링금융 제공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207
5. 주택연금의 신탁방식 전환설정 도입 지연에 따른 집행 부진 검토 ..... 214

##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 I. 결산 개요

1. 현 황 ..... 223

### II. 주요 현안 분석

1. 예비비 과다 신청에 따른 불용 및 이월 최소화 필요 ..... 226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I. 결산 개요

- 1. 현 황 ..... 233
- 2. 2021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 237

### II. 주요 현안 분석

- 1. 출연 및 보조사업의 직접수행 전환 검토 필요 ..... 238

### III. 개별 사업 분석

- 1. 과태료·가산금 과목 장기 체납액에 대한 체계적 관리 필요 ..... 243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I 결산 개요

## 1 현 황

### 가. 세입·세출 결산

2021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입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으며, 3억 6,3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을 수납하였다.

[2021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0	0	0	363	363	0	0	100.0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2021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6,487억 8,400만원이며, 이 중 94.6%인 6,134억 8,000만원을 지출하고 41억 3,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11억 6,5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21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629,518	629,518	632,741	598,764	4,139	29,838	94.6
에너지및자원산업특별회계	11,929	11,929	11,929	11,213	0	716	94.0
환경개선특별회계	0	0	4,113	3,502	0	611	85.1
합계	641,447	641,447	648,784	613,480	4,139	31,165	94.6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나. 총수입·총지출 결산

2021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총수입은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으며, 결산은 전년도 결산대비 3,200만원이 증가하였다.

[2021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0 결산(A)	2021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산	331	0	0	363	363	32
합계	331	0	0	363	363	32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2021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총지출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279억 6,700만원(△4.6%)이 감소한 6,133억 8,9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293억원 8,200만원(4.8%)이 증가하였다.

[2021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0 결산(A)	2021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산	584,007	641,356	641,356	613,389	△27,967	29,382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다. 재무 결산

2021회계연도 말 현재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의 자산은 4,194억 2,000만원, 부채는 10억 4,200만원으로 순자산은 4,183억 7,800만원이다.

자산은 유동자산 88억 7,200만원, 일반유형자산 4,075억 9,100만원, 무형자산 26억 8,800만원, 기타비유동자산 2억 6,9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734억 3,000만원(21.2%) 증가하였다. 이는 자산재평가로 일반유형자산 705억 1,600만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부채는 유동부채 1억 3,600만원, 장기충당부채 9억 6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2억 9,100만원(38.7%) 증가하였다. 이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보조비 관련 유동부채(미지급금) 1억 3,600만원, 무기계약직 퇴직금 관련 장기충당부채 1억 5,500만원 증가에 기인한다.

[2021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회계연도(A)	2020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자 산	419,420	345,990	73,430	21.2
Ⅰ. 유동자산	8,872	4,670	4,202	90.0
Ⅱ. 투자자산	-	-	-	-
Ⅲ. 일반유형자산	407,591	337,075	70,516	20.9
Ⅳ. 사회기반시설	-	-	-	-
Ⅴ. 무형자산	2,688	3,450	△762	△22.1
Ⅵ. 기타비유동자산	269	795	△526	△66.2
부 채	1,042	751	291	38.7
Ⅰ. 유동부채	136	-	136	순증
Ⅱ. 장기차입부채	-	-	-	-
Ⅲ. 장기충당부채	906	751	155	20.6
Ⅳ. 기타비유동부채	-	-	-	-
순 자 산	418,378	345,239	73,139	21.2
Ⅰ. 기본순자산	127,637	129,110	△1,473	△1.1
Ⅱ. 적립금 및 양여금	1,993	12,917	△10,924	△84.6
Ⅲ. 순자산 조정	288,748	203,212	85,536	42.1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2021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6,321억 9,1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 총원가 5,079억 2,700만원, 관리운영비 1,246억 4,6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비배분수익 3억 8,3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461억 5,300만원(7.9%) 증가한 6,321억 9,100만원이며, 이는 자산재평가 등에 따라 관리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286억 6,600만원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총 2개의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순원가가 큰 프로그램은 정부출연연구기관지원 프로그램(5,076억 9,5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570억 8,200만원과 경비 676억 6,4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1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회계연도(A)	2020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I. 프로그램순원가(가-나)	507,927	490,389	17,538	3.6
가. 프로그램 총원가	507,927	490,389	17,538	3.6
나. 프로그램 수익	-	-	-	-
II. 관리운영비	124,646	95,980	28,666	29.9
III. 비배분비용	-	-	-	-
IV. 비배분수익	383	331	52	15.7
V. 재정운영순원가(I+II+III-IV)	632,191	586,038	46,153	7.9
VI. 비교환수익 등	-	-	-	-
VII. 재정운영결과(V-VI)	632,191	586,038	46,153	7.9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의 2021회계연도 기초순자산은 3,452억 3,9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4,183억 7,800만원으로 기초 대비 731억 3,900만원(21.2%) 증가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는 기초 대비 461억 5,300만원 증가한 반면, 순자산 가산항목인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기초 대비 297억 5,900만원, 조정항목은 기초 대비 841억 3,800만원 증가하여 순자산 가산항목이 차감항목을 초과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21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부담금수익, 제재금수익 등 재원의 조달 6,218억 4,100만원과 국고이전이출 등 재원의 이전 4억 1,300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자산재평가이익 855억 3,600만원, 정부조직개편등에 따른 순자산의 증감 △16억원 3,500만원 등으로 구성된다.

[2021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회계연도(A)	2020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I. 기초순자산	345,239	339,843	5,396	1.6
II. 재정운영결과	632,191	586,038	46,153	7.9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621,428	591,669	29,759	5.0
IV. 조정항목	83,902	△236	84,138	35,651.7
V. 기말순자산(I - II + III + IV)	418,378	345,239	73,139	21.2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라. 재정 구조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의 경우, 일반회계에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으로 9,100만원을 전출하였다.

[2021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

(단위: 백만원)



주: 총계 기준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의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 사업**, ②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지원 사업** 등이 있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 사업은 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민간위탁사업비 3억원이 감액(36억 5,300만원→33억 5,300만원)되었고,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지원 사업은 2020년 집행잔액을 고려하여 2억원이 감액(33억 5,900만원→31억 5,900만원)되었다<sup>1)</sup>.

국회심사 과정에서 **부대의견이 채택된 사업**으로 ①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지원 사업**, ②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국외출장 관련**이 있다.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지원 사업은 “2021회계연도부터 사업 예산의 집행잔액을 국고로 반납할 것”,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경우에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속기관들의 불필요한 국외출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 가이드라인 준수, 관련 심의 실시 등의 조치를 강화한다.”가 부대의견으로 채택되었다.<sup>2)</sup>

1) 정부위원회, 「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20.11.

국회,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20.12.

2) 국회,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20.12.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①국정과제 중심의 관리 및 평가, ②사회통합 및 안전관리 추진, ③규제혁신, ④국가적 중장기 추진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 ⑤제정당 및 국민과의 소통 강화, ⑥정부출연연구기관의 육성·지원 및 체계적 관리를 2021년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21회계연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 및 세종자치특별시지원단을 통합하여 특별자치시도지원단을 2022년 7월에 신설하였는데, 이전 지원단의 별도정원 및 존속기간 문제 등을 참고하여 특별자치시도지원단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존속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 당시 국회가 2021회계연도 결산 제출 전까지 조직 개편안을 마련할 것을 시정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말까지로 활동기한을 연장하였으므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추진단 운영방식을 조속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 사업에 편성된 정부업무평가 지원센터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2021년도 예산안 심사 당시 논의되지 않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하여 운영하였는바, 향후 위탁사업의 필요성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관련 위탁계약의 적정 계약기간 및 예산 지원방식 등에 관해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위탁사업비 집행 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

1

특별자치시도 지원조직 운영사업 검토

가. 현 황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 운영<sup>1)</sup> 사업은 중앙권한 이양 등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실질적 자치권 보장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사업으로, 2021회계연도 예산현액 1억 3,800만원 중 1억 3,200만원을 집행하고 6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 운영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현안과제 추진 지원	1,364	1,364	-	4 △4	1,364	864	-	500
제주특별자치도지 원단 운영	138	138	-	1 △1	138	132	-	6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국무조정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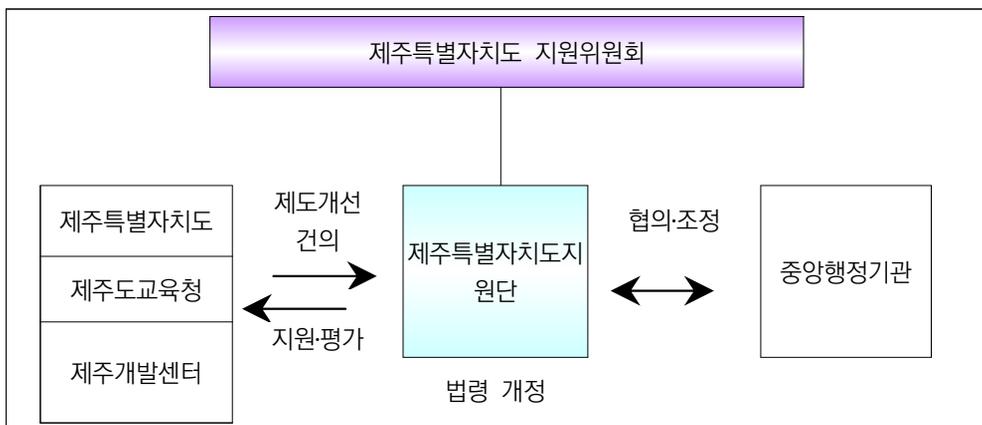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sup>2)</sup>는 제주특별자치도 운영과 국제 자유도시 구현을

김윤성 예산분석관(kimmys1001@assembly.go.kr, 6788-4623)

- 1) 코드: 일반회계 7035-301(현안과제 추진 지원)의 내역사업
-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① 제주자치도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주자치도의 성과목표와 평가 및 국제자유도시의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주자치도의 조직·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주자치도의 행정 및 재정자주권 제고와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우대 부여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3. 제5조제3항에 따른 협약 체결과 그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제19조에 따라 제출된 법률안 의견의 검토 등에 관한 사항
  5. 제20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에 관한 사항

위해 필요한 주요 정책과제를 심의·확정하는 위원회이며,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이하 ‘제주도지원단’)은 동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주요 과제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제주개발센터와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조정을 하는 지원조직이다. 2022년 6월말까지 제주도지원단은 국무조정실 직제에 미반영된 임시조직으로 운영되었으며, 1단 2과 현원 12명(별도정원 7명, 비별도정원 5명 - 중앙부처 7명, 지방자치단체 4명, 공공기관 1명)으로 운영 중이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 운영 사업 집행구조]



자료: 국무조정실

6.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과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7.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의 지정·해제 및 개발에 관한 사항
8. 제166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라 한다)의 사업추진과 발전방안, 개발센터와 지방자치단체 간 업무조정 등에 관한 사항
9. 제주자치도의 행정규제자유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
10.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의료기관의 유치와 설립 지원에 관한 사항
11. 국제적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12. 제주자치도의 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도지사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조정  
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한편, **세종시지원단 운영**3) 사업은 세종특별자치시의 안정적 정착, 인접지역간 상생발전 지원, 국정과제 이행 등 세종의 균형·상생발전을 위한 관계기관간 정책 조정 및 협업을 위하여 설치된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2021회계연도 예산 3억 1,700만원 중 2억 6,200만원을 집행하고 5,500억원을 불용하였다.

[2021회계연도 세종시지원단 운영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세종시지원단 운영	317	317	-	-	317	262	-	55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국무조정실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가 지역발전과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종시 중장기적 발전방안, 행정·재정 자주권 제고 및 사무처리 지원, 세종시 성과평가 활용 등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4)로, 지원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2011년 국무조정실에 실무지원단(이하 ‘세종시지원단’)을 설치하였다.5) 세종

3) 코드: 일반회계 7035-305

4)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세종특별자치시가 지역발전과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2.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재정 자주권 제고 및 사무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
3. 공주시와 청원군 등 세종특별자치시에 관할구역의 일부가 편입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공동화 방지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
4. 제4조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및 그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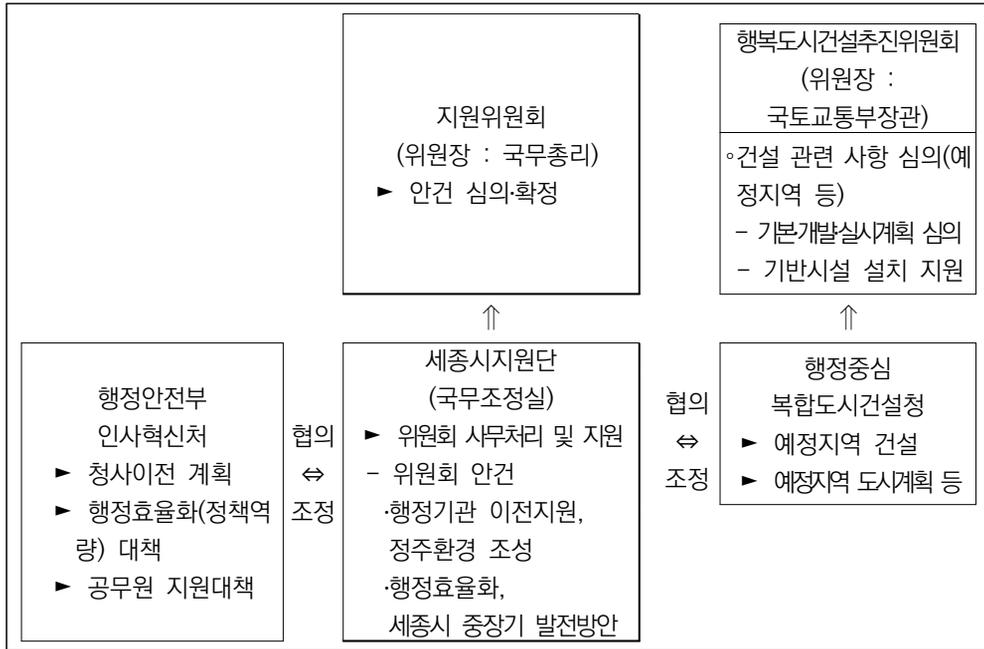
5)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실무지원단)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 각 호 및 이 영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실무지원단으로 국무조정실에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 ② 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국무조정실장이 임명한다.
- ③ 지원단의 단장은 지원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지원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시지원단은 지원위원회 운영, 세종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기반 마련, 세종시 이전에 따른 행정 비효율 개선 이행, 세종시 정주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건설청 및 세종특별자치시 등 세종시 관계기관간 정책 조정, 세종시·세종시교육청 성과평가 및 평가제도 개선·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이행하였다.

[세종시지원단 운영 사업 집행구조]



자료: 국무조정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문위원회 등을 설치할 경우 존속기한을 정하여 법령에 명시하여야 하나<sup>6)</sup>, 동 지원위원회의 경우 존속기한이 명시되지 않았으며 이에 근거한 세종시지원단 역시 2011년 3월 출범한 이후 2022년 6월말까지 임시조직으로서 현원 14인(별도정원 6인, 비별도정원 8인) 규모로 존속하고 있었다.

6)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② 행정기관의 장은 자문위원회등을 설치할 때에 계속하여 존치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정하여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존속기한은 자문위원회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서 설정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나. 분석의견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과 세종시지원단을 통합하여 특별자치시도지원단이 신설되었는데 근거규정이 미비한 상황에서 별도정원 인력을 운영하고 있고 존속기간도 설정되지 않았는바, 국무조정실은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 및 세종시지원단 운영사업의 사례를 참고하여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사업의 목표달성 여부, 관계기관 간 업무 분담, 지원단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사업의 완료시점을 정하여 해당 규정에 존속기간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먼저 기존 제주특별자치도 및 세종특별자치시 지원단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각각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① **제주도지원단**은 2006년 8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에 근거하여 2011년 6월 말까지 운영하는 한시조직으로 설치되었으나, 이후 계속 법률을 개정하여 활동기한을 연장해왔다. 이후 제주특별법 상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처’의 활동기한이 2018. 6. 30.에 만료되는 상황에서 활동기한 연장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이 되지 않자 국무조정실은 2018. 6. 29. 훈령(「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는 명칭의 기구를 구성하고 기존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처’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제주특별법 개정 없이 사무처의 활동기한을 연장하였다.

이후 2019. 6. 20. 국무조정실은 훈령 상 유효기간을 재연장하였으며, 2019. 12. 10. 제주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무기구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되 2021. 6. 30. 까지 유지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럼에도 활동기한 연장을 위한 특별법 개정이 되지 않자 국무조정실은 2021. 6. 25. 훈령을 개정하여 그 유효기간을 2022년 6월 말까지로 연장하였으며, 2022. 6. 30. 유효기간을 2023. 6. 30. 까지로 재차 연장하였다.

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1.3.18. 오영훈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어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미상정)되어 있는데, 존속기한을 규정한 부칙조항을 삭제해 제주지원단을 상설화하려는 내용이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 활동기간 연장 연혁]

시기	개정사항	명칭	활동기간	연장기간
2006.7.	특별법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처	~ 2011.6.	-
2011.5.	특별법 개정		~ 2014.6.	3년 연장
2014.5.	특별법 개정		~ 2016.6.	2년 연장
2016.5.	특별법 개정		~ 2018.6.	2년 연장
2018.6.	훈령 제정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	~ 2019.6.	1년 연장
2019.6.	훈령 개정		~ 2020.6.	1년 연장
2019.12.	특별법 개정		~ 2021.6.	~2021. 6. 30.
2021.6.	훈령 개정		~ 2022.6.	1년 연장
2022. 6.	훈령 개정		~ 2023.6.	1년 연장

자료: 국무조정실 제출자료 및 국가법령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재작성

국회에서 제주특별법상 사무기구 설치규정의 유효기간을 규정한 취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직후 권한이양 등에 관해 범정부 차원으로 지원하되 제도적 기반조성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여진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예비심사서(2019.11.5.) 존속기한(2021.6.) 만료 후 제주도지원단 운영을 종료한다는 부대의견<sup>8)</sup>을 채택한 것 역시 위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지원단을 운영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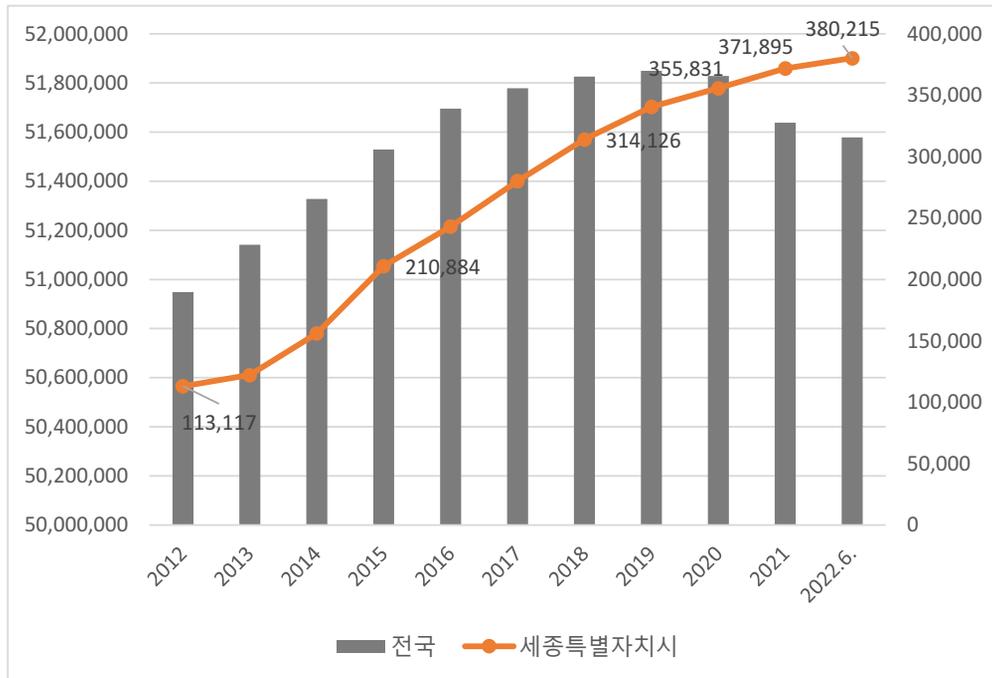
그러나 훈령에 기반한 제주도지원단 활동기간의 반복적인 연장은 당초 제주특별법 입법취지 및 국회의 논의결과에 부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더욱이 제주도지원단은 훈령에 기반한 직제 외 임시조직인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파견받은 직원으로 운영되는데, 잦은 활동기한 연장으로 인해 파견조직의 증장기적 인력운용 상의 효율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었다.

8)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정무위원회 부대의견(2019.11): “국무조정실은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 운영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국회 논의 사항을 반영하고, 개정안에 명시된 존속기한 만료 후 추진단 운영을 종료한다.”  
(당시 2019년 12월 특별법이 개정되어 활동기한이 2021년 6월까지로 연장)

한편, ② **세종시지원단**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의 당초 설치 목적인 세종시의 안정적 정착이 달성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2005년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이 최초로 수립된 이후 2012~2016년 상반기에 1~4단계 중앙행정기관 이전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이전까지 완료되었으며, 「정부조직법」·「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중소벤처기업부 등 신설되거나 이전대상이 변경된 기관이 세종시로 추가 이전되었고 현재 정부 신청사 등의 건축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진행 중이다.

그 결과 2022년 6월말 기준 세종특별자치시 인구는 38만명으로 인구수 증가 정도가 안정화되고 있으며, 2020년 결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53.87%로 광역자치단체 중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를 볼 때 세종특별자치시로의 중앙행정기관 이전 완료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안정적 정착이 가시화되어 지원위원회와 세종시 지원단의 설치 목적이 상당히 달성되었다고 보여진다.

[전국 및 세종특별자치시 인구 변화 추이]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kr)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0년 광역자치단체 재정자립도 순위 및 현황]

(단위: 백만원, %)

순위	지자체명	자체수입 (A)	자치단체 세입결산규모(B)	재정자립도 (A/B×100)
1	서울	25,456,893	40,665,864	62.60
2	세종	817,502	1,517,486	53.87
3	인천	5,679,439	10,972,985	51.76
4	경기	26,490,445	53,043,270	49.94
5	울산	2,210,658	4,876,222	45.34
6	부산	6,333,090	14,162,167	44.72
7	대구	4,092,052	10,612,150	38.56
8	대전	2,339,620	6,132,559	38.15
9	광주	2,357,235	6,435,145	36.63
10	제주	1,714,416	5,360,841	31.98
11	경남	6,062,879	19,638,571	30.87
12	충남	4,415,630	15,053,487	29.33
13	충북	3,174,336	11,188,753	28.37
14	경북	5,250,664	21,275,881	24.68
15	강원	3,258,617	13,931,434	23.39
16	전북	3,225,250	14,235,298	22.66
17	전남	4,051,190	18,792,512	21.56

주: 결산 기준

자료: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반면,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등과 관련된 협의·조정 및 세종시 행정·재정 자  
주권 관련 사무처리를 지원하고 있는 지원위원회는 연 2회 개최되고 있는데 1회는  
서면으로 성과평가 계획(안) 확정에 관한 회의인바 실질적으로 회의는 연 1회만 개  
최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개최 현황]

연도	대면/서면	일자	장소	주요내용	참석인원
2019	서면	2019.3.1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종시 2019년도 성과평가 계획(안)(국조실)</li> </ul>	27명
	대면	2019.11.28	세종 (국무조정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종시와 대전·충남·충북 상생발전 추진계획(관계기관 합동)</li> <li>· 도시혁신 선도모델로서의 세종시 발전방안(세종시)</li> <li>· 정부세종 신청사 건립 및 행정효율성 제고방안(행안부)</li> <li>· 세종시 2018년도 운영성과 평가결과 및 활용계획(국조실)</li> </ul>	23명
2020	서면	2020.3.2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종시 2020년도 성과평가 계획(안)(국조실)</li> </ul>	27명
	대면	2020.10.27	세종 (국무조정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종시와 대전·충남·충북 광역발전방안(관계기관 합동)</li> <li>· 행정수도 완성과 혁신성장기반 조성방안(세종시)</li> <li>· 세종시 2019년도 성과평가 결과 및 활용계획(국조실)</li> </ul>	22명
2021	서면	2021.4.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종시 2021년도 성과평가 계획(안)(국조실)</li> </ul>	27명
	대면	2021.12.7.	세종 (국무조정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지원 및 행복도시권 광역발전계획(관계기관 합동)</li> <li>· 행정수도 완성 및 세종시 중장기 발전방향(세종시)</li> <li>· 세종시 공무원임대주택 공급확대 방안(관계기관 합동)</li> <li>· 2020년도 세종시 성과평가 결과 및 활용계획(국조실)</li> </ul>	25명

자료: 국무조정실

또한, 과거 세종시지원단에서 홍보업무로서 수행하던 세종시정보센터(2012. 12.~2020. 5.) 및 세종시 가이드맵(2012. 12.~2020.1.) 운영, 세종시가이드북 제작·배포(2012. 9.~2019.12.)가 종료됨에 따라 세종시지원단 운영 사업 중 조사용역 실시가 주된 업무가 되었다. 동 사업 예산 3억 1,700만원 중 일반연구비 7,500만원

(23.7%)이 매년 편성되어 세종시성과평가 및 주민만족도 조사를 연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세종시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조사”를 실시하여 개인·노동·주거와 교통·문화 및 여가 등의 항목에 대해 시민생활변화·만족도·삶의질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을 파악하고 있으며 세종시교육청에서 매년 “세종교육정책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등 자체적으로 주민의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중앙부처인 국무조정실에서 별도로 세종시 주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실익이 없었다고 보인다.

[세종시지원단의 연구용역 수행 현황]

(단위: 천원)

연 도	연구주제명	계약기간	계약자	계약방식	예산액	집행액
2019	세종시 2018년도 성과평가 용역	'19.4.22.~8.14.	(주)한국 정책평가 연구원	제한경쟁 입찰	50,000	45,000
	'19년 세종특별자치시 주민만족도 조사용역	'19.4.22.~6.20.	(주)엠앤엠 리서치	제한경쟁 입찰	25,000	24,500
	소 계				75,000	69,500
2020	세종시 2019년도 성과평가 용역	'20.4.20.~8.14.	(주)한국 정책평가 연구원	제한경쟁 입찰	50,000	45,000
	'20년 세종특별자치시 주민만족도 조사용역	'20.5.18.~7.16.	(주)엠앤엠 리서치	제한경쟁 입찰	25,000	24,800
	소 계				75,000	69,800
2021	세종시 2020년도 성과평가 용역	'21.4.2.~6.30.	전북 대학교 산학 협력단	제한경쟁 입찰	50,000	44,759
	'21년 세종특별자치시 주민만족도 조사용역	'21.3.17.~5.15.	(주)유니온 리서치	제한경쟁 입찰	25,000	22,000
	소 계				75,000	66,759

자료: 국무조정실

이와 관련하여 국회는 2016·2018회계연도 결산 심사 결과 세종시지원단의 기능 및 역할을 점검할 것을 시정요구한 바 있으며,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 국무조정실로 하여금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위원회의 역할을 진단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한 바 있다.

[세종시지원단 운영 사업 관련 국회의 예·결산 심사 내역]

구 분		대상기관	주요내용
2016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제도개선)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세종시지원단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것
2018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제도개선)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은 기초 생활편의 등과 관련된 ‘세종시정보가이드 앱’ 등과 같은 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이관 등으로 세종시지원단의 기능 및 역할을 재점검할 것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부대의견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은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위원회의 역할을 진단하고, 위원회 운영 실적 개선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국무조정실은 ③ 국회에서의 지적사항을 반영하고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2. 7. 1. 국무조정실장 결재를 근거로 제주도지원단과 세종시지원단을 통합한 “**특별자치시도지원단**”을 신설하였으며 1단 3과 현원 21명(별도정원 9명, 비별도정원 12명)으로 운영 중이다. 국무조정실은 두 조직의 통합을 통해 전체 별도정원 규모를 축소하였으며 그간 축적된 행정경험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조직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한편, 법정위원회 지원과 같이 기존 지원단들의 필수업무뿐만 아니라 양 지방자치단체 간의 시너지를 활용한 업무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제주시지원단 · 세종시지원단 및 특별자치시도지원단 간 인력현황 비교]

구 분	제주시지원단 (6.30기준)	세종시지원단 (6.30기준)	특별자치시도지원단 (8.1기준)
조직 구성	1단 2과 * 국장급	1단 2과 1팀 * 실장급	1단 3과 * 국장급
인력 현황	12명	14명	21명
별도정원 파견	7명 * 고공나 1, 3·4급 1, 4급 1, 5급 4	6명 * 고공가 1, 4급 2, 4·5급 2, 5급 1	9명 * 고공나 1, 3·4급 1, 4급 2, 4·5급 1, 5급 4
비별도 파견	5명 * 5급 4, 민간파견 1	8명 * 3·4급 1, 5급 5, 6급 1, 민간파견 1	12명 * 5급 9, 6급 1, 민간파견 2

자료: 국무조정실

그러나 특별자치시도지원단 조직설치와 관련하여 다음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특별자치시도지원단 설치 및 별도정원 운영을 위해서는 훈령 이상의 근거규정이 필요하나 국무조정실장의 결재를 근거로 신설하였는데,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훈령 이상의 운영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의 「2022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르면 임시조직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부기관장의 결재를 받거나 훈령 이상의 법령을 근거로 설치하고 특별한 경우 외에는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없이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때 각 부처는 1년 이상 추진이 필요한 다수 부처 관련 협업과제 또는 국가적 차원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별도정원을 활용한 기획단(추진단)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무총리 훈령 이상 법령 등 명확한 설치 근거가 필요하다.9)

9) 「2022년 정부조직관리지침」(p.98)

9. 임시조직 설치·운영지침

3. 임시조직 운영 지원

□ 추가 인력 지원

○ 타 부처 인력의 상시적 근무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부처의 비별도 파견을 받아 운영함이 원칙

특별자치시도 지원사업은 추진 당시 국가적 과제 수행을 위한 위원회 운영 지원사업이고 중앙부처 및 특별자치시도·교육청 등 다수 행정기관이 연관되어 있는 사업이라고 보인다. 이에 제주도지원단은 국무총리 훈령인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세종시지원단은 대통령령인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고 있었으며 각각 행정안전부와 협의한 별도 정원을 활용하여 운영되었다.

그러나, 특별자치시도지원단의 경우 2022년 7월말 기준 근거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지 않았으며,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및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각각 제주도지원단과 세종시지원단 명칭이 직접 명시된 바<sup>10)</sup> 동 규정들을 특별자치시도지원단의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2022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상 임시조직이 행정기관의 하부조직을 법령으로 설치해야 하는 원칙의 예외로서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별도정원 지원 역시 요건 충족 시 행정안전부의 검토를 거쳐야 가능하도록 한 것은 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을 적정규모로 유지하기 위해서임을 고려할 때, 현재 특별자치시도지원단의 별도정원 파견인력 등 안정적인 조직 운용을 위해서는 국무총리훈령 이상의 운영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임시조직의 경우 일시적 과제·사업 등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이므로 특별자치시도지원단의 존속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다.**

- 
- 다만, 국정과제 등을 수행하는 ‘다수부처 협업형’ 임시조직의 경우,
    - 현행 인력으로 업무수요 대처가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시 행정안전부의 검토를 거쳐 별도정원 지원 가능
      - 국무총리 훈령 이상의 법령을 근거로 해당 임시조직 설치 (대통령·총리 훈령을 발령할 수 없는 기관은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별도의 규정으로 임시조직 설치 가능)
      - 해당 과제 수행에 1년 이상의 기간 필요
- 10)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설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실무지원단)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 각 호 및 이 영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실무지원단으로 국무조정실에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2022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은 임시조직을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 3년 이내의 존속기간을 설정하여 설치 근거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임시조직이 사실상 상설화되어 지속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특별자치시도지원단 신설 관련 결재 당시 존속기간이 설정되지 않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주시지원단은 본래 운영이 종료되었어야 하나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7단계 제주특별법 개정안<sup>11)</sup> 및 8단계 제도개선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1년씩 연장되고 있었다. 세종시지원단의 경우 세종시로의 중앙행정기관 이전 완료와 세종시의 안정적 정착이 가시화되어 지원위원회와 세종시지원단의 설치 목적이 상당히 달성되었다는 점, 정부세종청사 신청사 건립 등의 사업을 행정안전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관계기관이 수행하고 있다는 점, 세종시지원단의 역할도 연례적인 조사용역으로 축소되었으며 만족도조사의 경우 이미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존속여부 또는 존속기간 설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

즉, 제주시지원단과 세종시지원단을 통합하여 특별자치시도지원단이 신설됨에 따라 국무조정실 내 임시조직 규모는 축소하였을지라도, 설치근거 규정이 없는 임시조직이 존속기간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조직운용 방향은 아니라고 보인다. 따라서 국무조정실은 제주시지원단 및 세종시지원단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조속히 특별자치시도지원단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사업목표의 달성 여부, 관계기관 간 업무 분담, 지원단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사업의 완료시점을 정하여 해당 규정에 존속기간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

1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1. 11. 11. 정부제출)  
- 주요내용: 자치권한 강화, 청정 제주 환경관리 강화 등

### III

## 개별 사업 분석

#### 1

### 부패예방추진단의 지속적 활동기한 연장 문제

#### 가. 현 황

부패예방추진단 운영 사업<sup>1)</sup>은 기존 반부패 조직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감시가 소홀하거나 점점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부정부패 소지 분야에 대한 시정·예방과, 부패·부조리의 실태 및 원인을 분석하여 부패유발 요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정책적 관점의 제도개선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회계연도 예산액 8억 1,300만원 중 7억 5,200만원을 집행하고 6,1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1회계연도 부패예방추진단 운영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부패예방 추진단 운영	813	813	-	3 △3	813	752	-	61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국무조정실

#### 나. 분석의견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부패예방추진단 운영방식을 조속히 결정함으로써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에 반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하 '추진단')은 부정부패·비리 소지가 있는 분야의 실태를 파악하고 원인을 분석하며 관련 대책을 시행하기 위해 다부처·기관의 전문

김윤성 예산분석관(kimys1001@assembly.go.kr, 6788-4623)

1) 코드: 일반회계 7036-311

인력으로 구성된다. 추진단 단장은 국무1차장이 겸임하고 부단장은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파견검사로서 하며, 국무조정실·국민권익위원회·국세청·경찰청과 LH·금융감독원 등 파견인력 37명이 부패예방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sup>2)</sup> 추진단은 일상생활 속 부정부패·비리와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과제를 이행 중에 있으며, 2021년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소방점검 실태 점검, 공공기관(환경분야) 계약·사업관리 실태 점검, 창업지원사업 운영실태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2) 국무조정실은 2022. 7. 25. 추진단 조직을 2개 국(총괄기획국·사회경제국) 7개 과로 개편하였다.

[부패예방추진단 조직 및 구성(2022. 7월말 기준)]



주: 2022. 7. 25. 기준

자료: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 조직 및 구성]



주: 2021년말 기준  
자료: 국무조정실

[2021년 부패예방추진단 점검과제 현황]

연도	목 록
2021	아파트 등 공동주택 소방점검 실태 점검
	항만건설 · 수산자원 지원실태 점검
	공공기관(환경분야) 계약 · 사업관리 실태 점검
	스마트공장 보급 · 확산사업 운영실태 점검
	다수공급자계약 운용실태 점검
	가스플랜트 건설 및 운영 실태점검
	창업지원사업 운영실태 점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운용실태 점검
	국방 · 보훈 복지시설 운영실태 점검

자료: 국무조정실

추진단은 2014년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를 계기로 부정부패 척결 관련 대책의 기획·분석·시행 및 공직부패 점검·관리를 추진하고자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691호, 2014.8.13. 제정)」에 기반하여 2014년 8월부터 2015년 7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 출범하였다. 국무조정실은 지속적인 부패근절 노력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16년 12월 말까지 1차 연장하였으며, 2016년 12월에는 추진단 활동기한을 2017년 12월 말까지로 2차 연장하였다.

이후 2017년 8월 명칭을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으로 변경하였고 그 기능에 부패의 예방 및 감시를 추가하였으며 활동기한을 2019년 12월 말로 3차 연장하였다.

2019년 말에는 정규직제화 논의를 위해 활동기한을 2020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고, 2020년 3월에는 활동기한을 2022년 6월 30일까지로 재연장하면서 명칭을 부패예방 업무 성격에 맞게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으로 변경하였다. 이후 2022년 1월에는 부패예방 활동 강화를 위해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대상 부정부패 관련 자문 제공기능을 신설<sup>3)</sup>하고 활동기한을 2024년 12월 말로 6차 연장하였다.

---

3)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6조(부정부패 관련 제도개선 자문의 제공) ① 추진단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부패 관련 대책을 수립하거나 제도개선을 하려는 경우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을 받으려는 자는 추진단에 자문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자문을 요청해야 한다.

[부패예방추진단 활동기한 관련 연혁]

구 분	제·개정시기	활동 종료시기	개정사항	명칭
제정	2014.8.13	2015.7.31	-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
1차 연장	2015.7.23	2016.12.31	활동기한 연장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
2차 연장	2016.12.7	2017.12.31	기한 연장 및 국가혁신 범국민위원회 관련 조항 삭제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
3차 연장	2017.8.4	2019.12.31	부정부패 근절 및 예방·감시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명칭 변경 및 부패의 예방 및 감시 기능 추가, 활동기한 연장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
4차 연장	2019.12.31	2020.3.31	정규직제화 논의를 위해 활동기한 연장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
5차 연장	2020.3.9	2022.6.30	명칭 변경 및 활동기한 연장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6차 연장	2022.1.21	2024.12.31	부패예방 활동 강화를 위해 자문 기능 신설 및 활동기한 연장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자료: 국무조정실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추진단의 활동기한이 단기성으로 재차 연장됨에 따라 추진단은 조정(2015년, 1억 9,800만원) 및 예비비(2017~2019년)로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임시조직 형태로 운영됨에 따라 2022년 7월말 기준 현원 37명 중 파견기관에서 공식 충원이 불가능한 비별도 파견인원이 16명(현원 대비 43.2%)에 이른다.<sup>4)</sup>

4) 2022. 7. 25. 인력구조 개편에 따라 별도정원이 11명에서 10명으로 축소

[부패예방추진단 운영 결산내역]

연도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2014	-	-	-	757	757	719	-	95.0	-	38
2015	579	-	198	-	777	725	125.2	93.3	-	52
2016	749	-	11	-	760	699	93.3	92.0	-	61
2017	-	-	△55	674	674	612	-	90.8	-	62
2018	-	-	△1818	611	611	572	-	93.5	-	39
2019	-	-	△1515	674	674	609	-	90.3	-	65
2020	733	-	△5050	-	733	677	92.4	92.4	-	56
2021	813	-	△33	-	813	752	92.5	92.5	-	61

자료: 국무조정실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부패예방추진단 인력 구성 현황]

(단위: 명)

2022. 7월말 기준					
현원	직제 미만영				
	별도	비별도		민간	소계
	중앙	중앙	지자체		
37	10	14	2	11	37

자료: 국무조정실

이에 대해 국회에서는 훈령 개정을 통해 활동시한 연장을 반복하는 것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문제를 지적해왔다.5) 특히 국회는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동추진단 등 훈령으로 임시조직을 장기적으로 운용하는 것에 대해 지적하고 2021회계연도 결산 제출 전까지 조직 개편안을 마련할 것을 시정요구한 바 있다.

5) 2019년도 예산안 정무위원회 예비심사 부대의견: 국무조정실은 임시조직인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의 존속 필요성을 검토하여 2019년 말까지 조직의 존치 여부를 결정한다.  
2020년도 예산안 정무위원회 예비심사 부대의견: 국무조정실은 향후 임시조직 설치 시 국회 심의를 거쳐 본예산에 운영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국무조정실은 조직의 규모·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규직제화를 추가 검토하기로 하고 우선 훈령을 개정하여 연장 운영 중이며, 2022년 3월말 직제 요구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는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어 추진단의 직제 반영 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회의 202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은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시 추진단의 활동기한 연장 및 존치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조직 개편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활동기한을 추가로 연장하고 부정부패 관련 제도개선 자문 제공 기능을 신설한 것은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보인다. 따라서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상시조직화 등 추진단 운영방식을 조속히 결정함으로써 국회 시정요구 취지에 반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정부업무평가는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행하는 정책·사업·업무 등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업무평가는 평가대상(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평가주체 등 수행방식에 따라 특정평가, 자체평가, 개별평가로 구분된다. 먼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에는 기관이 주요정책, 재정사업, R&D사업, 행정관리역량(조직·인사 등)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평가총괄기관에서 점검<sup>1)</sup>하는 ‘자체평가’와, 국무총리가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정과제 추진성과,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주요 부문별로 평가하는 ‘특정평가’가 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법」 등 개별법에서 별도로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각각 실시하는 ‘개별평가’가 있다. 지방자치단체 평가에는 각 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합동평가’, 개별평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유사무 전반을 평가하는 ‘자체평가’가 있다.

한편,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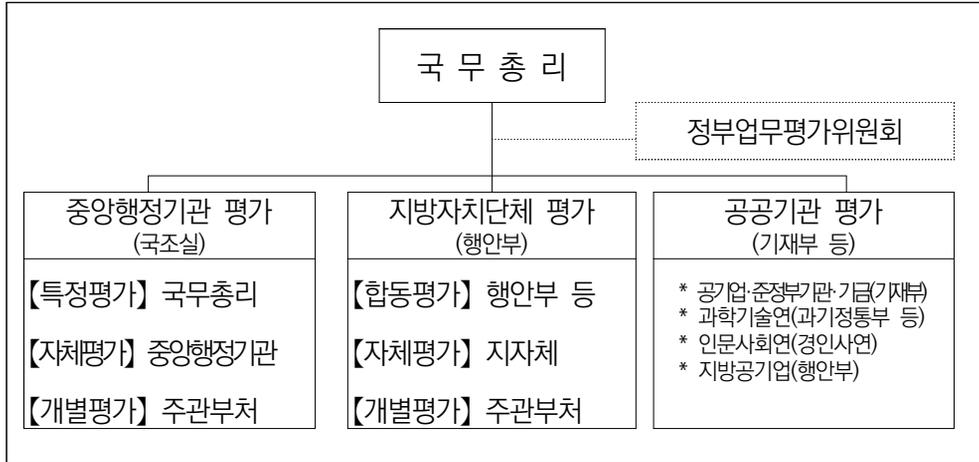
김윤성 예산분석관(kimys1001@assembly.go.kr, 6788-4623)

#### 1) 자체평가 평가항목 및 평가총괄기관

부 문	평가 대상	총괄기관
주요정책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관리과제	국무조정실
재정 사업	일반재정 예산, 기금이 투입되는 모든 성과관리대상 재정사업 * R&D, 재난안전, 균형발전 사업은 제외	기획재정부
	R&D 전체 정부연구개발 사업 중 3년 평가주기가 도래한 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난안전 재난안전사업	행정안전부
	균형발전 균형발전세부사업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행정관리역량	조직·인사·정보화 분야 행정관리역량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자료: 2022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정부업무평가 체계]



자료: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정부업무평가의 실시와 평가기반의 구축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의 심의·의결기구로,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정부업무평가의 기획·조정·총괄, 정부업무평가제도 관련 성과관리, 특정평가·자체평가 계획 수립·시행 및 결과의 확인·점검, 평가제도 운영실태 점검 등을 심의·의결하고 있다.<sup>2)</sup>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

2)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9조(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임무) ① 정부업무평가의 실시와 평가기반의 구축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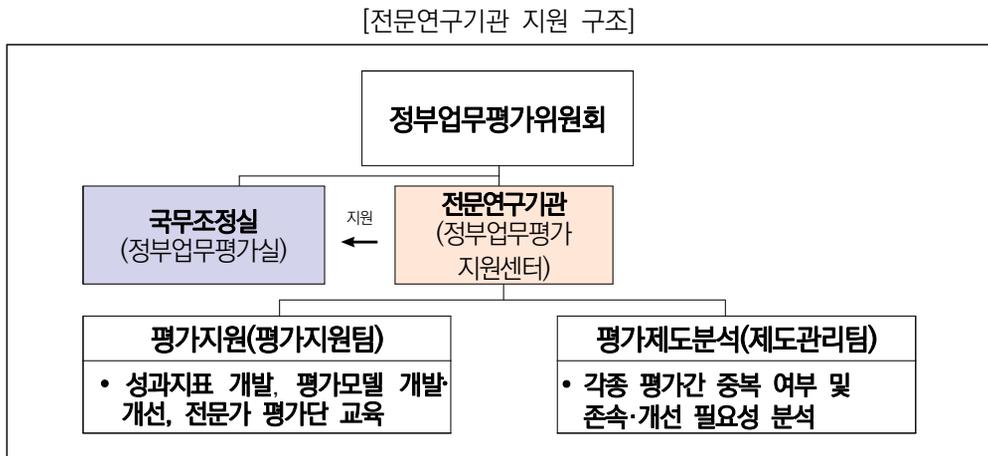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국가 차원의 중장기 평가기반의 구축·운영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 및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정부업무평가의 기획·조정·총괄에 관한 사항
4. 정부업무평가제도와 관련된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5. 정부업무평가결과의 활용 및 평가제도간 연계방안에 관한 사항
6. 정부업무평가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7. 평가관련 기관 간 협조 및 평가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8. 특정평가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9. 자체평가제도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10. 자체평가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11. 자체평가결과의 확인·점검에 관한 사항
12. 자체평가결과에 대한 재평가에 관한 사항
13. 평가제도 운영실태의 점검에 관한 사항
14. 새로운 평가제도의 도입에 관한 사항
15.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로 규정된 사항
16. 그 밖에 위원장이 정부업무평가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한 15인 이내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민간위원 중에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기획재정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국무조정실장 등이 위원이다.

국무조정실은 정부업무평가의 주관 부처로,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 및 평가 결과에 기반한 포상금 지급, 중앙행정기관 대상 전자통합평가 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33조제2항3)에 근거하여 2021년부터 정부업무평가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보좌하고자 관련 업무를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하였는데, 그에 따라 한국행정연구원 내 2팀 총 13인(지원센터 전문인력 10인, 한국행정연구원 지원인력 3인)으로 구성된 “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가 설립되었으며 국무조정실은 지원센터에 정부업무평가 관련 업무를 민간위탁하였다.



자료: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은 동 지원센터에 평가 업무 전반을 이관하는 것이 아니라 국무조정실 내 정부업무평가실(이하 ‘평가실’)의 평가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보좌하는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① 평가제도 관리에 있어 지원센터는 제도간 연계·통합 여부 등 분석, 각종 평가제도 분석 및 일몰 검토 등을 수행하고, 평가실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부처 협의·조정을 거쳐 평가제도를 개선하고 정

3)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33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② 국무총리·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업무의 일부를 평가에 관한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부업무평가위원회의 논의 및 후속조치를 지원하며, ② 중앙부처의 특정평가에 대해 지원센터가 평가지표 검토, 평가모델 개발 등 전문성을 지원하고 실제 평가업무는 평가실이 계속 수행하는 방식이다.

[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의 주요 업무 및 국무조정실과의 업무분담]

구 분	내 용	업무분담
평가제도 관리	•각종 평가정비계획 수립 및 부처협의	평가실
	•각종 평가제도간 통합·연계·여부 등 분석	지원센터
	•각종 평가제도 비용편의 분석 및 일몰 검토 - 기존 평가 존치 필요성 분석 - 신설 평가제도 타당성 검토 및 중복성 등 분석	지원센터
	•각종 평가 방식·절차·지표 등 적절성 등 안전 정밀 분석	지원센터
	•각종 평가결과에 대한 메타 평가 지원	지원센터
	•각종 평가정보 DB 구축	지원센터
	•전문연구기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 제도 개선	평가실
	•각종 평가 계획·결과의 정평위 논의 지원·후속조치	평가실
중앙부처 특정평가의 전문성 지원	•성과지표 사전검토 및 개발	지원센터
	•성과지표 DB 구축 및 관리	지원센터
	•전년도 평가결과 분석 및 평가모델 개선방안 검토	지원센터
	•국정과제-지자체-공공기관 성과지표간 연계성 분석	지원센터
	•국정과제 성과지표 부처협의·확정	평가실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결과 확정·발표	평가실
	•평가 환류 및 평가모델 개선 등 후속조치 관리	평가실
	•전문가 평가단·중앙행정기관 평가기법 교육·컨설팅 실시	지원센터

자료: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 사업<sup>4)</sup>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정부업무평가를 실시하고 정부업무평가기반 구축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2021회계연도에는 예산현액 35억 5,300만원 중 33억 2,0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3,300만원이 불용되었다.

4) 코드: 일반회계 7031-303

[2021회계연도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정부업무 평가위원회 운영	3,353	3,353	-	-	3,353	3,320	-	33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국무조정실

동 사업은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과 정부업무평가 포상 내역사업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 중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사업에서 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정부업무평가 지원 위탁사업을 위해 2021회계연도에는 민간위탁사업비 16억 3,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액 집행하였다.

[2021회계연도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 사업 세부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세사업 명	2021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	1,953	1,953	-	-	-	1,953	1,924	-	29
- 상용임금 (110-03)	31	31	-	-	-	31	28	-	3
- 일반수용비 (210-01)	144	144	-	-	-	144	136	-	8
- 임차료 (210-07)	18	18	-	-	-	18	11	-	7
- 복리후생비 (210-14)	0.4	0.4	-	-	-	0.4	0.4	-	-
- 국내여비 (220-01)	28	28	-	-	-	28	28	-	-
- 사업추진비 (240-01)	70	70	-	-	-	70	62	-	8
- 일반연구비 (260-01)	20	20	-	-	-	20	18	-	2
- 민간위탁사업비 (320-02)	1,638	1,638	-	-	-	1,638	1,638	-	-
- 고용부담금 (320-09)	4	4	-	-	-	4	3	-	1
· 정부업무평가 포상	1,400	1,400	-	-	-	1,400	1,396	-	4
- 포상금 등 (310-03)	1,400	1,400	-	-	-	1,400	1,396	-	4
합 계	3,353	3,353	-	-	-	3,353	3,320	-	33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국무조정실

## 2-1. 정부업무평가 지원 위탁사업 계약방식 등 검토 필요

### 가. 현 황

국무조정실은 2021년도 예산이 확정된 후 2020년 12월에 정부업무평가 지원 위탁사업을 조달청을 통해 경쟁입찰을 하였으나 유찰로 인해 한국행정연구원과 수의 계약하였다. 동 위탁계약은 2023년 말까지 약 3개년 총 51억원으로 장기계속계약이며, 2021년 1차 계약상 동 사업의 민간위탁사업비 16억 2,8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었다. 계약시 국무조정실의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센터의 주요 업무는 ① 개별평가 개선·관리 지원, ② 연도별 평가결과 분석 및 개선안 연구, 성과지표 분석 및 개발, 정부업무평가단 관리, 특정평가 운영 및 후속조치 지원 등 특정평가 전문성 지원, ③ 자체평가 및 성과관리 지원, ④ 국정성과 및 실적 정보 DB 구축이다.

[정부업무평가 지원 위탁계약상 기간 및 소요예산]

구분	총차	금차	2차	3차
기간	체결일~'23.12.31	체결일~'21.12.31	'22.1.1~'22.12.31	'23.1.1~'23.12.31
예산	51억원	16.3억원	17.3억원	17.3억원

자료: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 지원 위탁사업 제안요청서」(2020. 12.)

### 나. 분석의견

국무조정실은 정부업무평가 지원 민간위탁 사업을 3개년에 걸친 장기계속계약으로 한국행정연구원과 체결하였는데, 향후 예산편성 시 정부업무평가 지원 위탁사업의 필요성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관련 위탁계약의 적정 계약기간 뿐만 아니라 지원사업의 예산 지원방식 등에 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하 ‘집행지침’)에 따르면 민간위탁사업비는 관련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경쟁입찰 등을 거쳐 수탁기

관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가계약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9조5)에 따르면 장기계속계약은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이 필요한 계약의 경우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위탁업무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위하여 3개년간 총 51억원으로 장기계속계약으로 정무업무평가 지원 위탁계약을 한국행정연구원과 체결하였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민간위탁사업비는 19억 3,800만원이었는데 국회 심사과정에서 동 사업예산의 시급성·필요성 등에 관해 논의하여 3억원이 감액되는 과정에서조차 장기계속계약의 필요성 및 총 소요금액 등에 관해서는 논의되지 않았다. 더욱이 한국행정연구원은 정부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연구기관으로, 한국행정연구원 내 평가연구실 산하에 지원센터가 신설되고 인건비·수당·여비 등 경상경비가 지원된다는 점에서 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장기계속 계약 및 민간위탁사업 방식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회의 심사가 필요하다.

참고로,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정책전략센터 운영<sup>6)</sup>은 민간위탁사업비로 단년도 계약에 근거하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위탁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의 경우 「국가재정법」에 따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재정성과평가센터 설치 근거 및 출연 근거를 마련<sup>7)</sup>하고 출연금(350억)으로 지원하고 있다.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계속비 및 장기계속계약)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재정법」 제23조에 따른 계속비사업에 대하여는 총액과 연부액을 명백히 하여 계속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임차, 운송, 보관, 전기·가스·수도의 공급,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이 필요한 계약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법 제21조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각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단가에 대한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1. 운송·보관·시험·조사·연구·측량·시설관리등의 용역계약 또는 임차계약
2. 전기·가스·수도등의 공급계약
3. 장비,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계약

6) 코드: 여성정책전략기반구축(1231-320) 내 내역사업(양성평등정책기반 강화) 중 내내역사업(양성평등정책 전략 분석)

7) 「국가재정법」

제8조의2(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의 지정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

따라서 국무조정실은 향후 예산편성 시 정부업무평가 지원 위탁사업의 필요성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관련 위탁계약의 적정 계약기간 뿐만 아니라 지원사업의 예산 지원방식 등에 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개발연구원 및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전문 인력 및 조사·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5. 제85조의5제4항에 따른 재정성과평가단의 운영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전문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 2-2. 정부업무평가 지원센터 민간위탁사업 집행 문제 개선 필요

### 가. 현 황

2021년 지원센터의 민간위탁사업비 집행액은 16억 2,800만원으로, 간접경비인 인건비 4억 8,900만원과, 직접경비인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1억 9,700만원, 전문가활용비 3억 7,900만원,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3억 1,900만원 등이 계획되어 전액 집행되었다.

[2021년 정부업무평가 지원 위탁사업 집행내역]

(단위: 원)

구 분	비 목	계약금액	집행금액
①간접경비	인건비	489,498,000	489,498,000
②직접경비	공공요금	4,095,000	4,095,000
	수용비	58,659,000	58,659,000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197,078,000	197,078,000
	여비	30,120,000	30,120,000
	전문가활용비	379,100,000	379,100,000
	회의비	57,537,000	57,537,000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319,015,000	319,015,000
	연구정보활동비	750,000	750,000
③총계 (①+②)		1,535,852,000	1,535,852,000
일반관리비 (③×6%)		92,148,000	92,148,000
합 계		1,628,000,000	1,628,000,000
최종산출금액		1,628,000,000	1,628,000,000

주: 최종산출금액은 만원단위 이하 절사  
자료: 국무조정실

## 나. 분석의견

지원센터의 민간위탁사업 집행상 일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바, 다음의 사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지원센터의 민간위탁사업비 집행에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국무조정실은 민간위탁사무 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위탁기관인 국무조정실에 제출한 민간위탁사업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계약금액과 집행금액이 전 비목에서 동일하며 계약금액 16억 2,800만원 전액 집행되었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위탁사업 첫 해로 계획과 실제 집행상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한국행정연구원에서 당초 산출내역을 3회 변경하여 계약금액과 집행금액이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2021회계연도 한국행정연구원의 정부업무평가 지원 위탁사업 실집행금액은 일반관리비 6%를 반영하여 16억 800만원이며, 실제로는 1차년도 사업비 잔액을 이월 처리하였다. 이는 2021년 말 계약잔금 신청시 예산금액을 기준으로 2021년 집행내역을 제출함에 따라 동 집행내역과 실집행금액 간 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 및 한국행정연구원은 동 위탁계약은 확정계약인바 계약 상대방의 비용지출 내역으로 계약금액을 정산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사업비 집행시기가 12월말부터 다음해 1월에 집중되어 있어서 예산금액으로 계약잔금을 신청하였고 발생한 미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2차년도 사업으로 이월 편성하여 지출할 예정이라는 의견이다.

[2021년 정부업무평가 지원 위탁사업 정산내역 및 실적행금액 비교]

(단위: 원)

구 분	비 목	집행금액[A]	실집행금액[B]	차이 [A-B]
①간접경비	인건비	489,498,000	474,483,110	15,014,890
②직접경비	공공요금	4,095,000	3,533,180	561,820
	수용비	58,659,000	63,188,048	△4,529,048
	연구기자재 및 임차료	197,078,000	197,042,750	35,250
	여비	30,120,000	27,555,680	2,564,320
	전문가활용비	379,100,000	376,150,000	2,950,000
	회의비	57,537,000	57,325,950	211,050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319,015,000	317,161,000	1,854,000
	연구정보활동비	750,000	714,130	35,870
③총계 (①+②)		1,535,852,000	1,517,153,848	18,698,152
일반관리비 (③×6%)		92,148,000	91,029,231	1,118,769
합 계		1,628,000,000	1,608,183,079	19,816,921
최종산출금액		1,628,000,000 <sup>1)</sup>	1,608,183,079	19,816,921

주: 1) 최종산출금액은 만원단위 이하 절사  
 자료: 국무조정실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집행지침에 따르면 업무효율성 향상 등에 따라 비용이 계약금액보다 절감되는 부분은 수탁기관에 귀속되고 위탁사업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폐지될 때 잔액을 국고로 환수하도록 하고 있는바,<sup>8)</sup> 수탁 1년차에 계약금액이 실적행금액과 차이가 날 수는 있다. 그러나 위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민간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다<sup>9)</sup>는 점에서 국무조정실은 수탁기관이 연내 사용가능한 수준으로

8)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中

9. 민간위탁사업비(320-02목)

나. 위탁경비의 산정

○ 업무효율성 향상 등에 따라 비용이 계약금액보다 절감되는 부분은 수탁기관에 귀속한다.

다. 구분계리 및 잔액 국고 환수

○ 위탁사업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폐지될 때에는 이자를 포함하여 잔액을 전액 국고로 환수하여야 한다.

9)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4조(지휘·감독) ① 위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민간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민간위탁사업비를 신청·집행하고 정확하게 집행내역을 제출하도록 할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행정연구원은 ○○행정학회, △△행정학회에 각각 학술대회 후원 및 참여 명목으로 민간위탁사업비 중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비목으로 각 300만원씩 집행하였다. 그러나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사업비는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의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기 위한 것인바, 학술대회 후원은 목적 외 예산집행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의 행정학회 후원 및 참여 관련 집행내역]

(단위: 원)

사업명	비목명	집행일자	집행내용	집행액
정부업무평가 지원 위탁사업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2021. 7. 1.	「2021 ○○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후원 및 KIPA 기획세션」 결과보고	3,000,000
		2021. 12. 13.	「2021 △△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후원 및 정부업무평가포럼」 결과보고	3,000,000

자료: 국무조정실

위와 같이 한국행정연구원 지원센터의 민간위탁사업비 집행에 일부 문제점이 있으므로, 국무조정실은 위탁기관으로서의 지휘·감독 권한을 바탕으로 수탁기관의 업무 처리 및 예산 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원센터의 전자통합평가시스템 고도화 전략 도출 컨설팅 및 개별평가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 구축 용역사업은 평가시스템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이므로 전자통합평가 정보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위탁사업자인 지원센터가 민간위탁사업비로 한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국무조정실 및 지원센터는 정보화 예산을 민간위탁사업비로 집행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지원센터는 민간위탁사업비 중 “전자통합평가시스템(e-IPSES) 고도화 전략 도출 컨설팅” 용역 수행에 외부용역비 1억 1,660만원, “개별평가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DBMS) 구축 사업” 용역 수행에 외부용역비 2억원을 집행하였다.

[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의 시스템 관련 외부용역비 집행내역]

(단위: 원)

사업명	비목명	집행내용	집행액	수행기간
정부업무평가 지원 위탁사업	외부용역비 및 부담금	전자통합평가시스템 (e-IPSES) 고도화 전략 도출 컨설팅 용역	116,600,000	2021. 9. ~2021. 12.
		개별평가 데이터베 이스(DBMS) 구축 사업 용역	200,000,000	2021. 11. ~ 2021. 12.

자료: 국무조정실

전자통합평가시스템 고도화 전략 도출 컨설팅 용역사업은 평가관련 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 전략, 평가데이터 기반의 평가분석시스템 개발 전략, e-IPSES의 협력적 활용방안 도출 등 기존 e-IPSES 고도화 사업 발주를 위한 단계별 추진계획 및 제안요청서를 사전에 수립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정보화사업 성격의 용역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DBMS 구축 용역사업은 DBMS 구축을 위한 DB 구축·업데이트 및 데이터 출력 등 현재까지 누적된 개별평가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계획을 수립하여 DB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사업총괄기관은 한국행정연구원, 협업기관은 국무조정실이, 실무총괄부서는 지원센터가 맡아 용역을 진행하였다. 구축된 DBMS는 국무조정실 서버시스템에 설치되었으며 지원센터가 접근권한을 득하여 활용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비록 민간위탁사업자의 업무 수행을 위한 기능을 구현하는 사업이기는 하나, 국무조정실 내 시스템에 설치되었으며 향후 민간위탁사업자 변경 시에도 동 시스템이 유지된다는 측면에서 민간위탁사업자보다는 국무조정실에서 용역을 주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즉, 두 용역사업 모두 평가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것이고 국무조정실 전자통합평가시스템에 관한 사업인바, 동 용역사업은 국무조정실의 정보화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민간위탁사업비로 수행한 것으로 보여진다. 국무조정실은 각 기관 및 단체가 정부업무평가의 평가과정, 평가결과 및 환류과정에서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

통합평가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전자통합평가 정보화 사업<sup>10)</sup>을 편성·운영하고 있다.

[2021회계연도 전자통합평가 정보화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전자통합 평가 정보화	809	809	-	-	809	800	-	9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국무조정실

[2021회계연도 전자통합평가 정보화 사업 세부 집행내역]

세사업 명	예산 집행 내역
위탁운영 및 유지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01백만원</li> <li>- 민간전문가 사례금: 3백만원</li> <li>- 시설장비유지: 27백만원(255백만원×10.6%)</li> <li>- 응용S/W 유지보수: 118백만원(2,713백만원×4.3%)</li> <li>- 시스템 운영: 353백만원(4명×88백만원)</li> </ul>
시스템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99백만원</li> <li>- 공개 기반의 정부업무평가 포털 구축: 278백만원(278백만원×1식)</li> <li>- 정부업무평가 포털용 검색엔진 구매: 21백만원(21백만원×1식)</li> </ul>

자료: 국무조정실

따라서 향후 국무조정실 및 지원센터는 정보화 사업 성격의 사업을 민간위탁사업비로 우회적으로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향후 국무조정실의 전자통합평가 정보화 예산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10) 코드: 일반회계 7031-305



**국민권익위원회**



# I 결산 개요

## 1 현 황

### 가. 세입·세출 결산

2021회계연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결산은 일반회계만으로 구성된다.

2021회계연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4억 7,900만원이며, 9억 6,7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45%인 4억 3,500만원을 수납하고 5억 3,200만원을 미수납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세입총계는 총수입과 동일하다

[2021회계연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479	479	479	967	435	532	-	45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021회계연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908억 3,500만원이며, 이 중 91.8%인 834억 1,400만원을 지출하고 74억 2,10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세출총계는 총지출과 동일하다.

[2021회계연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90,835	90,835	90,835	83,414	-	7,421	91.8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나. 재무 결산

2021회계연도 말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산은 384억 3,400만원, 부채는 1억 1,200만원으로 순자산은 383억 2,200만원이다.

자산은 유동자산 19억 7,400만원, 투자자산 5,100만원, 일반유형자산 215억 4,800만원, 무형자산 148억 5,800만원, 기타비유동자산 3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8억 6,400만원(△2.2%) 감소하였다. 이는 건물·구축물 등 재산재평가 및 감가상각에 의한 일반유형자산 14억 2,200만원(△6.2%) 감소 등에 기인한다.

부채는 장기충당부채 1억 1,2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9,700만원 (646.7%) 증가하였다. 이는 소송충당부채가 당기 1억 1,200만원으로 집계됨에 따라 전기 대비 9,700만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2021회계연도 국민권익위원회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회계연도	2020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자 산	38,434	39,298	△864	△2.2
Ⅰ. 유동자산	1,974	201	1,773	882.1
Ⅱ. 투자자산	51	29	22	75.9
Ⅲ. 일반유형자산	21,548	22,970	△1,422	△6.2
Ⅳ. 사회기반시설	-	-	-	-
Ⅴ. 무형자산	14,858	15,095	△237	△1.6
Ⅵ. 기타비유동자산	3	1,003	△1,000	△99.7
부 채	112	15	97	646.7
Ⅰ. 유동부채	-	-	-	-
Ⅱ. 장기차입부채	-	-	-	-
Ⅲ. 장기충당부채	112	15	97	646.7
Ⅳ. 기타비유동부채	-	-	-	-
순 자 산	38,322	39,283	△961	△2.4
Ⅰ. 기본순자산	13,678	13,678	-	-
Ⅱ. 적립금 및 양여금	17,751	20,755	△3,004	△14.5
Ⅲ. 순자산 조정	6,893	4,850	2,043	42.1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976억 7,6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총원가 976억 1,500만원, 비배분비용 9,7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비배분수익 3,6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25억 200만원(2.6%) 증가한 976억 7,600만원이며, 이는 국민권익위원회 고유사업 예산 증가에 따른 프로그램순원가가 23억 9,700만원 증가하였고, 비배분비용 6,300만원 증가 및 비배분수익 4,200만원 감소에 따라 비배분손익이 전년도 대비 1억 500만원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권익증진 단일 프로그램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에 따라 프로그램순원가 976억 1,500만원은 모두 국민권익증진 프로그램원가이다.

그 밖에 단일 프로그램으로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관리운영비로 집계된 원가는 없으며, 비배분비용은 소송충당부채전입액 9,700만원이며, 비배분수익은 기타수익 3,6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1회계연도 국민권익위원회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회계연도	2020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프로그램순원가(가-나)	97,615	95,218	2,397	2.5
가. 프로그램 총원가	97,615	95,218	2,397	2.5
나. 프로그램 수익	-	-	-	-
II. 관리운영비	-	-	-	-
III. 비배분비용	97	34	63	185.3
IV. 비배분수익	36	78	△42	△53.8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97,676	95,174	2,502	2.6
VI. 비교환수익 등	-	-	-	-
VII. 재정운영결과(V - VI)	97,676	95,174	2,502	2.6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의 2021년도 기초순자산은 392억 8,3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383억 2,200만원으로 기초 대비 9억 6,100만원(2.4%) 감소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는 976억 7,600만원으로 집계되었으나, 순자산 가산항목인 조정항목은 20억 4,300만원,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676억 7,200만원으로 집계되어 순자산 차감항목이 가산항목을 초과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21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제재금수익, 기타비교환수익, 무상이전수입 및 기타재원조달 등 재원의 조달 953억 5,900만원과 국고이전이출 및 무상이전지출 등 재원의 이전 4억 3,500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자산재평가이익 20억 4,300만원 등으로 구성된다.

[2021회계연도 국민권익위원회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회계연도	2020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기초순자산	39,283	28,861	10,422	36.1
II. 재정운영결과	97,676	95,174	2,502	2.6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94,672	105,600	△10,928	△10.3
IV. 조정항목	2,043	△4	2,047	51,175.0
V. 기말순자산(I - II + III + IV)	38,322	39,283	△961	△2.4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2

### 2021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국민권익위원회의 2021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은 없으며,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청렴권익정책알리기 사업이 있다.

청렴권익정책알리기 사업은 예산절감 노력차원에서 필요성이 시급하지 않은 홍보예산 5,000만원이 감액(16억 6,800만원→16억 1,800만원)되었다.<sup>1)</sup>

## 3

### 2021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국민권익위원회는 ① 반부패·공정개혁 체감 성과 창출, ②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강화, ③ 신속한 고충해소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적극행정 추진을 2021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21회계연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각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별 보상금에 대한 추계가 부정확하여 예산의 빈번한 내역변경 및 불용이 반복되고 있다.

둘째, 지자체 및 공공기관 보상금 상환금 관련 미수납액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보상금 상환금이 법정기한 내에 수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1) 정부위원회, 「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20. 11.  
국회,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20. 12.

## 1

## 부패·공익신고자 등 보호·보상 제도의 보상금 지급 및 상환 관련 개선 필요 사항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자 보호·보상에 관한 사업으로는 부패신고자보호보상<sup>1)</sup>, 공익신고제도 운영<sup>2)</sup>, 정부보조금통합신고센터 및 공공재정환수제도<sup>3)</sup>, 청탁금지제도 운영<sup>4)</sup>, 이해충돌방지제도운영<sup>5)</sup>이 있다.

① 부패신고자보호보상은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보상을 통하여 신고를 활성화하고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고, ② 공익신고제도 운영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지원을 통해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공익신고에 대한 사회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며, ③ 정부보조금 통합신고센터 및 공공재정환수제도는 정부보조금 통합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공공재 정지급금 부정청구등 신고 접수·처리 및 부정이익 등의 환수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제도를 운영하며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④ 청탁금지제도운영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신고 조사 등을 처리하고, 신고자 보상·포상을 하며, 각급 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 교육 등을 하는 사업이다. ⑤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사업은 2022년 5월 시행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업무담당자 교육·강의 및 각종 교육자료 지원, 대국민 홍보 및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상·포상 등을 하는 사업이다.

강지혜 예산분석관(jihyekang@assembly.go.kr, 6788-4626)

1) 코드: 일반회계 1136-364

2) 코드: 일반회계 1136-365

3) 코드: 일반회계 1136-366

4) 코드: 일반회계 1136-367

5) 코드: 일반회계 1136-368

[각 법률의 신고자 보상금 제도 관련 내용 비교]

사업명	공익 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 권익위법	청탁금지법	공공재정 환수법	이해충돌 방지법
보상금 지급 대상	내부 신고자	권익위 신고자		모든 신고자	
지급 요건	국가 또는 지자체의 수입 회복시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 및 비용 절감이 있는 경우			
지급 사유	벌칙·통고처분	○	○	-	○
	몰수·추징금	○	○	-	○
	과태료·과징금	○	○	-	○
	이행강제금			-	-
	국세·지방세	○	○	-	○
	부담금·가산금	-	-	-	-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	○	-	○
	-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	○	-	○
	-	-	-	부정이익 등 환수	-
-	-	-	제재부기금 부과	-	
보상금 지급 비율	4~20%	4~30%	4~30%	정률 30%	4~30%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1-1. 보호·보상 제도 별 보상금 내역변경 및 불용액 최소화 필요

### 가. 현 황

① 부패신고자보호보상 사업의 경우 2021년도 본예산 25억 8,200만원에서 부패신고자 보상금 등의 부족으로 공익신고제도운영 포상금목에서 총 9억 5,900만원을 내역변경하여 예산현액 35억 4,100만원 대비 100%(본예산대비 137.1%)인 35억 4,0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불용액은 100만원이다. ② 공익신고제도 운영의 경우 2021년도 예산액 22억 4,200만원에서 부패신고자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자 보상금 부족 등으로 총 9억 9,600만원 내역변경하여 예산현액 12억 4,600만원 중 86.4%인 10억 7,700만원(본예산 대비 48%)이 집행되었고, 1억 6,900만원이 불용되었다.

③ 정부보조금통합신고센터 및 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의 경우 2021년도 예산액 4억 100만원에서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자 보상금 부족으로 3,700만원 내역변경하여 예산현액 4억 3,800만원 중 82%(예산액 대비 89.5%)인 3억 5,900만원이 집행되었고 7,900만원이 불용되었다. ④ 청탁금지제도의 경우 2021년도 예산액 5억 900만원에서 기관운영 기본 경비 등 4,000만원을 자체전용하여 예산현액 4억 6,900만원 중 45.9%(예산액대비 42.3%)인 2억 1,500만원이 집행되었고 2억 5,400만원이 불용되었다. ⑤ 이해충돌방지제도운영은 「이해충돌방지법」(2022.05.18.)에 따라 신설되어 2022년 예산안부터 신규 편성되었다.

[2021회계연도 보호·보상 관련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A/C)	(B/C)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2,582	2,582	0	959	3,541	3,540	137.1	100.0	0	1
공익신고제도 운영	2,242	2,242	0	△996	1,246	1,077	48.0	86.4	0	169
정부보조금 통합신고센터 및 공공재정 환수제도 운영	401	401	0	37	438	359	89.5	82.0	0	79
청탁금지 제도운영	509	509	0	40	469	215	42.3	45.9	0	254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나. 분석의견

각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별 보상금에 대한 추계가 부정확하여 예산의 빈번한 내역변경 및 불용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국민권익위원회는 보상금 신청 및 집행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신고자 보상금 등 부족으로 인하여 공익신고제도운영포상금목에서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으로 총 9억 5,900만원을,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자 보상금 부족으로 인하여 공익신고제도운영 포상금에서 3,700만원을 내역변경하였다.

[내역변경 내용]

(단위: 백만원)

구분	~에서		금액	~으로	
	세부사업 명 (단위사업-세부사업)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단위사업-세부사업)	목-세목 코드
내역 변경	공익신고제도운영 (1136-365)	포상금 (310-03)	130	부패신고자보호보상 (1136-364)	포상금 (310-03)
	공익신고제도운영 (1136-365)	포상금 (310-03)	829	부패신고자보호보상 (1136-364)	포상금 (310-03)
	공익신고제도운영 (1136-365)	포상금 (310-03)	37	정부보조금통합신고센 터및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1136-366)	포상금 (310-03)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신고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의 보상금 부족 및 내역변경 사유로, 부패신고의 경우 '19년의 불용액 발생(790백만원)으로 인해 2021년 당초 예산의 경우 증가하는 부패신고 등 수요에 상응하는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20.1월 도입된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보상금 제도는 국민권익위원회 외에 다른 공공기관으로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도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사유 등으로 보상금 신청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3년간 각 보호·보상제도 보상금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	연도	당초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B)	집행액 (C) [실집행액]	집행률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C/A)	(C/B)		
부패 신고자 보호 보상	2019	3,240	0	0	3,240	2,450	75.62	75.62	0	790
	2020	3,198	0	646	3,844	3,844	120.20	100.00	0	0
	2021	2,547	0	959	3,506	3,506	137.65	100.00	0	0
공익 신고 제도 운영	2019	2,013	0	0	2,013	1,869	92.85	92.85	0	144
	2020	2,165	0	△506	1,659	1,657	76.54	99.88	0	2
	2021	2,165	0	△996	1,169	1,004	46.37	85.89	0	165
정부보조금 통합 신고센터 및 공공재정 환수제도 운영	2019									
	2020	115	0	△115	0	0	0.00	0.00	0	0
	2021	115	0	37	152	151	131.30	99.34	0	1
청탁 금지 제도 운영	2019									
	2020	56	0	△25	31	26	46.43	83.87	0	5
	2021	56	0	0	56	8	14.29	14.29	0	48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패처리 신고건수 및 전체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 처리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자 공익신고 처리건수는 2019년 이후로 감소 추세이며<sup>6)</sup>, 보상금 지급 금액 및 평균 지급금액 또한 감소하고 있다. 부패 신고 및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공익신고 전반의 신고 및 처리 건수 상승 추세를 감안하더라도 최근 2년간 지속적으로 보호보상제도 간 내역변경 및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보상금 신청 현황과 최근 집행추이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예산 편성 시 반영하는 등 예산추계의 정확도를 제고하고 자체 내역변경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6)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 보상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닌 다른 공공기관에 접수되는 신고에 대해서도 지급이 가능하므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 처리 건수 감소와 보상금 신청 및 지급액이 감소하더라도 보상금 지급금액이 증가할 수 있으며, 최근 권익위의 공익신고 보상금 신청 및 지급액이 감소한 사유는 '16.1월 법령 개정으로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대상이 '내부 공익신고자'로 제한되면서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최근 5년 부패·공익 신고 건수 및 보상금 지급 건수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권익위 부패신고 처리건수	396	761	974	1,544	2,641
보상금 신청건수	125	151	1,361	1,425	2,280
보상금 지급건수	113	166	196	237	485
보상금 지급금액	2,108	3,115	2,304	3,836	3,397
평균 지급금액	18.7	18.8	11.8	16.2	7
공공기관 공익신고 처 리건수	1,690,394	1,654,539	2,990,979	3,209,095	5,321,804
권익위 공익신고 처리건수	619	980	2,575	3,604	2,053
보상금 신청건수	853	609	398	405	322
보상금 지급건수	1,710	277	211	249	138
보상금 지급금액	1,976	2,213	1,534	1,560	811
평균 지급금액	1.2	8	7.3	6.3	5.9

주: 1. 권익위 부패신고 및 공익신고 처리 건수는 권익위로 접수된 부패·공익신고 중 종결을 제외한 이첩(고발)·기관송부 등을 말함

2. 공공기관 공익신고 처리건수의 경우 권익위에서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익신고 처리현황을 조사하여 단순 취합하는 통계로 전체 공익신고 처리건수를 말함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1-2. 부패 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자체 및 공공기관 상환액의 납부실적 제고 필요

### 가. 현 황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및 제29조에 따라가 공익신고로 인해 지자체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이나 증대가 있는 경우, 지자체로부터 공익신고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 받도록 하고 있으며, 보상금의 지급결정을 통지 받은 지자체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권익위에 상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제2항 및 제4항, 제70조의2<sup>8)</sup>에 따라 부패신고로 인해 공공기관(동법 제2조제1호가목 중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기관은 제외)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 7)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보상금) ① 내부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벌칙 또는 통고처분
2.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4.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이나 판결

제29조(보상금과 구조금의 환수 등) ① 위원회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보상금 또는 구조금 신청인에게 반환할 금액을 통지하여야 하고 그 보상금 또는 구조금 신청인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1. 보상금 또는 구조금 신청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구조금 신청인이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받았으나 보상심의위원회가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심의·의결한 경우
3. 구조금 신청인이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급받은 구조금이 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지급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4.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보상금 또는 구조금이 지급된 경우
5.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 또는 구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위원회로부터 제26조제6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결정을 통지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위원회가 보상금 지급 신청인에게 지급한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한다.

####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0조의2(보상금 등의 상환 및 환수) ① 위원회는 제68조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제2조제1호가목 중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기관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원회에 상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환을 요구받은 공공기관은 해당 금액을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한다.

절감이 있는 경우, 상환을 요구받은 공공기관은 3개월 이내에 부패신고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상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상금 상환 등에 따른 2021년도 국민권익위원회 기타경상이전수입 예산액은 3억 6,900만원이나 7억 6,5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3억 9,300만원을 수납(징수결정액 대비 51.4%)하였고 미수납액은 3억 7,200만원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기타경상이전 수입)은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방자치단체 상환액 및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금 상환액, 민간보조금 집행잔액, 과오납금 반환 등으로 구성된다.

[2021회계연도 기타경상이전수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세입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기타경상 이전수입	369	369	369	765	393	372	0	51.4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보상금 상환대상은 공익신고는 지방자치단체, 부패신고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기관으로 제한되며 보상금 상환 비율은 공익신고의 경우 지자체 100%, 부패 신고의 경우 2021년 연도말 징수결정액 기준 지자체(78.5%), 지자체 제외 공공기관 (21.5%)이다. 신고로 인한 국가의 수입 회복 등은 보상금 상환대상에서 제외된다.

## 나. 분석의견

**지자체 및 공공기관 보상금 상환금 관련 미수납액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상금 상환금이 법정기한 내에 수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부패·공익 신고 보상금의 법정 상환기간은 3개월이나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보상금 상환 결정 이후 연례적으로 납부기한을 초과한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는 2019 및 2020회계연도 시정요구를 통해 개선할 것을 지적하였으나 2021회계연도에도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상금상

9) 코드명: 일반회계 59-596

환의 경우 징수결정액의 50.8%에 달하는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상금상환의 경우 3년 연속 미수납액이 발생하였다.

[최근 3년간 공익신고자 보상금 상환 및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금 상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연도	예산		세입 예산현 액	징수 결정액 (B)	수납액 (C)	미수납 액	불납 결손 액	수납률	
		본예산	추경 (A)						(C/A)	(C/B)
공익신고자 보상금 상환	2019	354	354	354	170	119	51	0	33.6	70.0
	2020	348	348	348	271	215	56	0	61.8	79.3
	2021	306	306	306	102	55	47	0	18.0	53.9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금 상환	2019									
	2020	30	30	30	14	9	5	0	30.0	64.3
	2021	30	30	30	628	303	325	0	1010	48.2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보상금 신청 및 지급 건수 증가로 인해 보상금 상환액 또한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보상금 상환 지연 건수 역시 증가하고 있으나 지연 상환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sup>10)</sup>

[2019~2021년 보상금 상환요청 대비 지연상환 건수]

(단위: 건,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상환요청 건수(A)	867	172	41	46	392	1,518
지연상환 건수(B)	78	15	8	6	30	137
지연상환 비율(B/A)	9.0	8.7	19.5	13.0	7.7	9.0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10)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정확한 상환액을 파악하기 어렵고, 신고로 인하여 수입회복이 발생한 사업의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야 납부가 가능하여 추가경정예산 및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을 통해 상환액을 납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패신고의 경우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제도(19.10.17. 시행)의 도입 초기로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타경상이전수입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상환에 대해 납기를 도과한 상황 지연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금 상환의 경우 직접적으로 세출에 활용되지는 않더라도 당초 예산 대비 보상금 지급액이 더 커서 내역 변경 등을 통해 추가 재원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예산 확보가 중요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보상금 상환절차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

[최근 3년간 공익신고자 보상금 상환 및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금 상환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연도	신고자 보상금 예산액	신고자 보상금 지급액	보상금 상환 결정액	보상금 수납액	미수납액
공익신고자 보상금 상환	2019	1,884	1,535	170	119	51
	2020	2,036	1,561	271	215	56
	2021	2,036	811	102	55	47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금 상환	2019					
	2020	3,108	3,836	14	8	5
	2021	2,457	3,397	628	303	325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이러한 점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신고자 보상금 상환액의 기한 내 납부를 위해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협의하는 등 보상금 상환금이 법정 기한 내에 수납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국가보훈처



## 1

## 현황

## 가. 세입·세출 결산

2021회계연도 국가보훈처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89억 2,600만원이며, 104억 9,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39.5%인 41억 3,900만원을 수납하고 61억 5,7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1억 9,400만원을 불납결손처리 하였다.

[2021회계연도 국가보훈처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8,820	8,820	8,820	10,354	4,020	6,140	194	38.8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	61	61	61	61	44	17	-	72.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45	45	45	75	75	-	-	100.0
합 계	8,926	8,926	8,926	10,490	4,139	6,157	194	39.5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국가보훈처

2021회계연도 국가보훈처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5조 6,897억 4,400만원이며, 이 중 99.3%인 5조 6,476억 300만원을 지출하고 188억 3,1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33억 1,0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21회계연도 국가보훈처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5,663,279	5,663,279	5,669,751	5,630,167	18,831	20,753	99.3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	17,860	17,860	17,860	15,303	-	2,557	85.7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133	2,133	2,133	2,133	-	-	100.0
합 계	5,683,272	5,683,272	5,689,744	5,647,603	18,831	23,310	99.3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국가보훈처

나. 기금 결산

2021회계연도 국가보훈처 소관 기금의 수정 수입계획액은 9,973억 1,200만원이며, 6,180억 6,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7.0%인 5,992억 3,400만원을 수납하고 181억 1,7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7억 1,500만원을 불납결손처리 하였다.

[2021회계연도 국가보훈처 소관 기금 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수입계획		계획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당초	수정						
보훈기금	835,966	835,966	835,966	451,024	432,198	18,111	715	95.8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	161,346	161,346	161,346	167,042	167,036	6	-	100.0
합 계	997,312	997,312	997,312	618,066	599,234	18,117	715	97.0

자료: 국가보훈처

2021회계연도 국가보훈처 소관 기금의 수정 지출계획액은 9,973억 1,200만원이며, 이 중 60.1%인 5,992억 3,400만원을 지출하고 81억 9,2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다.

[2021회계연도 국가보훈처 소관 기금 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지출계획		계획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당초	수정					
보훈기금	835,966	835,966	835,966	432,198	-	7,888	51.7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	161,346	161,346	161,346	167,036	-	304	103.5
합 계	997,312	997,312	997,312	599,234	-	8,192	60.1

자료: 국가보훈처

**다. 총수입총지출 결산**

2021회계연도 국가보훈처 소관 총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1,275억 7,700만원(△58.3%)이 감소한 910억 9,3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22억원(2.5%)이 증가하였다.

[2021회계연도 국가보훈처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0 결산(A)	2021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산	4,674	8,926	8,926	4,139	△4,787	△535
기금	84,207	209,744	209,744	86,954	△122,790	2,747
합계	88,881	218,670	218,670	91,093	△127,577	2,212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국가보훈처

2021회계연도 국가보훈처 총지출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438억 4,300만원(△0.8%)이 감소한 5조 8,016억 4,0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1,474억 3,000만원(2.6%)이 증가하였다.

[2021회계연도 국가보훈처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0 결산(A)	2021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산	5,428,709	5,602,446	5,602,446	5,566,777	△35,669	138,068
기금	225,501	232,519	243,042	234,863	△8,179	9,362
합계	5,654,210	5,834,965	5,845,488	5,801,640	△43,843	147,430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국가보훈처

**라. 재무 결산**

2021회계연도 말 현재 국가보훈처의 자산은 2조 2,845억 9,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394억 8,200만원(11.7%) 증가하였는데, 이는 유동자산이 감소했음에도 대전현충원 충혼당 및 제주호국원 건립 완공에 따라 신규 취득 및 자본적 지출 등에 의해 일반유형자산이 2,574억 5,200만원(17.0%) 증가한데 기인하다.

부채는 616억 8,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억 7,100만원(△1.2%) 감소하였는데, 이는 유동부채가 11억 4,600만원(△12.2%) 감소한 것에 기인하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2,402억 5,400만원(12.1%) 증가한 2조 2,229억 1,200만원이다.

[2021회계연도 국가보훈처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회계연도(A)	2020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자 산	2,284,595	2,045,113	239,482	11.7
Ⅰ. 유동자산	266,184	302,031	△35,847	△11.9
Ⅱ. 투자자산	235,295	219,508	15,787	7.2
Ⅲ. 일반유형자산	1,767,653	1,510,201	257,452	17.0
Ⅳ. 무형자산	8,010	8,300	△290	△3.5
Ⅴ. 기타비유동자산	7,453	5,072	2,381	46.9
부 채	61,683	62,454	△771	△1.2
Ⅰ. 유동부채	8,274	9,420	△1,146	△12.2
Ⅱ. 장기차입부채	-	-	-	-
Ⅲ. 장기충당부채	1,949	1,573	376	23.9
Ⅳ. 기타비유동부채	51,461	51,461	-	-
순 자 산	2,222,912	1,982,658	240,254	12.1
Ⅰ. 기본순자산	848,492	848,492	-	-
Ⅱ. 적립금 및 양여금	653,881	633,161	20,720	3.3
Ⅲ. 순자산 조정	720,539	501,005	219,534	43.8

자료: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는 2021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 5조 6,369억 1,600만원이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총원가 5조 6,503억 1,300만원, 관리운영비 1,407억 5,200만원, 비배분비용 75억 3,9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프로그램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374억 6,900만원, 비배분수익 776억 6,100만원, 비교환수익 등 465억 5,9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1,589억 2,000만원 증가한 5조 6,834억 7,500만원이며, 이는 주로 국가보훈처 사업예산 증가 등에 기인한다.

총 10개의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순원가가 큰 프로그램은 보훈심사 및 보상프로그램 4조 4,662억 3,300만원과 보훈의료복지 8,140억 3,8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901억 3,800만원과 경비 506억 1,4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평가손실 70억 6,800만원과 대손상각비 3억 3,700만원, 기타비용 1억 2,8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1회계연도 국가보훈처 재정부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회계연도(A)	2020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I. 프로그램순원가(가-나)	5,612,844	5,419,403	193,441	3.6
가. 프로그램 총원가	5,650,313	5,453,192	197,121	3.6
나. 프로그램 수익	37,469	33,789	3,680	10.9
II. 관리운영비	140,752	127,184	13,568	10.7
III. 비배분비용	7,539	3,628	3,911	107.8
IV. 비배분수익	77,661	25,659	52,002	202.7
V. 재정부영순원가(I+II+III-IV)	5,683,475	5,524,555	158,920	2.9
VI. 비교환수익 등	46,559	44,753	1,806	4.0
VII. 재정부영결과(V-VI)	5,636,916	5,479,802	157,114	2.9

자료: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의 2021회계연도 기초순자산은 1조 9,826억 5,800만원이고, 기말 순자산은 2조 2,229억 1,200만원으로 기초 대비 2,402억 5,400만원(12.1%) 증가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부영결과는 기초 대비 1,571억 1,400만원 증가한 반면, 순자산 가산항목인 조정항목은 기초 대비 1,820억 3,200만원,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기초 대비 1,340억 7,700만원 증가하여 순자산 가산항목이 차감항목을 초과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21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제재금수익, 무상이전수입, 기타재원조달 등 재원의 조달 5조 6,635억 8,000만원과 국고이전지출, 무상이전지출 등 재원의 이전 59억 4,500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투자증권평가손익 29억 2,600만원, 자산재평가이익 2,225억 7,400만원 등으로 구성된다.

[2021회계연도 국가보훈처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회계연도(A)	2020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I. 기초순자산	1,982,658	1,901,401	81,257	4.3
II. 재정부영결과	5,636,916	5,479,802	157,114	2.9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5,657,635	5,523,558	134,077	2.4
IV. 조정항목	219,534	37,502	182,032	485.4
V. 기말순자산(I-II+III+IV)	2,222,912	1,982,658	240,254	12.1

자료: 국가보훈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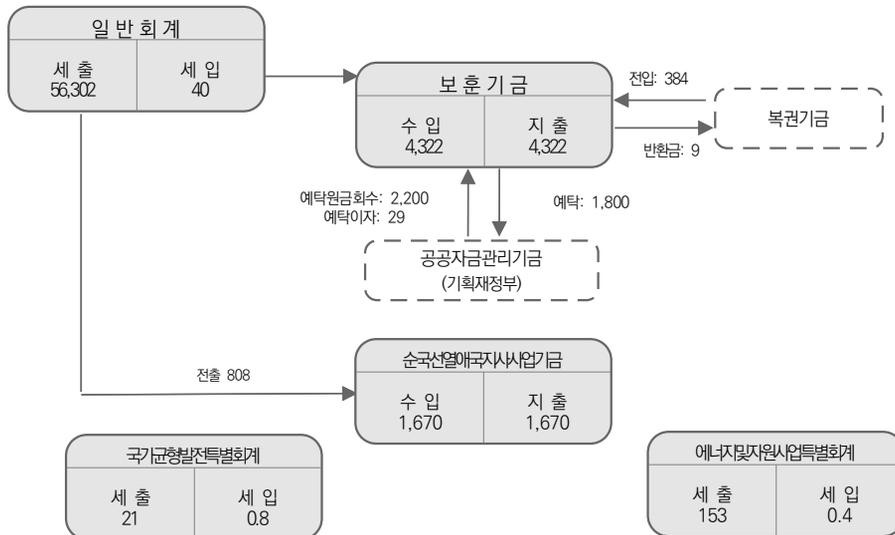
## 마. 재정 구조

2021회계연도 국가보훈처의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회계·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은 일반회계로부터 808억원을 전입 받고, 보훈기금은 보훈요양원 건립, 국가유공자등 노후복지지원, 중상이자 편의시설 공급 사업을 위하여 복권기금으로부터 384억원을 전입 받았다.

[2021회계연도 국가보훈처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

(단위: 억원)



주: 총계 기준  
자료: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의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및 보훈기금운용계획변경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증축 사업**, ②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 사업**이 있다.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증축 사업은 연내 실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29억원이 감액(56억 1,800만원→27억 1,800만원)되었고,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 사업은 직원 역량강화 교육 증액분 1억 5,300만원이 감액(7억 9,700만원→6억 4,400만원)되었다<sup>1)</sup>.

국회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으로는 ① **참전명예수당**, ② **현충시설 건립**, ③ **국립영천호국원 사업** 등이 있다.

참전명예수당은 고령 참전유공자 등의 명예선양 및 생활안정을 위해 390억원이 증액(6,256억원→6,646억원)되었고, 현충시설 건립 사업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공사 및 상징기념물 건립, 함평4·8만세운동기념관 건립지원을 위하여 28억 300만원이 증액 (591억 6,400만원→619억 6,700만원)되었으며, 국립영천호국원은 국가유공자 묘역확충을 위한 제3봉안당 건립 보상비 및 설계비 등 18억 5,100만원(32억 5,700만원→51억 800만원)이 증액되었다<sup>2)</sup>.

국회심사 과정에서 **부대의견이 채택된 사업**으로 ① **보상금 및 수당 사업**이 있다. 보상금 및 수당 사업에 대하여 “국가보훈처는 복지급여 지급을 위한 소득 산정에 있어 보훈급여 종류에 따른 산정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는 내용이 부대의견으로 채택되었다<sup>3)</sup>.

1) 국회,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20.12.

2) 국회,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20.12.

3) 국회,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20.12.

국가보훈처는 ①보상금 및 수당 인상, ②의료·복지 서비스 개선, ③국립묘지 신규 조성 및 확충, ④ 독립·호국 관련 현충시설 건립사업 확대 등을 2021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21회계연도 국가보훈처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감사원 감사 결과 부적정한 보훈대상자 등록 및 보훈급여금 지급 사실이 사후적으로 확인되었으므로, 국가보훈처는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범죄경력조회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하고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확대·내실화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가유공자 등의 교통시설 감면 이용을 위한 적정 규모의 보조금이 지급되지 못함에 따라 운송업체와 국가유공자 등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가보훈처는 국가가 이용감면액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후정산 방식으로 사업을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

보훈대상자 등록 및 보훈급여금 지급 관리 철저 필요 등

가. 현 황

기타경상이전수입 사업<sup>1)</sup>은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급된 보훈급여금·교육비 과  
오급금 환수 및 국고보조금 정산 반환에 따른 세입을 계상하는 항목이다. 국가보훈  
처는 기타경상이전수입 사업의 징수결정액 97억 6,000만원 중 34억 5,400만원을  
수납하였고, 61억 1,2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1억 9,400만원을 결손처리하였다.

[2021회계연도 기타경상이전수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기타경상 이전수입	7,851	7,851	7,851	9,760	3,454	6,112	194	8,15 5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급여 등을  
지급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행정상 착오 등으로 잘못 지급된 경  
우 해당 보훈급여금을 환수하고 있다.<sup>2)</sup> 또한,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취소

김용오 예산분석관(kyo8810@assembly.go.kr, 6788-4687)

1) 코드: 일반회계 59-596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라 보상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학습보조비(제25조 및 제25조의2에 따라 보조받은 수업료  
등을 포함한다), 제38조에 따른 직업재활훈련비·직업능력개발훈련비, 제39조에 따른 능력개발 장  
려금·지원비, 제42조 및 제42조의2에 따른 의료지원비, 제55조에 따른 보조금 및 제63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환수하여 동 세입항목에 계상하고 있다.<sup>3)</sup>

2021년 국가보훈처 기타경상이전수입 수납 현황을 유형별로 구분해보면 아래와 같다.

[2021회계연도 기타경상이전수입 유형별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보훈급여금 과오불	5,879	1,187	189	4,503
국고보조금정산 반납금	2,106	1,661	-	445
교육비 지원 과오불	153	134	-	19
광복회관 임차보증금 관련	1,083	206	-	877
의료지원비 과오불 등 기타	539	267	4	268
합 계	9,760	3,454	194	6,112

자료: 국가보훈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2.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3. 잘못 지급된 경우
    -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 보훈급여금 등을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에 따라 보훈급여금 등을 징수할 때 반환할 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처분(缺損處分)할 수 있다.
-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나. 분석의견

첫째, 감사원 감사 결과 부적정한 보훈대상자 등록 및 보훈급여금 지급 사실이 사후적으로 확인되었으므로, 국가보훈처는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범죄경력조회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하고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확대·내실화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sup>4)</sup>에 따라 보훈대상자가 중대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보훈대상자 본인 및 그 유족 등에게 보상을 중단하기 위하여 경찰청, 법무부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통해 범죄사실을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범죄사실 확인 결과 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 등이 범죄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보훈급여를 수급한 경우(부정수급), 담당 공무원이 범죄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보훈급여를 지급한 경우(행정착오), 범죄경력이 조회되지 않았거나 군기록이 정정되는 경우(기타)가 확인되면 과오불금으로 결정하고 환수절차를 진행한다.

그런데 2021년 국가보훈처 보훈급여금 과오불금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건수는 전년 대비 112건 증가(78.9%)한 254건이고, 전체 금액은 전년 대비 28억 8,200만원 증가(456.0%)한 35억 1,400만원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발생 사유별로도 모든 사유에서 과오불금 발생 건수와 금액이 전

###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1.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2.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중략)

4.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5. 상습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사람

②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년 대비 급증하였다.

[최근 5년간 보훈급여금 과오불금 발생 사유별 현황]

(단위: 건, 백만원)

연도	부정수급		행정착오		기타 <sup>1)</sup>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7	42	695	40	96	51	84	133	875
2018	41	560	12	18	43	151	96	729
2019	42	596	19	77	63	201	124	874
2020	55	364	27	164	60	104	142	632
2021	87	1,664	41	411	126	1,439	254	3,514

주: 1) 군기록 정정, 단순 사망신고 지연 등의 경우

1. 당해연도에 과오불 결정을 내린 건수 및 금액

자료: 국가보훈처

이처럼 과오불금 발생 건수와 금액이 급증한 이유는 보훈급여금 지급 현황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중대범죄가 확정된 보훈대상자 등록 및 사후관리 미흡 사실이 밝혀지면서 해당 건수와 금액이 2021년 과오불금으로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즉, 보훈대상자 신청자에 대한 범죄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보훈대상자로 등록한 경우, 기등록 보훈대상자에 대한 주기적 범죄경력조회<sup>5)</sup> 결과 등록 이후 범죄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보훈급여금을 계속하여 지급한 경우, 경찰청 등으로부터 범죄경력자료를 받고도 행정상 착오로 법적용 배제 조치를 하지 않아 보훈급여금을 계속하여 지급한 경우 등이 감사원 감사 결과에 의하여 사후적으로 확인된 것이다.<sup>6)</sup>

5) 「등록관리예규」에 따라 기등록자에 대하여 연 3~4회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있다.

6) 국가보훈처는 감사 결과에 대하여 이견 없이 수용하였다.

[중대범죄확정 보훈대상자 등록 및 사후관리 부적정 감사원 감사 결과]

감사 항목		보훈대상자 등록업무 부당 처리	보훈대상자 사후관리 업무 부적정	
감사 내용		중대범죄 확정된 자 보훈대상자 등록	중대범죄 확정사실 미확인 및 행정상 착오로 인한 보훈대상자 등록	보훈대상자 등록 이후 중대범죄 확정되었음에도 법적용 배제 미조치
감사 결과	인원	22명	145명	16명
	금액	약 27억 9,400만원	약 91억 6,100만원	

자료: 감사원 통보서 및 국가보훈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이처럼 보훈대상자 등록 및 보훈급여금 지급 과정에서 중대범죄경력 사실에 대한 확인이 미흡하여 과오불금이 발생하는 것은 중대범죄를 범한 자를 보훈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보훈대상자들의 준법정신을 도모하고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범죄경력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상 착오로 인하여 보훈급여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사후적으로 밝혀지는 것은 정부의 보훈행정 의지와 역량에 대한 신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나아가 이렇게 잘못 지급된 보훈급여금 과오불금에 대한 수납실적이 부진하여 보훈급여금 과오불금 미수납액이 매년 기타경상이전수입 전체 미수납액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등 과오불금 환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 세입재원의 공백을 가져올 수 있으며, 선량한 보훈대상자와의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또한, 행정상 착오로 인해 발생한 환급절차가 진행될 경우 수급자 입장에서는 예측하지 못한 손해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국가보훈처는 향후 중대범죄사실이 있는 자가 보훈대상자로 지정되거나 부당하게 보훈급여금이 지급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범죄경력조회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하고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확대·내실화하는 등의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최근 5년간 보훈급여금 과오불금 수납 실적]

(단위: 백만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2017	보훈급여금 과오불	4,301	1,033	94	3,174
	전체 기타경상이전수입	6,317	2,076	98	4,143
2018	보훈급여금 과오불	3,893	760	361	2,772
	전체 기타경상이전수입	10,679	6,455	425	3,800
2019	보훈급여금 과오불	3,506	1,031	226	2,249
	전체 기타경상이전수입	6,046	2,509	230	3,307
2020	보훈급여금 과오불	3,048	626	29	2,393
	전체 기타경상이전수입	7,859	4,231	30	3,598
2021	보훈급여금 과오불	5,879	1,187	189	4,503
	전체 기타경상이전수입	9,760	3,454	194	6,112

자료: 국가보훈처

**둘째, 광복회관 임차보증금 및 이자 등의 채권 환수가 재차 지연되지 않도록 현재 진행 중인 임차료 상계 절차를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국가보훈처는 과거 광복회 소유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통해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나, 2013년 12월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였고, 이에 따라 광복회로부터 7억 4,600만원의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당시 광복회의 재정여건이 열악하여 임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2014년부터 미수납 임차보증금과 그에 따른 이자를 기타경상이전수입 미수납액으로 계상하고 있다. 이후 지속적인 납입 고지와 독촉에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 등을 반환받지 못하였으며, 2021년말 기준 광복회관 임차보증금과 이자를 합한 채권 총액은 약 8억 7,700만원 규모이다.

[2021년말 기준 임차보증금 및 이자 등 채권 규모]

(단위: 원)

채권 총액	임차보증금	연납이자	연체이자
876,707,340	746,000,000	113,485,690	17,221,650

자료: 국가보훈처

또한, 국가보훈처는 광복회의 요청에 따라 세 차례의 이행연기특약 승인을 통해 이행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다. 그러나 세 차례 연장된 이행기간에도 불구하고 광복회가 납부한 금액은 연체이자 약 3,800만원에 불과하였다.<sup>7)</sup>

[광복회관 임차보증금 채권 이행기한 연장 내역]

구분	1차 연장	2차 연장	3차 연장
기한	2014.1.1. ~ 2017.6.30.	2017.7.1. ~ 2018.12.31.	2019.1.1. ~ 2020.12.31.

자료: 국가보훈처

한편, 2021년부터 국가보훈처는 광복회에 지급해야 할 토지임차료와의 상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해당 토지임차료는 국가보훈처가 광복회 소유 토지에 현재의 광복회관 건물(국가보훈처 소유)을 신축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2022년 기준으로 11억 5,500만원의 임차료 지급 예산이 반영되어 있다. 국가보훈처는 분기별로 5,150만원의 임차보증금 미수납액을 토지임차료와 상계하여 2026년까지 완납 처리할 예정이다.<sup>8)</sup>

다만, 이처럼 장기간 채권 회수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국가의 세입재정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고 채권 보전 및 관리가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국가보훈처는 토지임차료와의 상계가 계획대로 추진되어 추가적인 기간 연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7) 광복회는 2019년 9월 임차보증금 연체이자 중 3,815만 7,900원을 납부하였다.

8)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상계) ①수입징수관·지출관 및 출납공무원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국가의 채무와 채권이 동일인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처리할 수 있다

「민법」

제492조(상계의 요건) ①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광복회관 임차보증금 채권 상환 계획]

(단위: 천원)

분기별	상계액			
	보증금	연납이자	연체이자	합계
2022.10	42,548	8,711	241	51,500
2023. 1	41,737	9,462	301	51,500
2023. 4	45,062	6,296	142	51,500
2023. 7	44,106	7,195	199	51,500
2023.10	44,637	6,678	185	51,500
2024. 1	44,182	7,091	227	51,500
2024. 4	46,801	4,595	104	51,500
2024. 7	46,271	5,088	141	51,500
2024.10	46,828	4,546	126	51,500
2025. 1	46,748	4,605	147	51,500
2025. 4	48,625	2,812	63	51,500
2025. 7	48,541	2,879	80	51,500
2025.10	49,126	2,310	64	51,500
2026. 1	49,438	1,998	64	51,500
2026. 4	50,537	942	21	51,500
2026. 7	48,006	563	16	48,585
합 계	743,193	75,771	2,121	821,085

주: 2022년 7월 기준

자료: 국가보훈처

## 가. 현 황

국립묘지는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공헌한 사람이 사망할 경우 안장하여 그 위훈의 정신을 기리고 선양하기 위하여 국가가 설립하여 관리하는 묘지를 말한다. 국립묘지는 크게 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 신암선열공원 등으로 구분되는데, 현충원의 경우 대통령·국회의장, 국가장으로 장례된 자, 독립유공자, 무공수훈자 등이 안장되고, 호국원의 경우 참전유공자, 제대군인 등이 안장되며, 민주묘지에는 4·19혁명, 5·18 민주화운동 관련 사망자 등이 안장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립묘지는 서울현충원 대전현충원 등 2개 현충원과 영천, 임실, 이천, 산청, 괴산, 제주에 위치한 6개 호국원, 4·19, 3·15, 5·18 민주묘지 및 신암선열공원이 있다. 이 중 서울현충원은 국방부 소관이며, 국가보훈처는 나머지 10개소의 국립묘지를 관리하고 있다.

[국립묘지 현황]

구분	국립묘지	소관기관
현충원	서울 현충원	국방부
	대전 현충원	
호국원	영천 호국원	국가보훈처
	임실 호국원	
	이천 호국원	
	산청 호국원	
	괴산 호국원	
	제주 호국원	
	4·19 민주묘지	
민주묘지	3·15 민주묘지	
	5·18 민주묘지	
	신암선열공원	

자료: 국가보훈처

김용오 예산분석관(kyo8810@assembly.go.kr, 6788-4687)

국가보훈처는 전국 각지에 위치한 국립묘지를 관리하기 위해 ‘국립묘지조성및관리’ 단위사업<sup>1)</sup>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국립묘지별로 세부사업을 편성하여 확충 및 시설보수, 묘역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다. 2021회계연도 국립묘지조성및관리 단위사업의 세부사업 결산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21회계연도 국립묘지조성및관리 단위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계	81,792	81,792	1,033	-	82,825	66,220	14,402	2,203
국립묘지현 총선양활동	341	341	-	20	361	360	-	1
국립 대전 현충원	14,336	14,336	614	△649	14,301	13,708	-	593
국립 4.19묘지	701	701	-	-	701	593	-	108
국립 3.15묘지	410	410	-	-	410	395	-	15
국립 5.18묘지	1,395	1,395	-	-	1,395	1,357	-	38
국립영천 호국원	5,108	5,108	-	-	5,108	4,311	659	138
국립임실 호국원	4,668	4,668	-	-	4,668	4,108	419	141
국립이천 호국원	16,916	16,916	207	8	17,131	6,821	10,264	46
국립산청 호국원	2,371	2,371	-	43	2,414	2,398	-	16
국립신암 선열공원	792	792	-	-	792	716	-	76
국립괴산 호국원	4,855	4,855	212	117	5,184	4,985	-	199
국립묘지 조성	28,044	28,044		649	28,693	25,026	3,059	608
국립제주 호국원	1,855	1,855	-	△188	1,667	1,442	-	225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국가보훈처

1) 코드: 일반회계 3250

## 나. 분석의견

국립묘지 안장 여력이 부족한 가운데 증가하는 안장 수요에 대응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호국원 봉안당 확충 사업이 만장 예상 시기까지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국가보훈처는 안장 수요와 현황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공사 진행과정을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추가적인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위하여 안장능력 적기 확충을 목표로 권역별 국립묘지 신규 조성 및 묘지 확대를 위한 공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최근 참전유공자 등의 고령화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 수요가 확대될 것을 예상하여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봉안당 약 16만 4,600기를 확대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국가보훈처의 2017~2023 국립묘지 확충 계획]

구분		확충기수	확충계획기간 <sup>1)</sup>
현충원	대전	49,000	2017~2021
호국원	영천	25,000	2021~2023
	임실	20,000	2021~2023
	이천	50,000	2018~2023
	산청	-	-
	괴산	20,000	2021~2022
	제주	-	-
민주묘지	4·19	600	2020~2022
	3·15	-	-
	5·18	-	-
신암선열공원		-	-
합 계		164,600	2017~2023

주: 1) 최초 계획 수립 당시 완료 예정 기간

자료: 국가보훈처

그러나 2021년 확충을 완료한 대전 현충원과 달리 영천, 임실, 이천, 괴산 호국원의 봉안당 확충 사업은 착공을 위한 사전절차가 지연되고 이월액이 발생하였다. 구체적으로, 영천 호국원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관련기관 인·허가 등의 심의일정이 다소 지연되어 6억 5,900만원이 이월되었고, 임실 호국원과 이천 호국원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사전절차가 지연되는 가운데 계약방식을 변경하면서 사업이 지연

되어 각각 4억 1,900만원, 102억 6,400만원이 이월되었다.

또한, 이처럼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당초 2022년 또는 2023년까지 완료 예정이었던 봉안당 확충 공사 완료 시기가 2024년까지 늦어지면서 안장 수요에 대응하지 못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호국원 봉안당 확충 사업 이월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이월액	이월 사유
영천 호국원	659	코로나19로 인한 기관협의 지연
임실 호국원	419	코로나19로 인한 기관협의 지연 및 입찰방법 변경
이천 호국원	10,264	

자료: 국가보훈처

[호국원 봉안당 확충 사업 공사 추진 현황 및 계획]

구분	당초 완료 계획	예상 완료 시기	공사 추진 현황 및 계획
영천 호국원	2023년	2024년 9월	2022년 9월 설계완료 2022년 11월 착공
임실 호국원	2023년	2024년 9월	2022년 10월 설계 완료 2022년 12월 착공
이천 호국원	2023년	2024년 7월	2022년 7월 착공
괴산 호국원	2022년	2024년 6월	2022년 4월 착공

주: 2022년 6월말 기준

자료: 국가보훈처

착공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 국가보훈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지연된 측면이 있으나, 조속히 공사에 착수하여 2024년까지 확충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천 호국원의 경우 2017년에 이미 만장되어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며, 괴산 호국원은 2023년, 영천과 임실 호국원은 2024년 만장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2024년까지로 예정된 공사가 다시 지연될 경우 증가하는 안장 수요에 맞추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영천호국원의 경우 봉안당 확충 공사는 2024년 9월에 완료될 예정인데, 2024년 7월 만장이 예상되고 있어 안장여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호국원 안장 현황 및 만장 예상 시기]

구 분	안장능력	안장기수	잔여기수	만장 예상 시점
영 천	52,530	49,317	3,213	2024년 7월
임 실	35,568	31,846	3,722	2024년 9월
이 천	50,002	50,002	0	2017년 만장
산 청	10,008	8,178	1,830	2023년 12월
괴 산	20,356	15,042	5,314	2024년 7월
제 주	10,000	833	9,167	2030년 이후
합 계	178,464	155,218	23,246	-

주: 2022년 6월말 기준  
 자료: 국가보훈처

또한, 2021년 말 기준 호국원 안장대상자 20만 2,121명 중 6만 1,814명이 80세 이상의 고령자인데, 현재 호국원의 총 잔여기수는 2만 3,246기에 불과하여 이미 안장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봉안당 확충 사업이 추가적으로 지연될 경우 증가하는 안장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국립묘지 생존 안장대상자 현황]

(단위: 명)

구분		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
안장대상자 <sup>1)</sup>	전체	175,203	202,121	3,945
	80세 이상	26,432	61,814	460
잔여기수		49,186	23,246	1,180

주: 1)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자료: 국가보훈처

이처럼 이미 안장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계약 및 착공을 위한 사전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만장 예상 시기까지 확충이 늦어지는 것은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예우를 위하여 안장능력을 적기에 확충하고자 하는 동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결과를 낼 수 있으므로, 국가보훈처는 안장 수요와 현황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공사 진행과정을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추가적인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 가. 현황

교통시설 이용지원<sup>1)</sup> 사업은 초고령 애국지사 및 국가유공상이자, 5·18민주화 운동부상자 등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교통시설의 무료 이용 또는 이용료 할인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가보훈처는 교통시설 이용지원 사업의 2021년도 예산 104억 400만원 중 103억 8,500만원을 집행하고 1,9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1회계연도 교통시설 이용지원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교통시설 이용지원	10,404	10,404	-	-	10,404	10,385	-	19
버스무 임대 이용지원	7,919	7,919	-	500	8,419	8,419	-	-
철도무 임대 이용지원	2,163	2,163	-	△500	1,663	1,663	-	-
여객선 무임대 이용지 원	82	82	-	-	82	76	-	6
교통편 의증진 앱개발	90	90	-	-	90	89	-	1
교통복 지카드 전국호 환사업	150	150	-	-	150	138	-	12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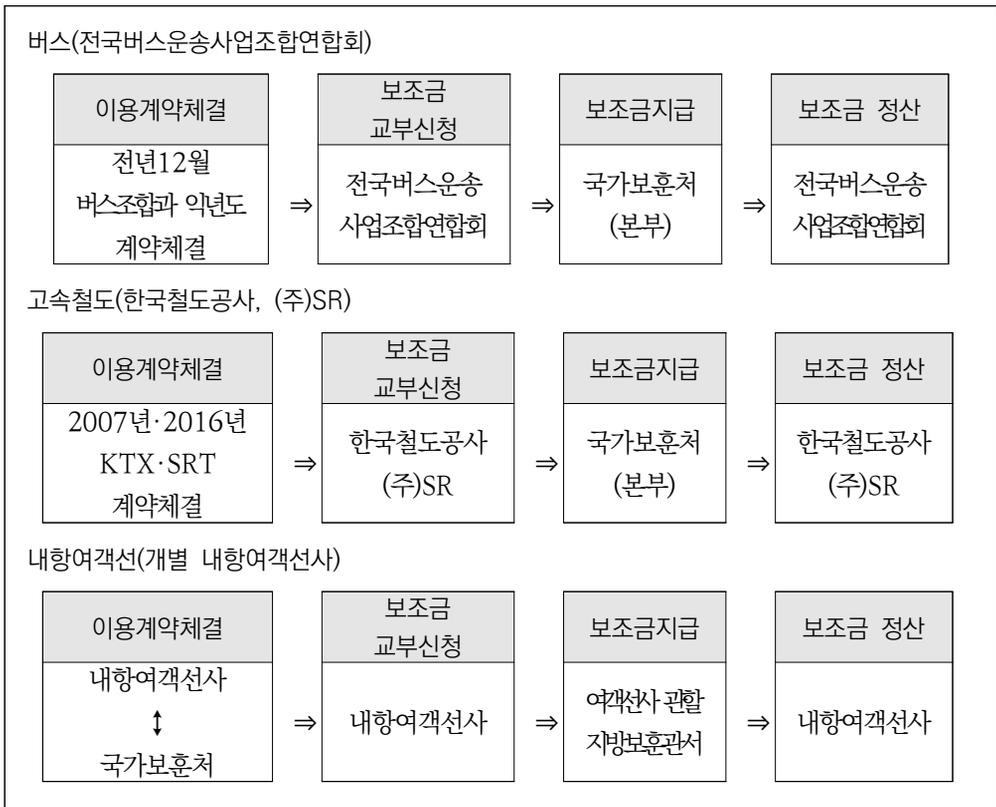
자료: 국가보훈처

김용오 예산분석관(kyo8810@assembly.go.kr, 6788-4687)

1) 코드: 일반회계 2139-318

동 사업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한국철도공사 및 (주)SR, 내항여객선사 등이 국가보훈처와 체결한 감면이용 계약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이 할인된 요금으로 교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 후 국가보훈처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민간경상보조 사업이다. 국가보훈처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2)에 근거하여 정액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다.

[교통시설 이용지원 서비스 집행 절차]



자료: 국가보훈처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수송시설의 이용지원) ① 독립유공자 및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독립유공자를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 요금을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현재 버스의 경우 시내버스는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시외 버스는 70% 또는 50%, 고속버스는 50% 또는 30%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고속철도는 연 6회까지 무임으로 이용하고 7회부터는 50%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내항여객선 역시 연 6회까지 무임 또는 50%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교통시설 이용지원 지원 대상 및 범위]

구분	지원 대상	지원 범위
버스	애국지사, 전·군상공경 및 공무원, 4·19 부상자, 5·18 부상자 등	(시내) 무임 (시외) 70% 또는 50% 할인 (고속) 50% 또는 30% 할인
고속철도		연 6회 무료, 7회부터 50% 할인
내항여객선		연 6회 무임 또는 50% 할인 (단, 도서거주자는 연 12회)

자료: 국가보훈처

## 나. 분석의견

국가유공자 등의 교통시설 감면 이용을 위한 적정 규모의 보조금이 지급되지 못함에 따라 운송업체와 국가유공자 등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가보훈처는 국가가 이용 감면액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후정산 방식으로 사업을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가보훈처는 연도말 교통카드 이용 횟수 등을 바탕으로 추정한 감면금액과 실제 지급한 정액 보조금 규모를 바탕으로 감면 보전율을 역산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른 2021년 교통시설별 보전율은 버스 56.1%, 고속철도 35.8%이며, 내항여객선의 경우에만 감면금액 전액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위와 같은 수치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교통시설 이용이 축소되면서 모수인 감면금액이 감소함에 따라 예상보다 보전율이 상승한 것이다. 예산 편성 시 배정한 정액 보조금 규모에 따른 2021년 교통시설별 보전율은 버스 40.4%, 고속철도 28.1%이다. 실제 감면금액에 따라 집행 결과 보전율에 다소 차이가 발생하고는 있으나, 국가보훈처가 최근 수년간 지원한 보조금 규모는 감면금액 대비 버스 40% 내외, 고속철도 30% 내외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연도별 교통시설 이용지원 손실보전율]

(단위: 백만원, %)

구분		2018		2019		2020		2021	
		편성	집행	편성	집행	편성	집행	편성	집행
버스	감면액	2,073	2,098	2,305	1,957	2,098	1,402	1,957	1,507
	지원액	8,116	8,116	9,587	9,587	9,605	9,605	7,919	8,419
	보전율	39.1	38.7	41.5	48.9	43.1	68.2	40.4	56.1
고속 철도	감면액	7,329	7,754	7,979	7,688	7,754	4,751	7,688	4,641
	지원액	2,359	2,359	2,403	2,403	2,403	2,403	2,163	1,663
	보전율	32.2	30.4	42.6	31.3	30.9	50.6	28.1	35.8
내항 여객선	감면액	155	107	100	97	82	74	82	76
	지원액	155	107	100	97	82	74	82	76
	보전율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국가보훈처

특히 2021년에는 코로나19에 따른 교통시설 이용 축소를 전제로 지원금을 감액 편성하면서, 실제 감면금액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 시 보전율은 전년 대비 버스의 경우 2.7%p, 고속철도의 경우 2.8%p 감소하였다.

이처럼 낮은 보전율로 인하여 국가보훈처가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보전되지 않는 감면액은 고스란히 운송업체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는 매년 감면이용 계약 체결 과정에서 운송업체와 갈등을 겪고 있으며, 2022년 계약 과정에서는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로부터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받기도 하였다.<sup>3)</sup> 또한 국가유공자 등의 교통시설 이용은 운송업체의 부담이라는 인식 때문에 현장에서 국가유공자 등이 교통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보전율 현실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나,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재정당국과의 협의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재 추진 중인 교통복지카드 전국호환사업이 완료되면 실제 감면액을 산출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보전율 상향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동 사업을 통해 교통시설 이용지원을 위한 보조금을 교부하는 취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적절히 예우함으로써 경제적 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자긍심을 고취시키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이유로 적정 규모의 보조금을 편성하지 못함에 따라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전가시키게 되는 결과는 국가책임의 관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위와 같은 문제로 인하여 국가유공자 등이 현장에서 교통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는 사례가 반복될 경우 국가의 보훈행정 의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보훈대상자들이 교통시설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용감면액을 국가가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사후정산 방식으로 사업을 개편하는 방안에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교통복지카드 전국호환사업을 통해 지급된 카드 사용에 따른 감면액을 국가가 사후적으로 카드회사에 직접 지급한다면, 부족한 보전분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는 한편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2022년 할인이용 계약은 2023년부터는 사업방식 변경 등을 제안하면서 체결되었다.

한편, 현행법에는 교통시설 이용감면액에 대하여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이유로 민간사업자 또는 교통시설을 이용하는 보훈대상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비롯한 교통시설 이용지원 근거 법률의 조문에서 “예산의 범위에서”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개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sup>4)</sup>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수송시설의 이용지원) ① 독립유공자 및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독립유공자를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 요금을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수송시설의 이용지원)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輸送施設)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1.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 활동이 어려운 경우 이들을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
- ②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5·18민주유공자 예우 관한 법률」

제58조(수송시설의 이용 지원) ① 5·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이들을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輸送施設)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3조(수송시설의 이용 지원) ① 특수임무유공자 중 특수임무부상자와 다른 사람의 보호가 필요한 특수임무부상자를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가. 현 황

지방보훈회관 건립 사업<sup>1)</sup>은 보훈단체의 사무실 또는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의 친목도모 공간 등으로 사용되는 지방보훈회관의 건립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가보훈처는 지방보훈회관 건립 사업의 2021년도 예산액 19억 5,5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다.

[2021회계연도 지방보훈회관 건립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분예산	추경						
지방보훈 회관 건립	1,955	1,955	-	-	1,955	1,955	-	-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국가보훈처

동 사업은 지자체가 보훈회관 건립을 위한 부지와 지방비를 확보하면 국고를 지원하는 지자체 보조 사업이다. 광역시·도는 총사업비의 50%(최대 15억원)를, 시·군·구는 총사업비의 30%(최대 5억원)를 국비로 지원한다. 국가보훈처는 2020~2021년 계속사업으로서 경북 문경시 등 5개소에 2억 5,000만원씩을, 전남 완도군에 2억 500만원을 지원하고, 2021년 신규사업으로서 경기 동두천시 등 2개소에 2억 5,000만원씩을 지원하고자 동 사업을 추진하였다.

[2021회계연도 지방보훈회관 건립 사업의 지역별 지원 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경북 문경시	경북 포항시	전남 완도군	전남 장흥군	강원 태백시	충북 증평군	경기 동두천시	충남 보령시
지원액	250	250	205	250	250	250	250	250

자료: 국가보훈처

김용오 예산분석관(kyo8810@assembly.go.kr, 6788-4687)

1) 코드: 일반회계 1238-321

## 나. 분석의견

건립부지 변경, 지방비 확보 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훈회관의 착공이 지연됨에 따라 교부금의 실집행실적이 저조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으므로, 국가보훈처는 교부금을 배정하고 지급하는 데 있어 건립부지의 타당성, 지방비 확보 가능성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강화하고 추진현황을 상시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의 경우 국가보훈처 단계에서는 지자체별로 배정된 국비를 교부하는 것으로 집행이 완료되어 편성된 예산이 전액 집행된 것으로 보이나, 지자체 차원에서의 실집행실적은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2021년에 배정된 예산액 19억 5,500만원 중 11억 2,400만원을 집행하여 실집행률은 57.5%로 나타났는데, 특히 경북 포항시와 전남 장흥군의 경우 실집행이 전혀 없었고, 충남 보령시의 경우 800만원을 집행하는 데 그쳤다.

[2020~2021 회계연도 지방보훈회관 건립 사업 실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구분	2020			2021		
	교부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교부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충남 당진시	250	-	0.0	-	-	-
전남 해남군	250	250	100.0	-	-	-
경북 문경시	250	-	0.0	250	250	100.0
경북 포항시	250	-	0.0	250	-	0.0
전남 완도군	250	-	0.0	205	205	100.0
전남 장흥군	250	-	0.0	250	-	0.0
강원 태백시	250	63	25.2	250	161	64.4
충북 증평군	250	250	100.0	250	250	100.0
경기 동두천시	-	-	-	250	250	100.0
충남 보령시	-	-	-	250	8	3.2
소 계	2,000	563	28.2	1,955	1,124	57.5

주: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지 않은, 당해연도에 배정된 예산액 기준  
 자료: 국가보훈처

동 사업은 2020년에도 배정된 예산액 20억원 중 5억 6,300만원을 집행(실집행률 28.2%)하였는데,<sup>2)</sup> 사전절차 이행을 비롯한 공사 준비기간 소요 등에 따라 연례적으로 이월이 발생하면서 당해연도에 배정된 예산액의 실집행부진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3)</sup>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면 2021년도 예산현액 35억 1,900만원 중 26억 400만원을 집행하였다.

[최근 5년간 지방보훈회관 건립 사업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국가보훈처		사업시행주체(지자체)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A)	실집행액(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B/A)
2017	3,250	3,250	3,250	1,768	5,018	4,289	729	0	85.5
2018	4,125	3,625	3,625	729	4,354	3,364	990	0	77.3
2019	3,250	3,250	3,250	990	4,240	3,006	1,234	0	70.9
2020	2,250	2,000	2,000	1,234	3,234	1,670	1,564	0	51.6
2021	1,955	1,955	1,955	1,564	3,519	2,604	915	0	74.0

자료: 국가보훈처

이처럼 연례적으로 실집행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보훈회관 건립을 위한 착공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었기 때문이다. 경북 포항시는 건립부지 변경 및 지방비 확보 지연으로, 전남 장흥군은 건립규모 확대, 부지 용도변경 및 사전절차 지연으로, 강원 태백시의 경우 지방비 확보 지연에 따른 후속 절차 순연으로, 충남 보령시의 경우 건립부지 변경 및 부지 추가매입 지연 등으로 인하여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였다.

2) 당해연도에 배정된 예산액 기준이며, 2019년 이월액을 포함하면 예산현액 32억 3,400만원 중 16억 7,000만원을 집행하였다.

3)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신규 건립사업의 경우 지방비 확보, 지자체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정으로 단년도 집행이 어려워 이월액이 차년도에 실집행되고 있다.

[2021회계연도 지방보훈회관 건립 사업 지역별 실적행실적 부진 사유]

구분	실집행률	사유
경북 포항시	0.0%	· 건립부지 변경 · 지방비 예산 확보 지연
전남 장흥군	0.0%	· 건립 규모 확대 · 부지 용도변경 등 사전절차 지연
강원 태백시	64.4%	· 지방비 예산 확보 지연 · 실시설계 용역, 건축공사 입찰 등 사전절차 지연
충남 보령시	3.2%	· 건립부지 변경 및 부지 추가매입 지연 · 기본설계 협의 지연

자료: 국가보훈처

이에 대해 국가보훈처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립부지를 변경하거나 확대할 필요성이 발생하여 후속절차 지연이 불가피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당초 지방비 매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지자체 차원에서 보훈회관 건립에 필요한 예산을 코로나19 대응에 사용하면서 지방비 확보를 위한 지자체 추경을 기다려야 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동 사업은 지자체의 건립부지 및 지방비 확보를 전제로 국비를 매칭시키는 사업이므로, 사업비를 편성하는 단계에서 건립부지의 타당성과 지방비 확보 여부 등에 대한 사전검토가 보다 면밀히 이루어졌어야 한다. 또한, 2021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보다 지역의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지방예산을 사용할 필요가 있었다라도 이후 추가적인 지방예산 확보 계획 등을 확인하여 교부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보훈회관 건립을 위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지 못하고 완공이 지연될 경우 다른 사업 또는 다른 지역 보훈회관 건립에 우선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예산이 낭비될 수 있고, 나아가 보훈단체와 국가유공자 등의 불편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국가보훈처는 지자체의 건립부지 선정 여부, 선정된 건립부지의 타당성, 지방비 확보 가능성 등에 대해 사전에 보다 면밀히 검토한 후 지역별 교부금을 배정하고,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되어 교부금이 실적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상황을 상시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 가. 현 황

의료지원은 국가유공자 등의 특성에 적합한 의료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단위사업으로, ‘보훈병원 진료’, ‘위탁병원 진료’, ‘보철구 지급’, ‘제대군인 의료지원’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보훈병원 진료<sup>1)</sup> 사업은 국가보훈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가보훈처는 보훈병원 진료 사업의 2021년도 예산현액 3,950억 1,1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위탁병원 진료<sup>2)</sup> 사업은 보훈병원이 없거나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상이자 등이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가보훈처는 위탁병원 진료 사업의 2021년도 예산현액 2,505억 1,1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제대군인 의료지원 사업<sup>3)</sup>은 상이등급을 받지 못한 전·공상 제대군인의 인정된 상이처에 대해서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진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가보훈처는 제대군인 의료지원 사업의 2021년도 예산현액 36억 4,9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

김용오 예산분석관(kyo8810@assembly.go.kr, 6788-4687)

1) 코드: 일반회계 2150-365

2) 코드: 일반회계 2150-366

3) 코드: 일반회계 2150-450

[2021 회계연도 의료지원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보훈병원 진료	385,503	385,503	-	9,508	395,011	395,011	-	-
위탁병원 진료	234,985	234,985	-	15,526	250,511	250,511	-	-
제대군인 의료지원	2,365	2,365	-	1,284	3,649	3,649	-	-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국가보훈처

[보훈병원 진료, 위탁병원 진료, 제대군인 의료지원 진료대상 및 범위]

세부사업명	진료대상	진료범위
보훈병원 진료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이유공자(국비대상): 전액 국비 지원 (비급여, 원외 처방 약제비 포함)</li> <li>- 비상이유공자 및 유가족(감면대상): 본인 부담 진료비에 대상별 감면비율 (30%~90%)을 적용한 금액 지원 (비급여, 원외 처방 약제비 포함)</li> </ul>
위탁병원 진료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비상이유공자는 75세 이상, 유가족은 75세 이상 보상금 수령자일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이유공자(국비대상): 전액 국비 지원 (비급여는 MRI·초음파·건위소화제만 지원, 원외 처방 약제비 지원)</li> <li>- 비상이유공자 및 유가족(감면대상): 본인 부담 진료비에 대상별 감면비율 (60%~90%)을 적용한 금액 지원 (비급여, 원외 처방 약제비 미지원)</li> </ul> <p>* '22.10.1.부터 비상이유공자 본인 약제비 지원 예정</p>
제대군인 의료지원	상이등급 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전·공상 제대군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진료 시 인정 상이처 진료비에 대해서만 전액 국비 지원</li> </ul>

자료: 국가보훈처

한편, 2021년말 기준 보훈병원은 서울시, 부산시, 대전시 등 6개 지역에 6개소가 설립되어 있으며, 위탁병원은 전국 각 지역에 총 515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보훈병원 현황]

구분	소재지	진료권역
중앙보훈병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서울, 경기, 강원
부산보훈병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부산, 울산, 경남, 제주
대전보훈병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대구보훈병원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구, 경북
광주보훈병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 전북, 전남
인천보훈병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 경기서북부

자료: 국가보훈처

[위탁병원 지정 현황]

구분	의원	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계
서울	44	13	2	1	60
부산	12	9	-	-	21
대구	10	1	-	-	11
인천	5	3	1	5	14
광주	3	1	-	-	4
대전	8	-	-	-	8
울산	5	1	-	3	9
세종	3	-	-	-	3
제주	5	2	2	3	12
경기	34	21	4	21	80
강원	23	9	1	9	42
충북	9	7	4	5	25
충남	18	6	1	7	32
전북	23	7	2	6	38
전남	32	16	-	10	58
경북	23	13	6	8	50
경남	18	16	6	8	48
계	275	125	29	86	515

주: 2022년 6월 기준

자료: 국가보훈처

## 나. 분석의견

진료단가 및 진료인원에 대한 추계가 부정확하여 지원금 부족에 따른 이·전용 등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국가보훈처는 적정 진료단가를 반영하고 진료인원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가보훈처는 보훈병원 진료비 부족분 충당을 위하여 보상금 세부사업으로부터 95억 800만원을, 위탁병원 진료비 부족분 충당을 위하여 보상금 및 참전명예수당 세부사업으로부터 총 155억 2,600만원을, 제대군인 진료비 부족 충당을 위하여 보상금 세부사업으로부터 12억 8,400만원을 이용하였다.

[2021회계연도 의료지원 단위 사업 이용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 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 목 코드	
이용 (21.12. 27.)	보상금 (1132-300)	310-04	9,508	보훈병원 진료 (2150-365)	310-04	보훈병원 진료비 부족분 충당
	보상금 (1132-300)	310-04	13,773	위탁병원 진료 (2150-366)	310-04	위탁병원 진료비 부족분 충당
	참전명예수당 (1133-307)	310-04	1,753			
	보상금 (1132-300)	310-04	1,284	제대군인 의료지원 (2150-450)	310-04	제대군인 의료지원 진료비 부족분 충당

자료: 국가보훈처

진료비 부족 현상이 발생하는 사유는 진료인원 예측 미흡 및 진료비 단가 인상 등으로, 이처럼 적정 규모의 진료비 지원금액 추계 미흡에 따른 이·전용 등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의료지원 단위 사업 연도별 이용 등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이·전용 등 규모	이·전용 등 사유
보훈병원 진료	2018	△32,504	예측 대비 진료인원 감소
	2019	△9,005	예측 대비 진료인원 감소
	2020	8,483	진료비 부족분 총당
	2021	9,508	진료비 부족분 총당
위탁병원 진료	2018	29,553	진료비 부족분 총당
	2019	8,101	진료비 부족분 총당
	2020	25,189	진료비 부족분 총당
	2021	15,526	진료비 부족분 총당
제대군인 의료지원	2018	2,951	진료비 부족분 총당
	2019	904	진료비 부족분 총당
	2020	910	진료비 부족분 총당
	2021	1,284	진료비 부족분 총당

자료: 국가보훈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1년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대면 진료 축소 등에 따라 진료인원이 국가보훈처의 예측 대비 오히려 감소하였음에도, 진료단가가 크게 상승하여 진료비 부족분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진료단가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국가보훈처는 산출 가능한 최근년도 실제 진료단가에 일정 비율의 증가율을 반영하여 진료단가를 추산하고 있으나, 정확한 단가 예측 및 예산 확보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의료지원 단위 사업 연도별 진료인원 및 진료단가]

(단위: 명, 원)

구 분		2019		2020		2021	
		예측	실제	예측	실제	예측	실제
보훈병원 진료	진료인원	4,569,693	4,450,761	4,240,752	4,025,549	4,352,159	4,008,853
	진료단가	89,468	87,001	87,213	93,958	88,401	98,349
위탁병원 진료	진료인원	4,413,103	4,444,056	3,894,833	4,040,404	3,894,833	3,710,866
	진료단가	53,621	57,009	57,549	61,720	59,649	66,813
제대군인 의료지원	진료인원	28,826	33,783	45,589	32,583	32,686	32,373
	진료단가	30,563	94,740	50,429	98,487	70,367	110,710

주: 진료단가는 진료 유형별(국비, 감면 등) 진료단가의 평균값임

자료: 국가보훈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진료단가의 증가세가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보훈병원 진료 사업과 위탁 병원 진료 사업의 경우 2021년도 진료단가를 산정함에 있어 2020년도 예산 편성 시 사용한 단가를 그대로 반영하였으며, 위탁병원 진료 사업과 제대군인 지원 사업의 2022년도 진료단가의 경우 2021년도 예산 편성 시 사용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소요 예산 확보의 어려움에 따른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보이나, 진료단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과거 진료단가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보훈대상자들의 진료비를 지원하겠다는 동 사업의 취지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필요한 예산액 산정을 위한 노력이 뒷받침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연도별 지원단가 산정 방식]

구분	보훈병원 진료	위탁병원 진료	제대군인 의료지원
2020	2018년 실제 단가에 최근 3년간 진료단가 평균 증감률 반영	2018년 실제 단가에 최근 3년간 진료비 평균증감률 반영	2018년 실제 단가에 최근 3년간 진료단가 평균 증감률 반영
2021	2020년 예산안 편성 시 단가 반영	2020년 예산안 편성 시 단가 반영	2019년 실제 단가 반영
2022	2019년 실제 단가에 최근 5년간 진료단가 평균 증감률 반영	2021년 편성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2021년 편성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자료: 국가보훈처

한편,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될 경우 대면 진료 수요가 확대되어 진료인원이 다시 증가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국가보훈처는 만성질환자의 진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의원, 병원 확대 및 보훈대상자 고령화에 대비한 요양병원 확대 등 위탁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는 점에서도 진료인원이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현재처럼 진료단가를 보수적으로 산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료인원까지 다시 증가세로 전환될 경우 진료비 부족 현상이 더욱 심해질 우려가 있는 것이다.

[최근 5개년 위탁병원 지정 현황 및 2022년 확대 계획]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계획)
개수	310	314	320	418	518	640

자료: 국가보훈처

따라서 국가보훈처는 법정 의무지출인 진료비 지원금이 부족하여 다른 사업으로부터 예산을 이용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실적인 진료단가를 반영하고 진료인원 추계 정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적정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 I 결산 개요

## 1 현 황

### 가. 세입·세출 결산

2021회계연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4,027억 1,800만원이며, 1조 3,310억 4,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59.4%인 7,908억 4,400만원을 수납하고 5,398억 4,1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3억 6,100만원을 불납결손처리 하였다.

[2021회계연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402,718	402,718	402,718	1,331,046	790,844	539,841	361	59.4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021회계연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465억 7,600만원이며, 이 중 96.7%인 1,416억 8,200만원을 지출하고 15억 8,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3억 1,1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다.

[2021회계연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146,291	146,291	146,576	141,682	1,583	3,311	96.7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의 총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 결산 총계와 같다.

김용오 예산분석관(kyo8810@assembly.go.kr, 6788-4687)

## 나. 재무 결산

2021회계연도 말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산은 4,295억 2,800만원, 부채는 193억 6,000만원, 순자산은 4,101억 6,800만원이다.

자산은 전기 대비 1,541억 7,600만원(56.0%) 증가한 것으로 유동자산 4,150억 4,200만원, 투자자산 1억 5,500만원, 일반유형자산 43억 5,700만원, 무형자산 79억 6,000만원, 기타비유동자산 20억 1,400만원 등으로 구성된다. 이는 과징금 등의 제재금수의 징수결정으로 인한 미수제재금(미수채권) 2,253억 2,600만원 순증가 등에 기인한다.

부채는 전기 대비 117억 1,700만원(△37.7%) 감소한 것으로 장기충당부채 117억 1,700만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이는 소송충당부채로 계상된 소송 사건들 중 일부 패소로 인한 환급(△56억 2,300만원) 및 파기환송에 따른 환입(△77억 5,300만원)과 신규로 발생한 소송 사건들에 대한 소송충당부채 전입(16억 5,900만원) 등에 기인한다.

[2021회계연도 공정거래위원회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회계연도(A)	2020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자 산	429,528	275,352	154,176	56.0
Ⅰ. 유동자산	415,042	261,473	153,569	58.7
Ⅱ. 투자자산	155	95	60	63.2
Ⅲ. 일반유형자산	4,357	3,777	580	15.4
Ⅳ. 무형자산	7,960	8,141	△181	△2.2
Ⅴ. 기타비유동자산	2,014	1,866	148	7.9
부 채	19,360	31,077	△11,717	△37.7
Ⅰ. 장기충당부채	19,360	31,077	△11,717	△37.7
순 자 산	410,168	244,275	165,893	67.9
Ⅰ. 기본순자산	7,933	7,933	0	0
Ⅱ. 적립금 및 잉여금	399,058	233,767	165,291	70.7
Ⅲ. 순자산 조정	3,177	2,575	602	23.4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2,219억 3,3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총원가 749억 6,400만원, 관리운영비 720억 1,400만원, 비배분비용 841억 3,3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비배분수익 91억 7,7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549억 3,000만원(32.9%) 증가한 2,219억 3,300만원이며, 이는 한국소비자원 출연금 증가 등에 따라 프로그램순원가가 전년대비 54억 4,600만원 증가하였고, 대손상각비 증가 등에 따라 비배분비용이 전년도 대비 434억 3,400만원 증가한 반면, 대손충당금 환입 감소 등에 따라 비배분수익이 전년도 대비 29억 300만원 감소한 것에 기인한다.

총 3개의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순원가가 큰 프로그램은 소비자후생 증진프로그램(560억 7,100만원)과 경쟁촉진 프로그램(164억 6,8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500억 4,700만원과 복리후생비 85억 5,2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대손상각비 737억 6,400만원, 기타비용 103억 6,8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1회계연도 공정거래위원회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회계연도(A)	2020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I. 프로그램순원가(가-나)	74,964	69,518	5,446	7.8
가. 프로그램 총원가	74,964	69,518	5,446	7.8
나. 프로그램 수익	0	0	-	-
II. 관리운영비	72,014	68,867	3,147	4.6
III. 비배분비용	84,133	40,699	43,434	106.7
IV. 비배분수익	9,177	12,080	△2,903	△24.0
V. 재정운영순원가(I+II+III-IV)	221,933	167,003	54,930	32.9
VI. 비교환수익 등	0	0	-	-
VII. 재정운영결과(V-VI)	221,933	167,003	54,930	32.9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의 2021년도 기초순자산은 2,442억 7,5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4,101억 6,800만원으로 기초 대비 1,658억 9,300만원(67.9%) 증가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 결과는 기초 대비 549억 3,000만원 증가하였고, 순자산 가산항목인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기초 대비 400억 9,700만원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2021회계연도 공정거래위원회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회계연도(A)	2020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I. 기초순자산	244,275	64,168	180,107	280.7
II. 재정운영결과	221,933	167,003	54,930	32.9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387,224	347,127	40,097	11.6
IV. 조정항목	602	△17	619	3,641.2
V. 기말순자산(I - II + III + IV)	410,168	244,275	165,893	67.9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의 2021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개선 및 동반성장시책 추진 사업**, ② **소비자상담센터 운영(정보화)사업** 등이 있다.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개선 및 동반성장시책 추진 사업은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위탁 등 1억 4,400만원이 감액되었고, 소비자상담센터 운영(정보화)사업은 2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다.<sup>1)</sup>

국회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으로는 **선진소비자정책 추진 사업**이 있다.

선진소비자정책 추진 사업은 전자상거래분야 거래환경 개선 등 8,200만원이 증액되었다.<sup>2)</sup>

1) 정부위원회, 「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20.11.  
국회,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20.12.

2) 정부위원회, 「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20.11.  
국회,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20.12.

공정거래위원회는 ①디지털 경제 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 ②甲·乙이 협력하고 상생하는 포용적 시장환경 조성, ③대기업집단의 건전한 소유·지배구조 및 거래질서 정립, ④혁신이 촉진되는 시장환경 및 거래관행 형성, ⑤소비자권익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2021년 주요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21회계연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한국소비자원의 수탁용역을 통한 자체수입 예산 과다 편성에 따른 수입결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와 재정당국은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권익 증진과 안전 확보라는 고유업무 수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국소비자원의 기관설립 및 운영 취지, 최근연도 자체수입 실적 및 조직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출연금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소비자 상담건수에 대한 예측이 부정확하여 소비자단체 상담 위탁수당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상담건수 감소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 가. 현 황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sup>1)</sup>에 따라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연구, 소비자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수지차보전기관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의 지출예산과 자체수입의 차이만큼을 출연금으로 보전해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한국소비자원 출연금 473억 5,0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김용오 예산분석관(kyo8810@assembly.go.kr, 6788-4687)

## 1) 「소비자기본법」

## 제33조(설립)

- ① 소비자권익 증진시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을 설립한다.
- ② 한국소비자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한국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그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 ④ 한국소비자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제35조(업무)

- ① 한국소비자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2.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등의 규격·품질·안전성·환경성에 관한 시험·검사 및 가격 등을 포함한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분석
  3. 소비자의 권익증진·안전 및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국제협력
  4. 소비자의 권익증진·안전 및 능력개발과 관련된 교육·홍보 및 방송사업
  5. 소비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6.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위한 종합적인 조사·연구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관련하여 의뢰한 조사 등의 업무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제7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동의 의결의 이행관리
  9. 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안전에 관한 업무

[2021회계연도 한국소비자원 출연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한국 소비자원 출연	47,350	47,350	-	-	47,350	47,350	-	-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의 2021회계연도 결산 수입 실적은 출연금 473억 5,000만원, 자체 수입 26억 3,300만원 등 총 531억 6,000만원이고, 지출 실적은 인건비 349억 7,300만원, 운영비 80억 7,100만원, 사업비 98억 9,000만원 등 총 529억 3,400만원이다.

[2021회계연도 한국소비자원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당초예산	수정예산 (A)	집행액 (B)	차액 (B-A)
수입	출연금	47,350	47,350	47,350	-
	자체수입	4,547	4,547	2,633	△1,914
	임차보증금 반환금 등	3,369	3,369	3,177	△192
	합계	55,266	55,266	53,160	△2,106
지출	인건비	34,107	35,549	34,973	576
	사업비	11,281	11,281	9,890	1,391
	- 연구조사 및 대외협력	1,674	1,644	1,427	217
	- 소비자역량강화 및 정보제공	2,601	2,601	2,514	87
	- 소비자안전 및 시험검사	3,257	3,257	2,865	392
	-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1,409	1,439	1,290	149
	- 수탁용역	2,340	2,340	1,794	546
	운영비	8,436	8,436	8,071	365
	예비비	1,442	-	-	-
	합계	55,266	55,266	52,934	2,332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나. 분석의견

한국소비자원의 수탁용역을 통한 자체수입 예산 과다 편성에 따른 수입결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와 재정당국은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권익 증진과 안전 확보라는 고유업무 수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국소비자원의 기관설립 및 운영 취지, 최근연도 자체수입 실적 및 조직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출연금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자체수입은 전년도이월금, 수탁용역수입, 교육연수수입, 이자수입, 임대·기타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1년 자체수입 예산은 45억 4,700만원이었으나 실적은 26억 3,300만원에 불과하여 당초 계획 대비 57.9% 정도의 자체수입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회계연도 한국소비자원 자체수입 실적]

(단위: 백만원, %)

구분	당초예산	수정예산 (A)	수입실적 (B)	차액 (B-A)	B/A
전년도이월금	1,040	1,040	676	△364	65.0
수탁용역수입	2,741	2,741	1,751	△990	63.9
교육연수수입	40	40	9	△31	22.5
이자수입	125	125	70	△55	56.0
임대·기타수입	601	601	127	△474	21.1
합계	4,547	4,547	2,633	△1,914	57.9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의 자체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수탁용역수입이다. 수탁용역수입은 CCM(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된 사업을 비롯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위탁하는 사업과 그 외 유관기관이 수시로 위탁하는 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이다. 2021년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건, KOICA로부터 1건, 서울특별시로부터 1건, 외교부로부터 1건의 사업을 수탁하여 17억 5,100만원의 자체수입을 확보하였다.

[2021회계연도 한국소비자원 수탁사업 수행 현황]

(단위: 백만원)

위탁기관	수탁과제명	수입실적
공정위	행복드림 소비자정보 운영	138
공정위	소비자상담센터 전산·정보시스템 운영	874
공정위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운영	170
공정위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	420
공정위	소비자중심경영(CCM) 신규평가 의무교육	21
공정위	소비자중심경영(CCM) 중소기업 평가	24
공정위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마크 공모전	4
공정위	제8회 아시아 소비자정책포럼 행사 위탁사업	34
공정위	제26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 개최	19.5
공정위	제26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 영상홍보물 제작	19.5
KOICA	우즈베키스탄 소비자업무 선진화 및 전문가 양성과정 사후관리 현장사업	1)
서울특별시	2021 서울특별시 조례 및 제도의 소비자지향성 연구	9
외교부	APEC 디지털무역 소비자보호 프레임워크 심화 연구	18
합 계		1,751

주: 1) 해당 사업은 2020년 12월 수탁하여 KOICA의 요청으로 2020년에 대금을 정산 받아 2020회계연도 실적에 포함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그러나, 위와 같은 실적은 당초 한국소비자원이 산정한 수탁사업비 예산액 27억 4,100만원에 비해 크게 저조한 것으로, 수탁사업 수입 실적 저조가 자체수입 결손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자체수입 결손액 19억 1,400만원 중 수탁사업비 결손액이 9억 9,000만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51.7%)을 차지하고 있다.

수탁사업비 수입에서 결손액이 크게 발생한 것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위탁 축소를 원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2021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상적인 수탁사업 외에 2건의 사업을 추가로 수행해줄 것을 요청하여 이를 반영하였으나,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1건을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변경하면서 수탁사업이 축소되었다는 것이다.<sup>2)</sup>

이처럼 소관 기관의 자체수입 예산과 출연금 규모가 결정된 이후 사업 위탁 여부를 변경한 것은 예상하기 어려웠던 사정이긴 하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추가로 요청하였다가 위탁하지 않기로 결정한 과제인 '상담원 성과관리 및 보호시스템 구축' 수행에 따른 수입 예상액은 5억 9,100만원으로, 이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수탁사업비 결손액은 여전한 상황이다.

또한, 이와 같은 수탁사업비 결손액 발생 문제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탁 여부의 불확실성 보다는 당초 예산안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자체수입액을 과다하게 산정하고 있는 것이 수입결손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인다. 실제로 매년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의 수탁용역 수입을 지출액에 비해 과도하게 높게 설정하고 있다.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 수탁용역 수입 및 지출 현황]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수입	예산액(A)	1,791	1,660	1,660	2,277	2,741
	실적(B)	1,393	1,127	1,162	1,662	1,751
	결손액(B-A)	△398	△533	△498	△615	△990
지출	예산액(C)	1,456	1,325	1,194	1,672	2,340
	집행액(D)	1,314	1,144	1,136	1,591	1,794
	잔액(D-C)	142	181	58	81	546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는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통해 한국소비자원의 수탁용역사업 수입예산 추계의 정확도를 제고하라는 지적을 한 바 있다.<sup>3)</sup>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2021년 수탁용역 수입 예산을 전년도 실적에 비해 크게 증액 편성하여 최근 5년간 가장 큰 결손액을 유발하였는데, 향후에도 수탁용역 수입 예산의 증액 편성을 통한 결손액 증가가 반복될 경우 국회의 예·결산 심의 권한과 취지에 반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상담센터 전산·정보시스템 운영' 과제에서 1372 노후 전산장비 교체(5억 9,100만원)와 상담원 성과관리 및 보호시스템 구축(5억 9,100만원)을 추가로 요청하였다가 이후 상담원 성과관리 및 보호시스템 구축 과제는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3)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보고서」 p.218

또한, 지출총액과 자체수입의 차이만큼을 정부출연금으로 보전 받는 한국소비자원의 재정구조를 고려하면, 이처럼 수탁용역 수입 실적 저조에 따른 자체수입 결손이 반복될 경우 고유사업에 필요한 예산과 운영비 등의 부족을 야기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권익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을 연구하고,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한 시험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소비자의 권익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설립·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은 기관의 성격상 수탁용역 사업 수행을 통해 지출액을 초과하는 자체수입을 확보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자체수입 확보를 위해 무리하게 수탁용역사업에 집중하게 되면 오히려 소비자 권익과 안전을 위한 고유사업에 투입할 역량이 부족해질 우려가 있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국소비자원의 자체수입 중 수탁용역사업 수행에 따른 수입예산액을 지출예산액보다 과도하게 편성하여, 한국소비자원으로 하여금 수주 대상을 확대하는 등 수입 실적 제고 노력만을 요구하는 것은 기관의 운영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와 재정당국은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권익 증진과 안전 확보라는 고유업무 수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국소비자원의 기관설립 및 운영 취지, 최근연도 자체수입 실적 및 조직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출연금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 III

## 개별 사업 분석

1

### 소비자상담 위탁수당 추계 정확성 제고 필요 등

#### 가. 현황

소비자상담센터 운영 사업<sup>1)</sup>은 소비자단체,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제공하는 소비자상담서비스를 지역과 관계없이 1372 전화번호를 통해 연결하고 상담정보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상담센터 운영 사업의 2021년도 예산액 51억 4,400만원 중 44억 700만원을 집행하고 7억 3,7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1회계연도 소비자상담센터 운영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소비자 상담센터 운영	5,344	5,344	-	△200	5,144	4,407	-	737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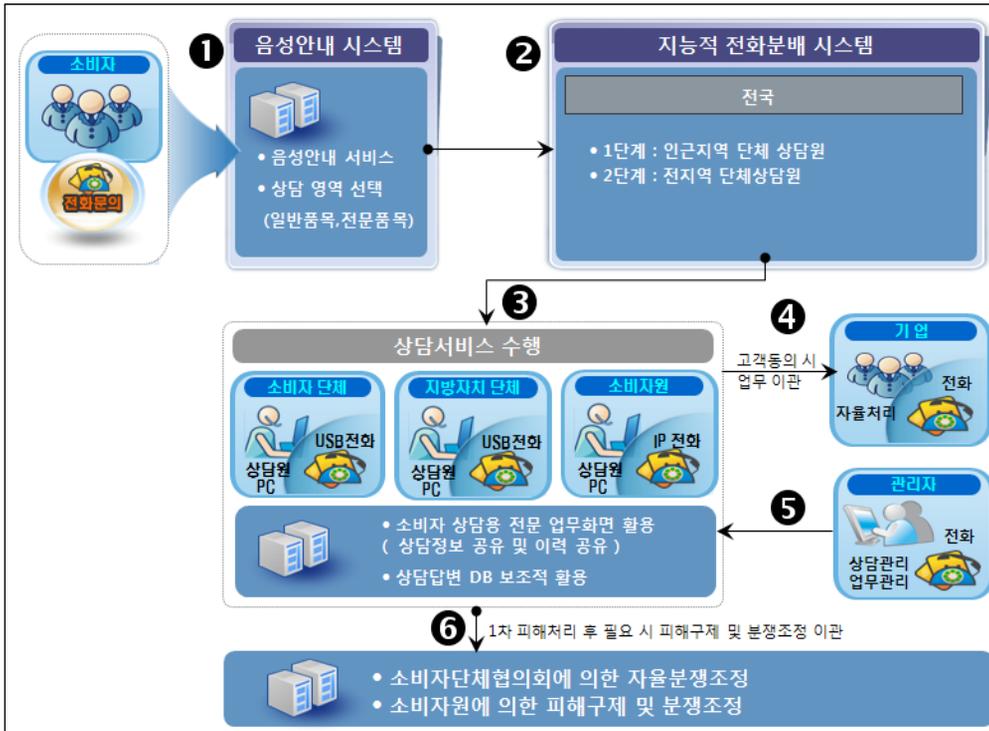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2010년부터 소비자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상담센터는 소비자가 1372 번호로 전화를 하면 음성안내시스템을 통해 상담영역을 직접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상담권을 인근지역 상담원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용오 예산분석관(kyo8810@assembly.go.kr, 6788-4687)

1) 코드: 일반회계 1451-620

[소비자상담센터 상담업무 흐름도]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소비자원, 그리고 2021년 기준 10개의 소비자단체<sup>2)</sup>가 제공하고 있다. 동 사업에는 소비자단체가 수행하는 상담건에 대한 위탁수당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sup>3)</sup>가 월별 상담건수를 취합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 달 수당으로 지급한다.

2)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부인회총본부,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3)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직접 상담을 제공하지는 않고, 소비자단체 상담위탁을 위한 계약, 상담실적 취합 및 위탁수당 정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나. 분석의견

첫째, 소비자 상담건수에 대한 예측이 부정확하여 소비자단체 상담 위탁수당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상담건수 감소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에 편성된 소비자단체 위탁수당 예산의 경우 2019년까지는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2020년부터 연례적으로 잔액이 발생하고 있다. 2020년에는 4억 8,600만원이, 2021년에는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액 일부(2억원)를 다른 세부사업으로 전용하고도 6억 6,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다.

[최근 5년간 소비자단체 위탁수당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예산액	1,974	2,401	2,928	2,923	3,189
예산현액	1,974	2,612	2,960	2,923	2,989
집행액	1,974	2,612	2,960	2,437	2,328
집행잔액	-	-	-	486	661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위탁수당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일반상담건수<sup>4)</sup> 예측이 부정확하여 당초 예측보다 실제 상담건수가 크게 저조하였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2020년에는 43만 건의 상담을 예측하였으나 실제 상담건수는 30만 5,830건에 그쳤고, 2021년에는 45만 건으로 더욱 확대될 것을 예측하였으나 실제 상담건수는 29만 440건으로 오히려 감소하였다.

[일반상담 예측 상담건수 및 실제 상담건수]

(단위: 건)

구분	2019	2020	2021	2022
예측 상담건수(A)	419,111	430,000	450,000	350,000
실제 상담건수(B)	401,117	305,830	290,440	-
예측오차(A-B)	17,994	124,170	159,560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4) 소비자상담은 일반상담과 피해처리로 구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처럼 실제 상담실적이 저조한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다. 다만, 정보취득 방식의 다양화 및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대외활동 감소에 따른 것으로 추측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확한 상담건수 예측이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로부터 제출받은 월별 상담실적 자료를 바탕으로 위탁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2021년 예산안을 편성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2020년 상반기 상담실적 확인을 통해 상담건수가 감소할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0년 예측 상담건수(43만건)에 비해 오히려 확대(45만건)될 것을 전제로 2021년 예산을 증액편성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2019~2021년 월별 일반상담실적]

(단위: 건)

구분	2019	2020	2021
1월	30,323	25,799	23,647
2월	21,821	30,559	18,422
3월	26,062	26,711	22,567
4월	26,425	22,217	21,885
5월	27,224	22,804	19,644
6월	24,401	24,534	21,552
7월	32,017	25,366	23,361
8월	28,166	27,900	32,172
9월	25,609	24,819	27,152
10월	27,228	22,014	24,163
11월	25,940	25,617	28,700
12월	29,696	27,490	27,175
합 계	401,117 <sup>1)</sup>	305,830	290,440

주: 1) 2019년 상담실적 합계에는 전년뒤 미지급분 76,295건이 포함되어 있음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한편, 상담건수 감소에는 다양한 원인이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소비자들이 피해 구제 방안을 찾을 수 있는 경로는 보다 더 다양해지고 있다. 인터넷 검색, SNS 등이 활성화될수록 소비자상담센터 전화를 통한 상담은 계

속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상담건수 감소의 원인 중 하나로 제시한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어 소비자들의 대외활동이 다시 확대되어도 상담건수 감소는 장기적인 추세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상담건수 감소의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용역 및 상담만족도 조사 등을 수행하여 상담건수 감소가 일시적인 현상인지 전반적인 추세인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담건수 원인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적정 규모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추계 정확성을 제고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공정거래위원회는 불용이 예상되는 집행 잔액을 시급성이 부족한 타 세부사업의 홍보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필요한 홍보 예산이 있다면 국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하여 예산안 편성 및 심의 과정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서 살펴본 소비자단체 상담 위탁수당에서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 일부(2억원)를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사업<sup>5)</sup>의 홍보 예산으로 사용하였다.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사업은 소비자생활정보와 피해구제 신청창구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으로, 기존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브랜드명인 “행복드림”의 대국민 인지도가 낮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브랜드명과 로고디자인을 변경하였으며, 이에 따라 새롭게 선정된 브랜드명인 “소비자24”의 홍보를 위하여 해당 예산을 사용한 것이다.

[2021회계연도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소비자 종합 지원시스템 운영	1,123	1,123	-	200	1,323	1,293	-	30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민간기관 정책홍보컨설팅 분석 결과<sup>6)</sup>를 바탕으로 브랜드명

5) 코드: 일반회계 1451-621

변경을 기획하였으며, 기존 홍보예산(6,500만원)으로는 적극적이고 다양한 홍보가 불가능하여 필요 최소한의 홍보예산을 충당하였다는 입장이다.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브랜드명 및 로고 변경 현황]

기존 “행복드림”	변경 “소비자24”
	

자료: 소비자24 홈페이지

그러나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불용이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홍보비 등 불요불급한 경비로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명시되어 있다.<sup>7)</sup> 이러한 지침에 비추어 볼 때 새롭게 구축한 시스템이 아닌, 기존 시스템의 명칭을 변경한 것을 홍보하는 것은 다른 세부사업에서 불용이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전용하여 사용할 만큼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시스템 개편 홍보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정책홍보컨설팅 분석 결과가 2020년 5월에 나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스템 개편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2021년 예산안 편성 및 심의 과정에 제출함으로써 필요한 홍보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이 시급성이 부족한 홍보를 위하여 타 세부사업의 예산 집행잔액을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필요한 홍보 예산이 있다면 국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하여 예산 편성 및 심의 과정에서 반영해야 할 것이다.

6) 「대한민국 대표 소비자포털 행복드림 홍보 방안 홍보컨설팅」, (2020.5.)  
 - 시스템 브랜드명인 ‘행복드림’을 타 분야·민간기업에서 선점한 상황으로 ‘행복드림=소비자종합지원 시스템’이라는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음  
 - 다양한 형태의 ‘행복드림’ 브랜드 존재, 범정부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특성을 각인시킬 수 있는 브랜드 전략이나 리브랜딩 방안 모색할 필요

7) 각 중앙관서의 장은 원칙적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모성 물품 구입비, 인쇄비, 홍보비 등 불요불급한 일상적·경상적 경비로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9)

## 가. 현 황

CP제도 운영 사업은 대외활동 강화<sup>1)</sup>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기업들로 하여금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 도입을 유도하고, CP 등급 평가를 통해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P제도 운영 사업의 2021년도 예산액 4,800만원 중 4,400만원을 집행하고 4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1회계연도 CP제도 운영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대외활동 강화	679	679	-	△72	607	531	-	76
CP제도 운영	48	48	-	-	48	44	-	4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하 “CP”)이란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스스로 준수하기 위해 도입·운영하는 내부준법시스템이다. CP는 정부의 법 집행에만 의존하는 시장질서 하에서는 기업이 법을 위반할 경우 과징금, 소송비용 등의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이미지 악화 등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문제의식 하에, 기업이 선제적으로 준법시스템을 마련하고자 2001년에 민간주도로 도입되었다.

기업이 CP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CP 기준 및 절차 마련, 내부감시체계 구축, 자율준수교육 실시 등을 비롯하여 8가지 도입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김용오 예산분석관(kyo8810@assembly.go.kr, 6788-4687)

1) 코드: 일반회계 1231-311

[CP 도입 요건]

① CP 기준, 절차 마련 및 시행	②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③ CP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④ 자율준수편람의 제작·활용
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교육 실시	⑥ 내부감시체계 구축
⑦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⑧ 효과성 평가와 개선조치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CP 제도의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2006년부터 CP 도입 기업에 대한 등급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등급평가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위탁 받아 수행하는데, 등급평가를 신청한 기업은 CP 운영실적 등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향후 2년간 유효한 등급<sup>2)</sup>을 부여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A등급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 직권조사 면제, 공표명령 감경 등의 차등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CP 도입과 적극적인 운영을 유도하고 있다.

[CP 등급평가 결과에 대한 인센티브]

구분	직권조사 면제 <sup>1)</sup>	공표명령 감면	기타
인센티브 내용	AAA(2년) AA(1년 6개월) A(1년)	AAA(면제) AA 또는 A(공표 크기 및 매체 수 1단계 하향 및 공표기간 단축)	등급평가증 수여 위원장 표창(2년 연속 AA 이상일 경우)

주 1) 최근 2년간 조사활동 방해로 처벌받은 경우 등은 제외된다.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 총 6개의 등급으로 AAA(최우수), AA(우수), A(비교적 우수), B(보통), C(미흡), D(매우미흡)으로 구분된다.

## 나. 분석의견

CP 신규 도입 및 등급평가 신청 실적이 저조하여 기업의 자율적인 윤리경영이라는 동 제도의 취지가 달성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CP 제도 관련 교육·홍보 등을 확대하는 한편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실효적인 인센티브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CP는 기업의 자율적인 윤리경영을 도모하기 위한 내부 준법시스템이므로, 기업 스스로의 CP 도입 의지가 제도 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연도별 CP 신규 도입 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들어 신규 도입 기업의 수가 현저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신규 도입은 최근 3년간 1건에 불과한 상황이다.

[연도별 CP 신규 도입 기업 현황]

(단위: 개)

연도	합계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공공기관
2010	10	6	4	-
2011	109	21	86	2
2012	66	12	52	2
2013	35	2	32	1
2014	46	28	17	1
2015	4	2	1	1
2016	16	6	9	1
2017	22	11	10	1
2018	15	12	2	1
2019	3	-	-	3
2020	11	1	-	10
2021	5	2	1	2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자율적인 CP 제도 운영을 장려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등급평가 신청 현황을 살펴봐도, 2021년 기준으로 CP를 도입한 전체 710개 기업 중 단 10개 기업만이 등급평가를 신청하였으며, 최근 3년간 매년 10개 이하로 유지되고 있다. 관련하여 당초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21년도에 17개 기업이 등급평가를 신청할 것이라고 예측하였으나, 실제 신청 기업은 10개에 불과하면서 등급평가 수수료 수입 예산에 차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sup>3)</sup>

[연도별 CP 등급평가 신청 기업 현황]

(단위: 개)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업체 수	377	486	552	587	633	637	653	675	690	693	705	710
평가신청 기업 수	44	37	39	14	18	15	9	18	11	5	7	10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CP 신규 도입 및 등급평가 신청 실적 저조에 따른 제도 활성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과 일부 중견기업<sup>4)</sup>에 대해서는 등급평가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sup>5)</sup>, 2020년도에는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CP 도입을 위하여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의 모범거래모델의 요건으로 CP 도입·운영 여부를 포함시키기도 하였다. 또한, CP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sup>6)</sup>과 인센티브 확대 등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중소·중견기업의 신규 도입이 가장 부진하다는 점에서 평가비용을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실효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공부문편람 개정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신규 도입이 일시적으로 증가(2019년 3개 → 2020년 10개)하였다가 2021년 다시 감소(2020년 10개

3) 2020년 기업 대상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17개 기업이 등급평가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약 8,700만원의 수수료 수입을 예상하였으나, 신청 기업이 10개에 불과함에 따라 약 4,600만원으로 실제 수수료 수입이 감소하였다.

4)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에 대하여 평가비용의 50%를 지원한다.

5) 중소기업은 평가비용이 면제되며, 평가 직전연도 기준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평가비용의 절반(330만원)을 감액해주고 있다.

6) 현재는 공정거래위원회 예규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 2021년 2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 아직까지 전체 350개 공공기관 중 31개 기관만이 CP를 도입한 상황이다.

이처럼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도 활성화가 더딘 근본적인 원인은 등급평가를 통한 인센티브가 CP 도입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유인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인센티브 지급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던 '과징금 감경'이 2014년 폐지<sup>7)</sup>되면서 신규 도입 기업 수의 감소(2014년 46개 → 2015년 4개) 추세가 심화되었다.<sup>8)</sup>

이와 같이 기업들의 CP 신규 도입이 저조한 현상이 이어질 경우 기업 스스로 내부준법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윤리경영을 도모하게 하려는 동 제도의 취지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 또한, 등급평가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CP를 도입한 기업이 실제로 CP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어렵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기업들의 신규 도입과 적극적인 등급평가 신청을 유도하여 CP 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현재 수행하고 있는 CP 제도 관련 교육·홍보 등을 위한 포럼을 확대하는 한편 동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추가적인 인센티브 발굴<sup>9)</sup>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

7) 과징금 감경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는 이유로 폐지되었다.

8) 이에 따라 현재 정무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2021.11.12. 윤관석의원 대표발의)은 CP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시함과 동시에 과징금 감경 인센티브를 재도입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9) 이와 관련하여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등급평가 우수기업에게 공공조달 우수업체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조달청과 협의 중이다.

## 가. 현 황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sup>1)</sup>에 따라 분쟁 조정 및 CP 등급평가 등의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수지차보전기관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지출예산과 자체수입의 차이만큼을 출연금으로 보전해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출연금 94억 3,3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2021회계연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출연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한국공정 거래조정원 출연	9,433	9,433	-	-	9,433	9,433	-	-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김용오 예산분석관(kyo8810@assembly.go.kr, 6788-4687)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72조(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등)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제45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2. 다른 법률에서 조정원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는 분쟁의 조정
3. 시장 또는 산업의 동향과 공정경쟁에 관한 조사 및 분석
4. 사업자의 거래 관행과 행태의 조사 및 분석
5. 제90조제7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제89조제3항에 따른 동의를결의의 이행관리
6. 공정거래와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7.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 조정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조정원의 장은 제5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정부는 조정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⑤ 조정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2021회계연도 결산 수입 실적은 출연금 94억 3,300만원, 자체수입과 수탁사업비 8억 4,600만원 등 총 102억 7,900만원이고, 지출 실적은 인건비 55억 5,300만원, 운영비 21억 1,700만원, 사업비 17억 3,700만원 등 총 97억 9,600만원이다.

[2021회계연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A)	집행액(B)	차액(B-A)
수입	출연금	9,433	9,433	-
	자체수입	274	457	183
	수탁사업비	496	389	△107
	합 계	10,203	10,279	76
지출	인건비	5,701	5,553	△148
	운영비	2,128	2,117	△11
	사업비	1,878	1,737	△141
	- 분쟁조정	583	579	△4
	- 공정거래연구	480	355	△125
	- 상담지원	37	35	△2
	- 공정거래전문교육	30	28	△2
	- 협약이행평가	265	259	△6
	- 가맹종합지원	462	460	△2
	- 동의를결이행관리	21	21	0
	수탁사업비	496	389	△107
	-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304	303	△1
	- CP등급평가	127	86	△41
	- 모의공정위 경연대회	65	-	△65
	합 계	10,203	9,796	△407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나. 분석의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모의공정위경연대회 사업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관련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결산상 결손액을 발생시켰으므로, 향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수탁 자격이 없는 사업의 수탁을 전제로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모의공정위경연대회는 대학(원)생들이 가상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을 구성하고, 실제 공정위 심의절차에 따라 위법성 여부를 다투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위탁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도 모의공정위경연대회 등 대학생 대상 홍보·교육 내역사업 예산 7,200만원 중 7,100만원을 집행하였다.

[2021회계연도 모의공정위경연대회 등 대학생 대상 홍보·교육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 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공정거래지원	978	978	-	-	978	928	-	50
모의공정위경연대회 등 대학생 대상 홍보·교육사업	72	72	-	-	72	71	-	1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한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2021년도 수탁사업비 예산안에는 모의공정위경연대회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 6,500만원이 편성되었다. 그런데 2021년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사업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아닌 다른 민간대행업체에 위탁하면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모의공정위경연대회를 개최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던 수탁사업비 6,500만원은 전액 불용되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모의공정위 경연대회 수탁사업비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모의공정위 경연대회	65	-	65

자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사업을 수행하지 못한 경위에 대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모의공정위경연대회 수탁을 위한 입찰 참가자격을 중소기업확인서 소지 기관으로 제한하면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기 시작한 것은 2019년부터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그 이후로 계속 참가자격이 없는 상태였음에도 사업 수탁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2019년에 입찰 참가업체가 없어 유찰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의계약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동 사업을 위탁하였는데,<sup>2)</sup>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21년에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여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 모의공정위경연대회 추진 현황]

구분	2019	2020	2021
참가 자격	중소기업확인서 소지		
위탁 경위	유찰로 인하여 수의계약 체결	코로나19로 인하여 대회 취소	경쟁입찰
수탁 기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민간대행업체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및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이처럼 사업 수탁을 위한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에도 해당 사업의 수탁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여 결산상 결손액을 발생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재정운용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수탁할 수 없는 사업의 예산을 수탁사업비에 반영함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교부하는 수지차 출연금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자체수입과 지출액 산정의 정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향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수행이 불가능한 사업의 수탁을 전제로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2)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대회가 취소되었다.

### 가. 현 황

공정거래위원회 세입 예산은 기타재산수입, 과태료, 과징금, 위약금, 가산금, 기타경상이전수입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과태료<sup>1)</sup>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공정거래 관련 법률에 따라 공시위반, 허위자료 제출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 부과하는 금액을 세입으로 계상하는 항목으로, 2021회계연도 징수결정액 51억 5,000만원 중 34억 7,400만원이 수납되고 16억 7,600만원이 미수납되었다.

과징금<sup>2)</sup>은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경제력집중 억제규정 위반행위, 부당한 공모행위 등이 있는 경우 부과하는 금액을 세입으로 계상하는 항목으로, 2021회계연도 징수결정액 1조 3,139억 7,600만원 중 7,859억 3,100만원이 수납되었고 5,276조 8,300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3억 6,100만원이 불납결손되었다.

가산금<sup>3)</sup>은 과징금 또는 과태료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을 도과하는 경우 연체 이자를 가산하여 부과하는 금액을 계상하는 항목으로, 2021회계연도 징수결정액 101억 9,400만원 중 1억 9,300만원이 수납되고 100억 100만원이 미수납되었다.

[2021회계연도 세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과태료	2,877	2,877	2,877	5,150	3,474	1,676	-	67.5
과징금	394,884	394,884	394,884	1,313,976	785,931	527,683	361	59.8
가산금	4,015	4,015	4,015	10,194	193	10,001	-	1.9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김용오 예산분석관(kyo8810@assembly.go.kr, 6788-4687)

- 1) 코드: 일반회계 56-563
- 2) 코드: 일반회계 56-565
- 3) 코드: 일반회계 58-581

## 나. 분석의견

과태료·과징금·가산금의 임의체납 사유 미수납액이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여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관련 법률 및 그에 따른 제재처분의 실효성 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세청을 비롯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 징수활동 효과성 제고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임의체납액을 축소해나갈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과태료·과징금·가산금의 미수납액은 각각 16억 7,600만원, 5,276억 8,300만원, 100억 100만원으로, 과태료를 제외하고는 전년 대비 증가<sup>4)</sup>하여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 항목의 미수납액 총액 규모 역시 전년 대비 2,252억 8,800만원 증가(71.7%)하였다.

[최근 5년간 과태료·과징금·가산금 미수납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과태료	과징금	가산금	총액
2017	493	141,177	160	141,830
2018	3,286	287,627	160	291,073
2019	2,726	136,435	160	139,321
2020	2,851	310,938	283	314,072
2021	1,676	527,683	10,001	539,360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세입 항목의 미수납 사유는 크게 당해 회계연도 연말 기준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납기미도래), 집행정지 인용 등에 따라 징수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경우(징수유예), 그 밖에 특별한 미수납 사유가 없거나 체납정리 중인 경우(임의체납)로 구분된다.

2021회계연도 공정거래위원회 과태료·과징금·가산금 미수납액을 사유별로 구분해보면, 과태료의 경우 납기미도래가 1억 4,200만원, 임의체납액이 15억 3,400만원이고, 과징금의 경우 납기미도래가 4,756억 4,500만원, 징수유예가 83억 7,000만원, 임의체납이 436억 6,800만원이며, 가산금의 경우 100억 100만원 전액이 임의체납에 해당된다.

4) 가산금 미수납액이 급격하게 증가한 이유는 2019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국회의 지적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징수결정을 하지 않고 있던 체납과징금의 가산금을 반영하였기 때문이다.

[2021 회계연도 과태료 · 과징금 · 가산금 미수납 사유별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미수납액	납기미도래	징수유예	임의체납
과태료	1,676	142	-	1,534
과징금	527,683	475,645	8,370	43,668
가산금	10,001	-	-	10,001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과태료 · 과징금 · 가산금의 임의체납액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21 회계연도에는 세 항목의 임의체납액이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하여 최근 5년간 가장 큰 규모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세 항목의 임의체납액 총액 역시 552억 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72억 4,500만원 증가(45.4%)하여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sup>5)</sup>

[최근 5년간 과태료 · 과징금 · 가산금 임의체납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과태료	과징금	가산금	총액
2017	411	28,742	160	29,313
2018	944	38,618	160	39,722
2019	1,129	40,267	160	41,556
2020	1,480	36,318	160	37,958
2021	1,534	43,668	10,001	55,203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과태료 · 과징금 · 가산금은 공시위반, 허위자료 제출 또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경제력집중 억제규정 위반행위, 부당한 공모행위 등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환수와 제재처분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처럼 특별한 사유 없이 적시에 수납되지 못함에 따른 임의체납액이 증가하는 것은 공정한 시장경쟁을 촉진한다는 정책의 효과와 관련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5)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산금의 급격한 증가는 2019 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국회 지적에 따라 체납과징금의 가산금을 반영하였기 때문인데, 체납자들의 상당수가 폐업, 파산 등으로 실질적인 징수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임의체납액 축소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독촉장 발부, 재산조회, 전자압류시스템 활용 등을 통해 적극적인 징수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입장이다. 관련하여 2021년에는 과태료 징수활동을 126회, 과징금 징수활동을 727회 수행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sup>6)</sup>

[최근 5년간 과태료·과징금 징수활동 횟수]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과태료	80	111	70	211	126
과징금	1,395	723	305	454	727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다만, 과태료의 경우 징수활동 횟수가 전년 대비 오히려 감소하였고, 과징금의 경우 징수활동 횟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임의체납액이 최근 5년간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두 세입항목 모두 5년 이상 장기 미수납액의 규모가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임의체납액 축소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다 적극적인 징수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보인다.

[2021회계연도 과태료·과징금·가산금 임의체납액의 체납기간별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체납기간							합계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과태료	190	225	403	307	152	228	28	1,534
과징금	9,869	2,915	7,134	6,850	6,321	6,573	4,006	43,668
가산금	9,841	9,841	-	-	-	10	150	10,001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6) 가산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징수활동 실적을 관리하지 않고 있다.

[임의체납사유 5년 이상 장기 미수납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0(A)	2021(B)	B-A
과태료	155	256	101
과징금	9,996	10,579	583
가산금	158	160	2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과태료·과징금·가산금 등은 공정거래 관련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임의체납에 따른 미수납액이 증가하는 것은 정부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행정의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공정거래 관련 법률 및 그에 따른 제재처분의 실효성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또한, 공정거래 관련 법률 준수자와 미준수자, 성실한 납부자와 미납부자 사이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세청을 비롯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 징수활동의 효과성 제고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임의체납액을 축소해나갈 필요가 있다.



**금융위원회**



## 1

## 현황

## 가. 세입·세출 결산

2021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2,480억 6,900만원이며, 2,876억 5,5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89.7%인 2,581억 2,200만원을 수납하고 290억 4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5억 2,900만원을 불납결손처리하였다.

[2021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248,069	248,069	248,069	287,655	258,122	29,004	529	89.7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특별회계	-	-	-	-	-	-	-	-
합 계	248,069	248,069	248,069	287,655	258,122	29,004	529	89.7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2021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3조 9,452억 6,800만원이며, 이 중 99.9%인 3조 9,393억 7,6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2,7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6억 6,5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21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3,705,172	3,705,172	3,705,268	3,699,376	227	5,665	99.8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 특별회계	240,000	240,000	240,000	240,000	-	-	100.0
합 계	3,945,172	3,945,172	3,945,268	3,939,376	227	5,665	99.9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나. 기금 결산

2021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기금의 수입계획현액은 26조 5,120억 3,000만원이며, 45조 1,490억 4,2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61.2%인 27조 6,135억 7,700만원을 수납하고 15조 4,548억 4,0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1조 9,137억 9,500만원을 불납결손처리하였다.

[2021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기금 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수입계획		계획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당초	수정						
공적자금상환기금	6,142,351	7,178,531	7,178,531	7,244,311	7,098,411	-	-	98.0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기금	68,426	68,240	68,240	89,170	68,240	-	-	76.5
신용보증기금	9,586,156	9,666,769	9,666,769	23,387,969	10,401,302	11,311,885	167,482	44.5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2,049,879	2,049,879	2,049,879	4,199,709	2,147,378	2,006,414	45,917	51.1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	4,495,691	4,495,691	4,495,691	6,353,699	4,024,061	2,136,541	198,096	63.3
예금보험기금채권 상환기금	3,052,920	3,052,920	3,052,920	3,874,184	3,874,184	-	-	100.0
합 계	25,395,423	26,512,030	26,512,030	45,149,042	27,613,577	15,454,840	193,795	61.2

자료: 금융위원회

2021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기금의 지출계획현액은 26조 5,536억 4,800만원이며, 이 중 104.0%인 27조 6,135억 7,700만원을 지출하고 162억 2,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조 6,439억 6,9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21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기금 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지출계획		계획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당초	수정					
공적자금상환기금	6,142,351	7,178,531	7,178,531	7,098,411	-	52,568	98.9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기금	68,426	68,240	68,240	68,240	-	0	100.0
신용보증기금	9,586,156	9,666,769	9,706,882	10,401,302	15,538	1,203,374	107.2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2,049,879	2,049,879	2,049,879	2,147,378	-	24,601	104.8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4,495,691	4,495,691	4,497,196	4,024,061	682	85,006	89.5
예금보험기금채권 상환기금	3,052,920	3,052,920	3,052,920	3,874,184	-	278,420	126.9
합 계	25,395,423	26,512,030	26,553,648	27,613,577	16,220	1,643,969	104.0

자료: 금융위원회

#### 다. 총수입 · 총지출 결산

2021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총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46억 9,900만원(△0.31%) 감소한 1조 5,163억 5,5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6,624억 2,600만원(77.6%)이 증가하였다.

[2021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0 결산(A)	2021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산	853,607	248,069	248,069	258,122	10,053	△595,485
기금	322	1,272,985	1,272,985	1,258,233	△14,752	1,257,911
합계	853,929	1,521,054	1,521,054	1,516,355	△4,699	662,426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2021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총지출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131억 1,700만원(△1.0%) 감소한 1조 3,480억 1,8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2조 2,225억 7,600만원(△62.2%)이 감소하였다.

[2021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0 결산(A)	2021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산	3,570,408	1,345,172	1,345,172	1,339,376	△5,796	△2,231,032
기금	186	15,963	15,963	8,642	△7,321	8,456
합계	3,570,594	1,361,135	1,361,135	1,348,018	△13,117	△2,222,576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 라. 재무 결산

2021회계연도 말 현재 금융위원회의 자산은 27조 9,908억 100만원, 부채는 44조 2,480억 2,200만원으로 순자산은 △16조 2,572억 2,200만원이다.

자산은 유동자산 19조 2,436억 4,000만원, 투자자산 7조 5,558억 7,000만원, 일반유형자산 5,226억 6,900만원, 기타비유동자산 6,220억 8,000만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2조 241억 7,300만원(7.8%) 증가하였다. 이는 단기투자증권의 증가 등에 따른 유동자산 2조 2,017억 3,700만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부채는 유동부채 2조 8,921억 4,700만원, 장기충당부채 36조 6,050억 7,200만원, 장기충당부채 4조 4,489억 3,3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5조 4,420억 300만원(△11.0%) 감소하였다. 이는 장기예수금의 유동성대체 감소 및 상환채권의 상환 등에 따른 유동부채 4조 6,933억 8,100백만원 감소, 정부내장기예수금 유동성대체 감소 등에 따른 장기차입부채 9,689억 4,800백만원 감소 등에 기인한다.

[2021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회계연도(A)	2020 회계연도(B)	전년도 비 증감	
			A-B	(A-B)/B
자 산	27,990,801	25,966,628	2,024,173	7.8
Ⅰ. 유동자산	19,243,640	17,041,903	2,201,737	12.9
Ⅱ. 투자자산	7,555,870	7,785,545	△229,675	△3.0
Ⅲ. 일반유형자산	522,669	506,138	16,531	3.3
Ⅳ. 사회기반시설	0	0	0	0.0
Ⅴ. 무형자산	46,542	36,044	10,498	29.1
Ⅵ. 기타비유동자산	622,080	596,998	25,082	4.2
부 채	44,248,022	49,690,025	△5,442,003	△11.0
Ⅰ. 유동부채	2,892,147	7,585,528	△4,693,381	△61.9
Ⅱ. 장기차입부채	36,605,072	37,574,020	△968,948	△2.6
Ⅲ. 장기총당부채	4,489,933	4,342,729	147,204	3.4
Ⅳ. 기타비유동부채	260,870	187,747	73,123	38.9
순 자 산	△16,257,222	△23,723,397	7,466,175	31.5
Ⅰ. 기본순자산	76,948,724	76,948,724	0	0.0
Ⅱ. 적립금 및 양여금	△90,698,061	△98,335,713	7,637,652	7.8
Ⅲ. 순자산 조정	△2,507,885	△2,336,408	△171,477	△7.3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021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수입(수익)이 재정지출(비용)을 초과하여 순수익이 3조 5,885억 2,8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 총원가 2조 4,889억 3,500만원, 관리운영비 1,873억 100만원, 비배분비용 8,271억 6,2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프로그램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2조 61억 400만원, 비배분수익 5,563억 5,000만원, 비교환수익 등 4조 5,294억 7,2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1조 9,684억 1,000만원(△67.7%) 감소한 9,409억 4,400만원이며, 이는 주택금융지원프로그램 및 산업금융지원프로그램 등의 순원가 감소 등으로 프로그램순원가가 전년도 대비 1조 7,058억 4,600만원 감소한 것에 기인한다.

총 11개의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순원가가 큰 프로그램은 산업금융지원프로그램(9,499억 2,300만원)과 저축장려 프로그램(682억 2,800만원), 자금세탁방지시스템선진

화 프로그램(95억 8,0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946억 4,500만원과 경비 926억 5,6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이자비용 7,757억 6,500만원과 자산처분손실 160억 5,6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1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회계연도(A)	2020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Ⅰ. 프로그램순원가(가-나)	482,831	2,188,677	△1,705,846	△77.9
가. 프로그램 총원가	2,488,935	3,518,688	△1,029,753	△29.3
나. 프로그램 수익	2,006,104	1,330,011	676,093	50.8
Ⅱ. 관리운영비	187,301	182,094	5,207	2.9
Ⅲ. 비배분비용	827,162	943,035	△115,873	△12.3
Ⅳ. 비배분수익	556,350	404,452	151,898	37.6
Ⅴ. 재정운영순원가(Ⅰ+Ⅱ+Ⅲ-Ⅳ)	940,944	2,909,354	△1,968,410	△67.7
Ⅵ. 비교환수익 등	4,529,472	3,356,544	1,172,928	34.9
Ⅶ. 재정운영결과(Ⅴ-Ⅵ)	△3,588,528	△447,190	△3,141,338	△702.5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의 2021회계연도 기초순자산은 △23조 7,233억 9,7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16조 2,572억 2,200만원으로 기초 대비 7조 4,661억 7,500만원 (31.5%) 증가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가산항목인 조정항목이 기초 대비 1조9,320억 1,100만원 감소하였으나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도 기초 대비 3조 1,413억 1,800만원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21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부담금수익, 제재금수익 등 재원의 조달 4조 32억 6,400만원과 국고이전이출 등 재원의 이전 1조 4,903억 2,100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투자증권평가손익 1,931억 1,600만원, 자산재평가이익 216억 4,000만원, 출연금의증감 1조 5,361억 7,900만원 등으로 구성된다.

[2021 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회계연도(A)	2020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I. 기초순자산	△23,723,397	△29,680,708	5,957,311	20.1
II. 재정운영결과	△3,588,528	△447,190	△3,141,338	△702.5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2,512,944	2,213,406	299,538	13.5
IV. 조정항목	1,364,704	3,296,715	△1,932,011	△58.6
V. 기말순자산(I - II + III + IV)	△16,257,222	△23,723,397	7,466,175	31.5

자료: 금융위원회

### 마. 재정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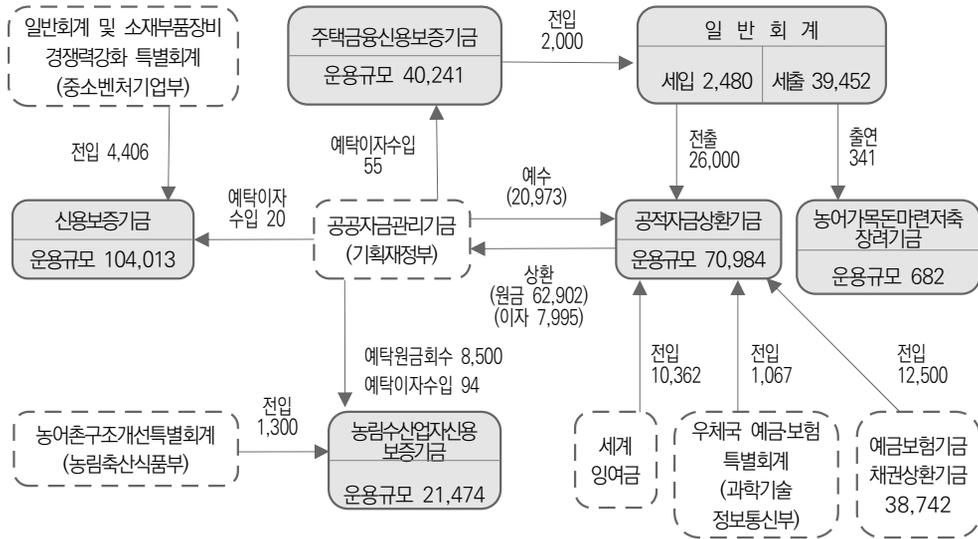
2021 회계연도 금융위원회의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회계·기금 간 거래를 먼저 살펴보면, 공적자금상환기금은 금융위원회 일반회계에서 2조 6,000억원, 우체국예금·보험특별회계에서 1,067억원을 전입하였고, 금융위원회 일반회계에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으로 341억원을 출연하였다. 신용보증기금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일반회계에서 3,806억원,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 특별회계에서 600억원을 전입하였고,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1,300억원이 전입되었으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 금융위원회 일반회계로 2,000억원을 전출하였다.

다음으로 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공적자금상환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2조 973억원을 예수하고, 예수원금 6조 2,902억원, 예수이자 7,995억원을 상환하였으며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으로부터 1조 2,500억원을 전입받았다. 신용보증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20억원의 예탁이자를 전입받았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55억원의 예탁이자를 전입받았다.

[2021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

(단위: 억원)



주: 총계 기준

금융위원회의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 **산업은행 출자(금융시장안정화)**, ② **산업은행 출자(뉴딜펀드)**, ③ **중소기업은행 출자(금융시장안정화)** 등이 있다.

산업은행 출자(금융시장안정화) 사업은 2,295억원이 감액(4,591억 3,000만원 → 2,296억 3,000만원)되었고, 산업은행 출자(뉴딜펀드) 사업은 900억원이 감액(6,000억원 → 5,100억원)되었으며, 중소기업은행 출자(금융시장안정화) 사업은 126억원이 감액(251억 6,900만원 → 125억 6,900만원)되었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으로는 ① **금융관련 국제협력 및 금융중심지 추진 사업**, ② **전문금융인 양성과정 설립 사업** 등이 있다.

금융관련 국제협력 및 금융중심지 추진 사업은 2억원이 증액(11억 5,400만원 → 13억 5,400만원)되었고, 전문금융인 양성과정 설립 사업은 600억원이 증액(0원 → 600억원)되었다.

국회심사 과정에서 **부대의견이 채택된 사업**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 사업으로 “금융위원회는 서민의 주거 안정화를 위해 40년 이상의 장기모기지를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가 부대의견으로 채택되었다<sup>1)</sup>.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업**은 **신용보증기금 일반회계전입금**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더 지원하기 위해 219억원이 증액(3,587억원 → 3,806억원)되었다.

1) 국회,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20.12.

금융위원회는 ①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및 리스크 관리, ②뉴딜펀드·녹색금융 투자 본격화를 통한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 지원, ③금융산업 혁신 및 디지털 금융 확산, ④금융소비자 보호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2021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21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로 인해 신용보증기금·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가 감소하였으나, 2022년 9월 등 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각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부실이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용보증기금 및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사전에 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핀테크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핀테크 해외진출 지원 사업의 보조금으로 보조사업자인 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핀테크 정책·제도에 관한 연구용역을 수행한 것은 민간보조사업의 추진 목적에 맞지 않으므로, 금융위원회는 정책·제도 관련 연구용역을 직접 수행하는 한편 보조사업자를 철저히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

셋째,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의 실적이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 예상했던 규모보다 크게 증가하여 2021년 하반기 보조금이 보조사업자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지급되지 못하여 지급방식을 변경하고 2022년도 예산으로 집행하였는데, 향후 연간 수요 예측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적정 규모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넷째, 주택담보노후연금(주택연금)의 신탁방식 도입에 따라 저당권 설정방식 가입자가 신탁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택신용보증기금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내 담보설정비용이 17억 4,700만원 편성되었으나 도입이 1년 이상 지연됨에 따라 집행률이 33.7%에 불과하였는데, 이는 제도 운영방식 및 절차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 1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코로나19 금융지원 관련  
기금사업 분석

2020년 초부터 발생한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격리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및 국가간 이동·물류 중단 등으로 인해 내수 및 수출경기가 위축되었다. 특히 규모가 영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경우 코로나19 대응방침 및 경기침체에 따른 매출 감소로 자금난에 처하면서 폐업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관련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왔으며, 특히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을 경감하고 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먼저,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융권 대출의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이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실시하였으며, 4차례 연장<sup>1)</sup>하여 2022년 9월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영업활동이 제한되어 유동성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차·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2020년 1월부터 실시된 소상공인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초저금리 금융지원 패키지로 마련되었다.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의 자금상황이 계속 악화됨에 따라 7.8조원(당초 10조원) 규모의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2차 프로그램은 기존 수급자를 포함한 실수요자 중심의 신속한 지원을 도모하고자 시중은행의 위탁보증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이후 코로나19 3차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2021년 1월부터는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지원 프로그램이 신설

김윤성 예산분석관(kimmys1001@assembly.go.kr, 6788-4623)

1) (당초) 2020. 4.~9. → (1차 연장) ~2021. 3. → (2차 연장) ~2021. 9. → (3차 연장) ~2022. 3. → (4차 연장) ~2022. 9.

되어 집합제한업종·경영위기업종 영위 임차 소상공인에 대해 추가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제1차·제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개요]

구 분	1차 프로그램(접수 종료)			2차 프로그램(접수 종료)	
	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	기업은행 초저금리대출	소진공 경영안정자금	시중은행 위탁보증	집합제한업종 특별보증
출시일	2020.4.1.	2020.1.20.	2020.2.7.	2020.5.25.	2021.1.18.
공급목표	3.5조원	7.8조원	3.1조원	7.0조원	3.0조원
지원대상	1~3등급	4~6등급	7등급 이하	전체 소상공인	집합제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대출만기	1년 (만기 일시상환, 연장가능)	1년 (만기 일시상환, 연장가능)	5년 (2년 거치 3년 분할)	5년 (2년 거치 3년 분할 ⇒ 최대 3년 거치)	5년 (2년 거치 3년 분할)
우대금리	1.5% ⇒ 2.5% (우대금리 2년 ⇒ 3년)	1.5% (우대금리 3년)	1.5% (우대금리 5년)	2~3% 대	2~3% 대
대출한도	3천만원	3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비고	금리 인상 및 운영 연장 (2022. 3.)	-	-	거치기간 연장 (2022. 3.)	-

자료: 금융위원회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의 저금리 대출, 특례보증 및 P-CBO 등의 지원이 있었다. 이 중 신용보증기금은 2020년 2월부터 대구·경북지역 소재 중소기업 및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영세 중소기업 등 대상 소액자금 신속·전액보증 및 코로나19 피해대응 P-CBO 등을 도입함으로써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공급을 지원해왔다.

## 1-1. 만기연장·상환유예 종료에 따른 보증기금 리스크 사전관리 필요

### 가. 현 황

정책금융기관에서 수행하는 신용보증은 피보증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때 보증기관으로서 피보증인의 경영상태·가동상황 및 신용도 등을 심사하고 보증서를 발급함으로써 신용보증을 제공하고, 피보증기업이 주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책금융기관이 연대보증인으로서 금융기관에 직접 보증채무를 이행(대위변제)한 후 피보증인에게 대위권자로서 채권회수 등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정책금융기관 중 신용보증기금은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2021회계연도 일반보증 대위변제 사업<sup>2)</sup>에 1조 9,511억 3,000만원이 계획되어 1조 2,110억 7,2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7,400억 5,800만원이 불용되었다. 2020년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인 소상공인위탁보증에 대한 대위변제 사업은 2021회계연도 계획현액 3,701억원 중 837억 3,0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2,863억 7,000만원이 불용되었다.

[2021회계연도 신용보증기금의 일반보증 대위변제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계획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일반보증 대위변제	19,511,300	19,511,300	-	-	19,511,300	12,110,720	-	740,058
소상공인 위탁보증 대위변제	370,100	370,100	-	-	370,100	83,730	-	286,370

자료: 금융위원회

한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담보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 등의 신용을 보증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2021회계연도 대위변제금 사업<sup>3)</sup>에 3,192억원이 계획되어 3,020억 9,7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171억 300만원이 불용되었다.

2) 코드: 신용보증기금 2431-300

3) 코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2432-680

[2021 회계연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금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계획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대위변제금	319,200	319,200	-	-	319,200	302,097	-	17,103

자료: 금융위원회

나. 분석의견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2022년 9월 종료됨에 따라 각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부실이 확대될 우려가 있으며 이에 따라 대위변제가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으므로, 신용보증기금 및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사전에 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먼저, 신용보증기금의 일반보증 운용현황을 보면, 보증공급액은 2019년 47.0조원에서 2020년 55.4조원, 2021년 56.1조원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보증사고율은 2019년 3.3%에서 2021년 2.0%로 감소하였으며 대위변제율도 동 기간 3.3%에서 2.0%로 하락하였다.

[신용보증기금의 일반보증 운용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보증공급액	440,925	451,776	450,841	470,395	553,933	560,506
신규보증	117,803	118,471	112,792	118,100	176,818	135,778
연장갱신	323,122	333,305	338,049	352,295	377,115	424,728
보증잔액(A)	421,535	443,903	455,482	472,231	549,536	591,461
보증사고액(B)	16,467	15,378	16,178	15,561	13,340	11,604
보증사고율(B/A)	3.9	3.5	3.6	3.3	2.4	2.0
대위변제액(C)	17,228	15,191	15,367	15,703	13,594	12,111
대위변제율(C/A)	4.1	3.4	3.4	3.3	2.5	2.0

자료: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네 차례 연장되고 손실보상·재난 지원금·방역지원금 등 피해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 다각적인 정책지원으로 기업 부실이 감소하였다고 보고 있다.<sup>4)</sup> 특히,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부 대출에 대하여, 본래 소상공인이 폐업하면 보증사고로 취급하여 대출회수 등 부실처리를 진행하였으나 폐업하더라도 원리금을 정상 상환 중인 경우 한시적으로 만기시까지 대출을 유지하는 부실 유보조치도 연장되었는데, 해당 조치 역시 보증사고액 및 대위변제액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

그러나 2022년 9월 동 조치 종료 이후 상환부담의 증가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므로 기금 부실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신용보증기금의 만기연장·상환유예된 보증은 전체 보증공급의 50%를 차지하였고 만기연장·상환유예된 보증의 대위변제액은 전체 대위변제액의 61.9%를 차지하였으나, 2021년 만기연장·상환유예 보증공급 비중이 64.3%로 증가하고 대위변제 비중도 64.8%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기연장·상환유예로 인한 총 보증부실 규모는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상 6조 8,190억원 중 2,181억원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만기연장·상환유예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대위변제 발생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20년		2021년	
	보증공급	대위변제	보증공급	대위변제
계 (A)	553,933	13,594	560,506	12,111
만기연장·상환유예(B) <sup>1)</sup>	276,840	8,416	360,296	7,842
B/A	50.0	61.9	64.3	64.8

주: 1) 2020년 수치는 2020년에 실제 만기연장된 보증공급 규모와, 2020년 만기연장에 대해 2020~2021년간 발생한 대위변제액. 2021년 수치는 2021년에 실제 만기연장된 보증공급규모와, 2021년 만기연장에 대해 2021~2022년간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대위변제액임

자료: 신용보증기금

4) 신용보증기금은 신규보증 리스크인수율을 관리한도(4.4%) 이내로 유지하여 부실률을 사전적으로 통제하는 한편, 부실징후 조기 파악 및 사후관리 강화 등 부실정상화 노력을 통한 내부적 요인에 의해 부실률이 낮아진 측면도 있다는 의견이다.

[만기연장·상환유예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보증부실 예측]

(단위: 억원, %)

구분	보증잔액(a) <sup>1)</sup>	부실률(b)	부실예상액(a×b)
만기연장	62,311	2.0% <sup>2)</sup>	1,246
상환유예(원금+이자)	5,879	15.9% <sup>3)</sup>	935
합 계	68,190	-	2,181

주: 1) 2021. 9월말 금융위 및 은행연합회 자료를 기반으로 추정

2) 2021년 일반보증 부실률

3) 유예제도 미운영 시 상환능력 취약 상태를 감안하여, 신용등급 미흡 기업(KR14·15·기타)의 최근 5개년 평균 경험부실률을 적용

자료: 신용보증기금

다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경우 보증공급 대상인 농어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에 속하는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적용을 받았으며, 2020년 4월부터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에 따라 최종 보증기일이 도래한 경우 해당 보증기일을 연장 처리하였다. 이에 따라 갱신보증이 2019년 4.8조원에서 2020년 5.2조원, 2021년 5.4조원으로 증가하여 신규보증이 2019년 대비 2021년 1.2조원 감소하였음에도 전체 보증공급은 0.6조원 감소한 8.0조원이었다. 보증사고의 경우 2019년 3,722억원 대비 2021년 3,547억원으로 감소하여 보증사고율 역시 2019년 2.3%에서 2021년 2.2%로 낮아졌으며, 대위변제액도 2019년 3,265억원 대비 244억원 감소한 3,021억원으로 대위변제율이 0.2%p 감소하기도 하였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보증운용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보증공급액	63,427	67,462	79,201	86,112	81,871	80,147
신규보증	34,802	34,460	39,180	38,531	29,668	26,101
연장갱신	28,625	33,002	40,021	47,581	52,203	54,046
보증잔액(A)	121,804	133,968	148,906	161,117	164,399	163,585
보증사고액(B)*	1,828	2,460	3,107	3,722	3,880	3,547
보증사고율(B/A)	1.5	1.8	2.1	2.3	2.4	2.2
대위변제액(C)	1,473	2,092	2,776	3,265	3,073	3,021
대위변제율(C/A)	1.2	1.6	1.9	2.0	1.9	1.8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역시 2022년 9월 동 조치 종료 이후 상환부담의 증가에 따른 기금 부실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만기연장·상환유예된 보증이 전체 보증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 전체 대위변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4%였으나, 2021년 보증공급 비중은 5.8%, 대위변제 비중은 9.4%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2022년 9월 이후 조치 종료에 따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 212억의 추가 부실이 발생할 것으로도 예상된다.

[만기연장·상환유예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대위변제 발생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20년		2021년	
	보증공급	대위변제	보증공급	대위변제
계 (A)	81,871	3,073	80,147	3,021
만기연장·상환유예(B) <sup>1)</sup>	2,171	134	4,392	285
B/A	2.7	4.4	5.8	9.4

주: 1) 2020년 수치는 2020년에 실제 만기연장된 보증공급 규모와, 2020년 만기연장에 대해 2020~2021년간 발생한 대위변제액. 2021년 수치는 2021년에 실제 만기연장된 보증공급규모와, 2021년 만기연장에 대해 2021~2022년간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대위변제액임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만기연장·상환유예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부실 예측]

(단위: 억원, %)

구 분 <sup>1)</sup>	보증잔액(a) <sup>2)</sup>	부실률(b) <sup>3)</sup>	부실예상액(a×b)
만기연장·상환유예	6,661	3.19	212

주: 1)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구분이 어려워 합산금액 기준 작성  
 2) 2021. 12월말 잔액을 기준으로 추정  
 3) 금리상승기에 따른 채무자 상환능력 하락이 예상되는바, 최근 2개년(2020~2021) 일반보증 평균 부실률(2.9%)의 110%인 3.19%를 적용함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한편, 소상공인위탁보증의 경우 2020년 5월부터 2021년 말까지 시행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하나로, 12개 시중은행에서 보증·대출이 One-stop으로 이루어지는 위탁보증 방식이다. 소상공인위탁보증의 특징을 보면, 소상공인위탁

보증의 보증비율은 95%로 일반보증의 보증비율인 70~100%보다 높으며 보증심사는 일반보증보다 절차 및 요건을 완화하여 시중은행이 심사하도록 하였다. 본래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출시되어 2022년 5월부터 거치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원금상환 부담을 고려하여 거치기간을 최대 1년 연장하였으며 2022년 9월에도 거치기간 중이어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에 직접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일반보증 및 소상공인위탁보증 비교]

구 분	일반보증	소상공인위탁보증	
		기본 프로그램	임차 프로그램
지원대상	- 일반기업 (보증특성에 따라 상이)	- 업력 6개월 이상의 개인기업인 소기업(도박, 사치, 향락 등 일부 업종 제외)	- 기본 프로그램 대상 기업 중 집합제한·경영위기업중 영위 임차 기업
지원한도	- 운전 30억원 (시설 100억원)	- 2천만원	- 2천만원
보증비율	- 70~100%	- 95%	
보증기간 및 구조	- 단기(1년)·장기(3년 이상) 대출 - 보증특성별 상환구조 상이	-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5년 만기)	
보증료율	- 0.5~3.0%	- 1년차 0.3% - 2~5년차 0.9%	- 1~2년차 면제 - 3~5년차 0.4%
보증심사	- 신용도·차입금상환능력·대표자·재무건전성·미래성장성 여부 심사 - 모든 보증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	- 수탁은행에서 심사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금융회사 대출금 연체, 국세·지방세 체납, 신용정보조회서상 신용관리정보 보유여부 심사 - 현장조사 미실시	

자료: 신용보증기금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소상공인위탁보증은 지원대상 및 보증심사의 간소화 등으로 인해 2020년 5월에 출시되었으나 첫 해인 2020년부터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가 발생하였으며, 2021년 보증사고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22년 3월말 기준 보증사고율이 2.2%에 이르렀다.

[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위탁보증 운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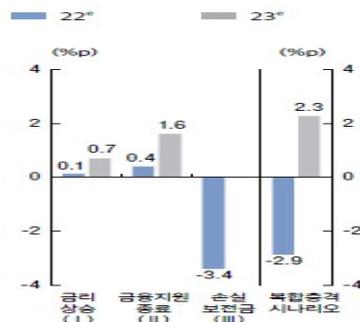
(단위: 억원, %)

구 분	2020	2021.3.	2021.6.	2021.9.	2021.12.	2022.3.
보증잔액	32,689	53,370	62,282	69,276	71,552	70,696
보증사고액	73	132	409	765	1,251	389
보증사고율	0.2	1.0	1.3	1.5	1.7	2.2
대위변제액	15	60	221	478	837	350
대위변제율	0.04	0.5	0.7	0.9	1.17	2.0

자료: 신용보증기금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2022. 6.)에 따르면, 기본 시나리오 대비 2022년 9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경우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자영업 가구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2022년 중 0.4%p, 2023년 중 1.6%p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2023년 저소득 가구의 DSR이 4.2%p 상승된다고 추정된다. 즉,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는 소상공인의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어 향후 소상공인위탁보증부 대출 상환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융지원 종료에 따른 자영업 가구의 DSR 변화 추정]



주: 1. 금리상승 시나리오는 2022년 및 2023년 각각 50bp씩 상승하는 경우이며, 금융지원 종료 시나리오는 2022년 9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 손실보전금 시나리오는 2022년 중 가구당 600만원씩 일괄지급하는 경우를 상정

2. 복합충격시나리오는 금리상승, 금융지원종료, 손실보전금 지급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자료: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2022. 6.)

이상의 내용을 살펴볼 때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2022년 9월 종료됨에 따라 각각의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부실이 확대될 우려가 있으며 이에 따라 대위변제가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신용보증기금 및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사전에 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부실발생 시 피보증인의 채무상환능력을 면밀히 검토하여 회생가능성이 있는 경우 폐업지원 및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회생가능성이 없는 경우 구상권 행사시 채무조정 하거나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 1-2. 소상공인 이차보전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 미비 문제 검토 등

### 가. 현 황

신용보증기금의 이차보전지원 사업<sup>5)</sup>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금융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시중은행의 대출이자 차액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회계연도 계획현액 652억 4,300만원 중 489억 9,400만원을 집행하고 119억7,800억원을 이월하였으며 42억 7,1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1회계연도 신용보증기금의 이차보전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계획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이차보전지원	-	25,130	40,113	-	65,243	48,994	75.1	11,978	4,271

자료: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은 정부 재원을 활용한 이차보전 프로그램을 통해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유동성 지원 및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2020년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관물량 처리 이차보전 프로그램, 코로나19 긴급 유동성지원 이차보전 프로그램을 운용하였다. 먼저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직·간접 피해를 받은 연매출액 5억원 이하의 고신용(신용등급 1~3등급)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1년 만기 연 1.5%의 신규 신용대출을 시중은행에서 추진하되, 신용보증기금이 기업별 당초 산출금리와 대출 적용금리간 차액분의 80%를 보전하는 프로그램이다.

5) 코드: 신용보증기금 2431-313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 개요]

구 분		주 요 내 용
지원 대상	최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직·간접 피해를 받은 연매출액 5억원 이하의 고신용* 영세 소상공인**</li> <li>* 개인신용등급 1~3등급 수준에 상응하는 은행별 내부 신용등급(은행별 상이)</li> <li>**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영위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li> </ul>
	1·2차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 기 활용중인 소상공인 전체</li> </ul>
대상 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중은행이 취급하는 운영자금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li> </ul>
대출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당 3,000만원</li> </ul>
이차 보전	최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저금리대출(1.5%) 지원을 위한 이차차액(대출금리-1.5%)의 80%를 신보가 1년 보전(20%는 은행 자체 부담)</li> </ul>
	1차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저금리대출(1.5%) 지원을 위한 이차차액(대출금리-1.5%)의 70%를 신보가 1년 보전(30%는 은행 자체 부담)</li> </ul>
	2차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저금리대출(2.5%) 지원을 위한 이차차액(대출금리-2.5%)의 70%를 신보가 1년 보전(30%는 은행 자체 부담)</li> </ul>
운용 기간	최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0.4.1.~2021.12.31.(신규대출은 2020년말 종료)</li> </ul>
	1차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1.4.1.~2022년말까지</li> </ul>
	2차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4.1.~2023년말까지</li> </ul>
지원 규모	당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3.5조원(이차보전 재원: 총 603.75억원)</li> </ul>
	1차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2.9조원(이차보전 연장 재원: 총 484억원)</li> </ul>
	2차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2.9조원(이차보전 연장 재원: 총 341.52억원)</li> </ul>

자료: 신용보증기금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다음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관물량 처리 이차보전 프로그램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으로부터 접수받은 경영안정자금 중 재원 소진 등으로 집행이 곤란해진 접수분 9.7만건의 2조원 규모의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대출에 대해 이차보전을 일시 보전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목적예비비 960억원을 재원으로 하여 2020년말까지 지원하였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관물량 처리 이차보전 프로그램 개요]

구 분	주 요 내 용 (2020년 종료)
지원대상	■ 소진공에 경영안정자금을 既접수한 소상공인(9.7만건)
대상자금	■ 시중은행이 취급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대출
대출한도	■ 기업당 3,000만원
이차보전	■ 초저금리대출(1.5%) 지원을 위한 이차차액 1.6%, 3년분 일시 보전
운용기간	■ 2020.5.12.~이차보전 재원 소진시까지(2020년도 접수분에 한함)
지원규모	■ 총 2조원(이차보전 재원: 총 960억원)

자료: 신용보증기금

마지막으로, 코로나19 긴급 유동성지원 이차보전 프로그램은 2020년 9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매출 급감으로 인해 경영안정이 시급한 피해업종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관물량 처리 이차보전 프로그램의 잔여재원 중 270억원을 활용하여 2020년말까지 9,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하였다.

[코로나19 긴급 유동성 지원 이차보전 프로그램 개요]

구 분	주 요 내 용 (2020년 종료)
지원대상	■ 소진공 이관물량 이차보전 잔여분 9,000억원을 고위험시설 등 코로나19 재확산 피해업종 영위 소상공인에 지원
대상자금	■ 시중은행이 취급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대출
대출한도	■ 기업당 1,000만원
이차보전	■ 저금리대출(2.0%) 지원을 위한 이차차액 1.0%, 3년분 일시 보전
운용기간	■ 2020.9.29.~이차보전 재원 소진시까지(2020년도 접수분에 한함)
지원규모	■ 총 9천억원(이차보전 재원: 소진공 이관물량 잔여재원 총 270억원)

자료: 신용보증기금

이차보전지원 사업의 집행 현황을 보면, 2021년말까지 총 4조 540억원의 대출에 대해 1,155억원의 이차보전이 이루어졌다.

[이차보전지원 사업의 집행 현황]

(단위: 억원, 개)

구 분		지원 한도	2020년말 기준		2021년말 기준	
			지원금액 (업체수)	한도 소진율	지원금액 (업체수)	한도 소진율
영세 소상공인	대출	35,000	29,032 (116,293)	82.9%	29,032 (116,293)	82.9%
	이차보전	603.8	163	27.0%	500	82.8%
		(484 <sup>1)</sup> )	-	-	132	27.2%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이관	대출	20,000	11,240 (53,872)	56.2%	11,508 (56,553)	57.5%
	이차보전	960	515	53.6%	523	54.5% <sup>2)</sup>
코로나19 긴급 유동성 <sup>3)</sup>	대출	(9,000)	(402) (4,023)	(4.5%)	(670) (6,704)	(7.4%)
	이차보전	(270)	-	(0.0%)	(20)	(7.4% <sup>2)</sup> )
합 계	이차보전	1,563.8	678	43.4%	1,155	73.9%

주: 1) 영세소상공인 이차보전 만기연장: 이차보전 예상 잔여재원 484억원(영세소상공인 이차보전 62억원 + 소진공 이관물량 처리 이차보전 422억원) 및 은행권 자체 부담을 통해 영세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 1년 연장 실시(2021.4.)

2) 소진공 이관물량 처리, 코로나19 긴급 유동성지원 이차보전은 3년분 이차보전금을 일시에 지급한 후 대출상환 등에 따른 환급이 발생하므로, 향후 소진율 일부 하락 예상

3) 코로나19 긴급 유동성지원 이차보전은 소진공 이관물량 처리 이차보전의 잔여재원을 활용한 것으로, 대출실적 및 이차보전 실적은 소진공 이관물량 실적에 포함

자료: 신용보증기금

## 나. 분석의견

신용보증기금의 이차보전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이차보전지원 사업은 법적 근거가 미비하였는바, 향후에는 법률상 규정되지 않은 이차보전사업을 시행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현재 진행 중인 이차보전지원에 대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유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sup>6)</sup>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신용보증, 보증연계투자, 중소기업팩토링 운용 등과 그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를 수행한다.<sup>7)</sup>

그러나 소상공인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업무는 설치법인 「신용보증기금법」에 규정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및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 제1항제7호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업무를 신용보증기금의 기본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 승인하여 실시하였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신용보증기금의 설치목적이 신용보증을 통해 기업의 금융을 원활히 하기 위함임을 감안할 때, 이차보전 업무가 「신용보증기금법」에서 규정한 업무인 기본재산의 관리, 신용보증, 보증연계투자 등과는 연관성이 낮으므로 법률상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라고 보기도 어렵다.

### 6) 「신용보증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유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7)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업무) ① 기금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재산의 관리
  2. 신용보증
  - 2의2. 보증연계투자
  - 2의3.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팩토링 운용
  3. 경영지도
  4.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
  5. 구상권(求償權)의 행사
  6. 신용보증제도의 조사·연구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것
- ② 기금은 제1항의 업무 외에 재보증업무 및 유동화회사보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비록 법적 근거 없이 이차보전지원 사업을 실시하였으나,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낮은 금융비용으로 유동성을 지원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집행이 곤란한 이차보전 접수분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이차보전 물량을 이관해 온 것도 불가피한 측면은 있다. 그러나 향후에는 법률상 규정되지 않은 이차보전사업을 시행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현재 진행 중인 이차보전지원에 대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차보전지원 사업의 계획액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사업의 운영방식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연례적 이월이 발생하였는바, 신용보증기금은 향후 사업 운영방식에 맞게 해당연도의 계획액을 적정 편성하여 연례적인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할 필요가 있다.**

2021년도 신용보증기금 기금운용계획상 이차보전지원 사업 계획액은 401억 1,300만원이었다. 그러나 2021년 4월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이 1차 연장됨에 따라 필요한 이차보전 지급액을 조달하기 위하여 2021. 5. 28. 기금운용계획을 자체변경하였다.

[신용보증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목	세목	세사업	금액
자체변경 (2021.5.28.)	민간이전	이차보전금	이차보전지원	25,130
	예치금및유가증권매입	통화금융기관예치금	통화금융기관예치	△17,098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비통화금융기관예치	△3,569
		국채매입	국채매입	△2,321
		기타유가증권매입	국채외채권매입	△1,696
		기타유가증권매입	기타유가증권매입	△446
	합 계			△25,130

자료: 금융위원회

한편, 신용보증기금은 「코로나19 관련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 운영지침」 등에 근거하여 분기마다 이차보전분을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다. 은행은 매분기 익월 10영업일 이내에 이차보전금 지급신청서 및 취급명세를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하고, 신용보증기금은 매분기 익월 말 이내에 은행이 지정한 계좌에 이차보전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하였다. 신용보증기금은 2020년 실행된 대출 중 2021년에 정산이 이루어지는 이차보전금 401억 1,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한 바 있다.

이후 2021년 4월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이 1차 연장될 당시 1년 추가 연장됨에 따라 이차보전 대상 대출의 만기가 2021년 4~12월에서 2022년 4~12월로 변경되었다. 이차보전 지원은 분기별 사후정산 방식이므로 2021년 4분기 이차보전 금액이 이연되어 2022년 초에 지급되는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동 사업에 계상되어야 하는 이차보전금은 2021년 2~3분기(4~9월) 신청 대상 이차보전금이어야 한다. 그러나 신용보증기금은 2021년 2~4분기를 기준으로 이차보전금을 계상함에 따라 2021년 4분기 신청금액인 119억 7,800만원이 2022년으로 이월되었다.

[이차보전 지원사업의 분기별 집행금액]

(단위: 억원)

구 분		2020			2021				2022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영세 소상공인	은행 이자부담 <sup>1)</sup>	77.5	166.5	155	151.5	151.4	152.4	152	140	
	이차 보전금	최 초	-	62	101	124	121	64	28	4
		연 장	-	-	-	-	-	50	82	103
소진공 이관 <sup>2)</sup>	은행 이자부담	518								
	이차 보전금	-	508	10	-	-	-	-	-	
(코로나 긴급 유동성) <sup>2)</sup>	은행 이자부담	-	-	20						
	이차 보전금	-	-	-	19	1	-	-	-	

주: 1) 은행이자부담은 신용보증기금의 이차보전금 부담 비율(최초 80%, 연장 70%)을 감안하여 산정  
 2) 소진공 이관, 코로나 긴급 유동성 이차보전은 3년분 이차보전금을 일시에 지급(신용보증기금이 100% 보전)하며, 대출상환 등에 따른 환급금액은 이차보전금 집행금액 산정 시 제외  
 자료: 신용보증기금

이는 동 사업 계획액 편성 및 심사 시 사업 운영방식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기금 역시 「국가재정법」<sup>8)</sup>에 따라 원칙적으로 지출금액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신용보증기금은 향후 사업 운영방식에 맞게 해당연도의 계획액을 적정 편성하여 연례적인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

8) 「국가재정법」

제72조(지출사업의 이월) ①기금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의 지출금액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가. 현 황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저축의욕을 높여 농어민의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저축 프로그램으로, 1976년부터 운영되었으며 1986년 마련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농어민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저축 가입자에게 저축기관에서 지급하는 이자와 별도로 소득수준 및 만기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를 적용하여 저축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기준 등을 살펴보면, 가입대상은 일반과 저소득으로 구분되며 소득수준 분류 및 가입기간에 따라 저축장려금 지급률이 달라진다. 2022년 기준 저축 지급금리 연 2.91%에 더하여 일반 가입자의 경우 3년 만기 0.9% 또는 5년 만기 1.5%, 저소득층의 경우 3년 만기 3.0% 또는 5년 만기 4.8%의 금리 수준으로 저축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대상 및 한도]

구 분		일 반	저소득
저축 가입대상	농민	1ha초과~2ha이하 농지소유(임차) 농민, 타인농업종사자	1ha이하 농지소유(임차) 농민
	어민	5톤 초과~20톤 이하 어선 소유 어민, 어선원, 양식어민	5톤 이하 어선 소유 어민
	임업인	5ha 초과 ~ 10ha 이하 산림 또는 토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임업인	5ha 이하 산림 또는 토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임업인
	양·축가	젓소 10마리, 돼지 150마리 등 일정규모의 가축을 소유한 양·축가	일반 양축가의 1/2 이하의 가축을 소유한 양축가
저축형태		정기적금(3년·5년 만기, 월·분기·반기 적립 방식)	
저축기관 지급금리		연 2.91%(2022년 기준)	
저축장려금 지급률 (연이율)		3년 0.9%, 5년 1.5%	3년 3.0%, 5년 4.8%
저축 가입한도		연 240만원 이하	
저축 취급기관		농협, 수협, 산림조합	

자료: 금융위원회

김윤성 예산분석관(kimys1001@assembly.go.kr, 6788-4623)

[지급률에 따른 저축장려금 지급한도]

저축한도		연 240만원(월 20만원)			
저축형태		만기 3년		만기 5년	
		장려금리	장려금(연간)	장려금리	장려금(연간)
가입대상	일반	0.9%	~2.16만원	1.5%	~3.6만원
	저소득	3.0%	~7.2만원	4.8%	~11.52만원

자료: 금융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최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운영실적**을 보면, 2015년 이후 가입계좌 수 및 그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저축장려금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2021년말 기준 25.4만좌로 1조 2,952억원이 불입되었으며, 저축장려금으로는 682억원이 지급되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제도 운영실적]

(단위: 천좌, 억원,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가입계좌수	346	317	296	276	277	267	254
불입액	11,177	10,037	9,585	9,507	10,086	11,370	12,952
저축장려금	988	1,006	831	829	708	678	682
저축기관 지급금리	3.39	2.59	2.05	2.45	3.11	2.72	1.82

자료: 금융위원회

**사업집행 방식**과 관련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장려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이하 '농어가기금')이 설치되어 운용 중이다.

농어가기금의 수입은 기타재산수입과 법정부담금, 일반회계전입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법정부담금은 한국은행의 출연금이며 정부가 매년 저축장려금으로 필요한 금액의 50% 이상을 출연하도록 함에 따라<sup>1)</sup> 사실상 한국은행 출연금과 일반회계전

1)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제7조(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① 정부는 저축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한국은행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수익

입금이 1:1 비중으로 수입의 대부분을 조달하고 있다. 지출은 저축장려금, 기금관리비, 통화금융기관예치 사업 등이 있으나 거의 모든 지출이 저축장려금 사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2021년 농어가기금의 수입·지출액은 682억 4,000만원으로, 당초 계획액 684억 2,600만원 대비 1억 8,600만원 감액되었으며, 법정부담금 및 일반회계전입금 341억 1,200만원, 저축장려금 682억 3,300만원이 집행되었다.

[2021회계연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수입·지출 결산 총괄 현황]

(단위: 백만원, %)

수 입					지 출				
구 분	계 획		결산(B)	집행률(B/A)	구 분	계 획		결산(B)	집행률(B/A)
	당초	수정(A)				당초	수정(A)		
총 계	68,426	68,240	68,240	100.0	총 계	68,426	68,240	68,240	100.0
자체수입소계	34,138	34,124	34,124	100.0	저축장려	67,079	68,233	68,233	100.0
기타재산수입 (54-545)	26	12	12	100.0	저축장려금 (1631-301)	67,079	68,233	68,233	100.0
법정부담금 (59-593)	34,112	34,112	34,112	100.0	-	-	-	-	-
차입금 및 여유자금회수 소계	176	4	4	100.0	기금운영비	1	-	-	-
한국은행 예치금회수 (85-851)	6	4	4	100.0	기금관리비 (3276-201)	1	-	-	-
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 (85-852)	170	-	-	-	-	-	-	-	-
정부내부수입 소계	34,112	34,112	34,112	100.0	여유자금운용	1,346	7	7	100.0
일반회계전입금 (91-911)	34,112	34,112	34,112	100.0	한국은행예치 (9701-970)	6	7	7	100.0
					통화금융기관 예치 (9701-971)	1,340	-	-	-

자료: 금융위원회

- ③ 정부는 매년 저축장려금으로 필요한 금액의 2분의 1 이상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하며, 기금의 운용 결과 생긴 결손금(缺損金)은 다음 해에 전액 보전(補填)하여야 한다.
- ④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12조에 따른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 법에 따른 저축장려금의 지급이 종료되는 회계연도까지 매년 제9조에 따른 기금의 조달 및 운용계획에 따라 필요한 금액을 그 잉여금 및 적립금에서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한편, 최근 가입자수가 감소하는 등 운영실적이 저하되고 있고, 기금방식의 사업 운영의 타당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 왔다. 2013년 기금존치평가에서 연간 저축한도와 저축장려금리의 적정성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조건부 존치 의견을 받은 후, 2019년 및 2022년 기금존치평가에서는 저소득 농어민 생활의 안정이라는 궁극적인 목적달성에는 어려운 면이 있으며 더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안들을 찾을 수 있으므로 현 가입자의 저축 만기와 함께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평가하여 폐지(일몰)를 권고하였다.<sup>2)</sup>

국회 역시 2017·2019회계연도 결산 심사 결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였으며, 2020회계연도에는 관계부처 간 협의 등을 통해 소관부처 조정 등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021회계연도 결산 제출 전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2018년부터 2021년 11월까지 농어가기금 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소관부처 이관, 가입기준 변경, 일반회계사업으로의 전환 등 제도개편 사항들을 논의하였으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기금운용주체 변경 등 지원 대상·조건 변경에 모두 반대하는 입장이며, 2022년 하반기에 다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대상 기금존치평가 결과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2013 기금존치평가보고서	조건부존치 의견 - 오래전부터 사용되어온 연간저축한도와 저축장려금리의 적정성에 대한 재평가가 실시 등 필요
2019 기금존치평가보고서	현가입자의 만기를 고려한 일몰 후 폐지 권고 - 농어가 저소득자의 저축장려, 재산형성 및 소득확대를 위한 최초 기금설치의 목적에 비추어, 경제·금융환경 변화로 운영의 실효성이 낮고, 가입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 가입자의 저축만기를 고려하여 폐지(일몰)를 권고
2022 기금존치평가보고서	현가입자의 만기를 고려한 일몰 후 폐지 권고 - 본 기금은 저소득 농어민의 재산형성 및 생활안정이라는 목적달성에 적합한 방식이라고 보기 어렵고 동 기금이 추구하는 목표를 더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대안들을 찾을 수 있으므로 현 가입자의 저축만기 시점에 맞추어 폐지할 것을 권고. 특수한 정책적 고려에 의해 본 사업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일반회계로 운영되는 것이 더 나은 방식이므로 기금은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

자료: 해당연도 기금존치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대상 국회의 시정요구사항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2017회계연도 결산	금융위원회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농어민 재산형성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을 저소득 농어민으로 한정하는 방안, 정성적 성과지표를 추가하는 방안 등 다각적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2018회계연도 결산	금융위원회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위규가입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관리를 보다 강화할 것
2019회계연도 결산	금융위원회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간의 이견을 조정하여 제도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위규가입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보다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2020회계연도 결산	금융위원회는 관계 부처 간 협의 등을 통해 소관부처 조정 등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2021회계연도 결산 제출 전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할 것

자료: 각 연도별 「결산심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 나. 분석의견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수입 중 자체재원의 비중, 단년도 사업추진방식 및 기금방식 사업구조의 필요성 등을 검토할 때 기금 존치의 필요성이 낮다고 보이므로,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제도 개선 검토 시 타 자산형성사업과 같이 일반회계 내 사업으로 수행하여 재정구조를 단순화하는 것을 우선 검토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한정하여 설치되는 것으로, 3) 일반적으로 기금의 자체재원이 목적사업과 연계되고 안정적으로 조달되며 사업추진의 신축성이 필요한 경우 등 일반회계와 달리 운용되는 것이 효과적인 경우 해당 기금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일반회계·특별회계 사업 등과 유사하거나 중복된 경우 등에 대해서는 기금 존치의 타당성이 저하된다고 할 수 있다. 4)

### 3) 「국가재정법」

제5조(기금의 설치) ①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이에 근거하여 다음의 사항을 살펴볼 때,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이 기금사업으로 유지될 필요성은 낮다고 보여진다.

**첫째, 자체재원인 한국은행 출연금이 기금 수입에 차지하는 비중은 50%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 출연금이 잉여금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국가재정에서 기금 재원을 대부분 조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자체재원의 안정적 조달 조건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농어가기금의 수입 구성을 보면 99.9% 이상 한국은행 출연금과 일반회계전입금이 차지하고 있으며, 2021년에도 한국은행 출연금과 일반회계전입금 수입 비중이 각각 49.99%에 이른다. 기금 재원구조가 단순하고 대부분이 안정적으로 마련될 수 있는 한국은행 출연금과 일반회계전입금이므로 수입구조가 안정적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이는 정부가 매년 일반회계 재원으로 약 50% 부담하는 것인바 일반회계전입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의 수입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수입결산 계(A)	법정출연금		일반회계 전입금		기타	
		(B)	(B/A)	(C)	(C/A)	(D)	(D/A)
2017	83,099	41,542	49.99	41,542	49.99	15	0.02
2018	82,961	41,467	49.98	41,467	49.98	27	0.03
2019	70,815	35,395	49.98	35,395	49.98	25	0.04
2020	67,761	33,872	49.99	33,872	49.99	17	0.03
2021	68,240	34,112	49.99	34,112	49.99	16	0.02

자료: 금융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4) 「국가재정법」

제15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통합·폐지) 특별회계 및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과 통합할 수 있다.

1. 설치목적을 달성한 경우
2. 설치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상호 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4. 그 밖에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한, 농어가기금의 자체재원인 한국은행 출연금은 「한국은행법」에 근거한 임의적립금에 기반하는 것으로, 한국은행은 결산상 순이익금의 30%를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 순이익금 중 기금 출연 목적으로 임의적립금을 적립하며 잉여금은 정부에 세입으로 납부한다.<sup>5)</sup> 이에 따라 2021회계연도 당기순이익 7조 8,638억원 중 2조 3,592억원은 법정적립금으로, 266억원은 농어가기금 출연 목적의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한 후 나머지 5조 4,781억원은 정부에 세입으로 납부하였다. 이러한 처분 구조를 볼 때 농어가기금 출연 목적으로 임의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았다면 정부 세입에 계상되었을 것인바, 실질적으로 농어가기금 재원은 국가 재정에서 대부분 조달하고 있다고 보인다.

**둘째, 농어가기금 수입으로는 당해연도 저축장려금 지급에 대부분을 집행하고 있으며 여유자금은 수입과 지출의 일시적 불일치로 발생하는 것에 불과하여 현금성 자산을 단기적으로 위탁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바, 중장기의 신축적 기금운용이 이루어지지 않아 기금운용의 필요성이 적다고 보여진다.**

2021년 농어가기금의 월별 수입 및 지출 현황을 보면, 한국은행 출연금과 일반회계 전출금 등 수입과 저축장려금 지출의 불일치로 인해 이월되는 금액을 일시적으로 예치하고 위탁운용하고 있을 뿐 여유자금의 신축적 운용은 어려운 상황이며, 2021년말 잔액인 7백만원만 차년도로 이월되었다. 즉, 농어가기금은 중장기 여유자금 운용 없이 사실상 해당연도 수입을 그 해 대부분 지출하는 등 단년도 사업집행 방식과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어, 중·장기간 신축적 운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2022년 기금운용평가에서도 농어가기금은 금융성기금으로 분류되나 계정성 기금 내지 예산사업에 유사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5) 「한국은행법」

제99조(이익금 처분) ① 한국은행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을 자산의 감가상각에 충당한 후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결산상 순이익금의 100분의 30을 매년 적립하여야 한다.  
 ② 한국은행은 결산상 순이익금을 제1항에 따라 적립한 후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 이를 특정한 목적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③ 한국은행은 결산상 순이익금을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처분한 후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정부에 세입(歲入)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2021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의 월별 조달 및 운용실적]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수입 <sup>1)</sup>	10000	8,188	9,184	10619	6342	5,616	6036	5,673	7,434	10381	6,788	2,962
한은	-	-	8,000	9,000	-	5,000	-	5,000	-	7,112	-	-
일반회계	10000	7,000	-	-	5,000	-	5,000	-	7,112	-	-	-
여유자금 운용수익 등		1	1	1	1	-	-	-	-	2	5	6 <sup>2)</sup>
지출	10000	8,188	7,566	10619	6342	5,616	6036	5,673	7,434	10381	6,788	2,962
장려금	8,813	7,004	7,566	9,278	5,725	4,581	5,363	5,352	4,166	3,598	3,832	2,954
여유자금운 용 <sup>3)</sup>	-	-	-	-	-	-	-	-	-	-	-	-
차월이월 (한은예치금 +유통은행잔액)	1,187	1,184	1,618	1,341	616	1,035	673	321	3,267	6,783	2,956	7

주: 1) 당월 수입 = 전년도 차월이월액 + 한국은행출연금 + 일반회계전입금 + 여유자금 운용수익 등

2) 2021년 12월 여유자금 운용수익은 2백만원이었으나, 전년도 여유자금 회수분 4백만원이 추가

3) 여유자금운용은 한국은행 예치금 및 통화금융기관예치금으로, 여유자금 운용(9700)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사항을 말함

자료: 금융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마지막으로, 농어가기금 내 지출사업은 저축장려금 사업 1개에 불과하며, 특정 대상에게 이자를 지원하는 1개의 사업을 위해 기금을 운용할 실익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농어가기금의 지출 사업은 여유자금운용을 제외하면 저축장려금과 기금운영비 사업이 있는데, 기금운영비 사업은 연 100만원이 편성되어 불용되는바 사실상 저축장려금 사업 1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자산형성을 위해 특정 대상에게 이자를 지원하는 유사 사업을 살펴보면 대부분 일반회계 내 세부사업 1개로 추진되고 있다.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및 병내일준비지원의 경우 농어가기금 규모보다 더 큰 사업이고, 청년희망적금의 경우도 예산규모가 농어가기금 일반회계출연금(2021년 341억 1,200만원, 2022년 266억 1,500만원)보다 크다. 또한, 병내일준비지원 사업의 경우 지급방식도 이자지원금 지급 또는 추가금리 지급으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비해 장려금 지급방식이 복잡하다.

즉,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유사 사업과 예산규모 및 장려금 지급방식 등을 비교할 때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이 기금으로 별도 운용될 실익은 크지 않다고 보인다.

[주요 자산형성 재정사업 현황(2022년 기준)]

구 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병내일 준비지원	청년내일 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회계명	일반회계	일반회계	일반회계	일반회계
2022년도 예산규모	283,984백만원	219,009백만원	28,929백만원	47,550백만원
지원대상	- 기업: 중소· 중견기업 - 청년: 중소· 중견기업에 6 개월 이상 재 직 중인 청년 근로자 (15~34세)	병역의무 이행자	- 만 19~34세 (단, 수급자· 차상위자는 만 15~39세) - 개인소득: 연 소득 2,400만 원 이하 - 가구소득: 기 준 중위소득 100% 이하 요건 충족 필요	만 19~34세, 연소득 3,600 만원 이하 청년
지원혜택	- 청년: 5년 동 안 720만원 이상 적립(최 소 월 12만원 ×60개월) - 기업: 5년 동 안 1,200만원 이상 적립(최 소 월 20만원 ×60개월)	- 1% 이자지원 금 - 3:1 매칭지원 금 병역의무이행 자 개인납입액 최대 750만 원, 정부지원 최대 250만원	저축액(월 10만원)/ 정부가 1~3배 매칭 (수급자·차상위 자는 1:3 매칭)	저축장려금 최대 4% (1년 2%~2년 4%)
납입한도	- 정부: 최대 1,080만원(정 액) 적립(3년 간 7회 분할 적립)		연 120만원 (3년 만기)	연 600만원 (2년 만기)
만기수령금	5년 만기 시 청 년근로자에게 3,000만원 지급	1,000만원을 전역시 일시금 으로 지급	(3년 후) 720~1,440만원	(2년 후) 1,200 만원+ 적금금리 +저축장려금 36만원

자료: 「2022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 및 각 부처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즉, 농어가기금은 사업목적과 자체재원 간 연계성 및 자체재원의 비중, 단년도 사업추진방식 및 기금방식 사업구조의 필요성 등을 검토할 때 기금 존치의 필요성이 낮다고 보이므로,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제도 개선 검토시 타 자산형성사업과 같이 일반회계 내 사업으로 수행하여 재정구조를 단순화하는 것을 우선 검토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 III

## 개별 사업 분석

### 1

### 핀테크 지원 보조사업 편성 및 집행상 문제

핀테크 지원 사업<sup>1)</sup>은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 개발·사업화 등 지원, 핀테크 관련 국제협력 강화, 국민참여 핀테크 체험행사 개최 등을 통해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하고 핀테크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회계연도 예산액 183억 5,600만원 중 166억 4,200만원을 집행하고 4,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6억 7,0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1회계연도 핀테크 지원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핀테크 지원	18,356	18,356	-	-	18,356	16,642	44	1,670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핀테크 지원 사업은 금융테스트베드 운영 및 참여지원, 맞춤형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9개의 내역사업<sup>2)</sup>으로 구성되며 이 중 8개의 내역사업에 「금융혁신지원 특별법」<sup>3)</sup>에 근거하여 핀테크 지원 관련 민간보조사업이 편성되어 있다. 동 사업의 보조사업자는 모두 사단법인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이하 '센터')로, 2021년도 보조금 179억 7,200만원이 편성되었고 실제 163억 7,0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해외진출 조사연구 연구개발비 9,000만원이 이월되었다.

김윤성 예산분석관(kimys1001@assembly.go.kr, 6788-4623)

1) 코드: 일반회계 1134-301

2) 「2021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다양한 내역사업을 가져가기보다는 본래 사업목표에 부합되고 효과성이 있는 사업 중심으로 통폐합할 것을 제언함에 따라 2022년도 예산안에는 5개의 내역사업으로 정리되었다.

3)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6조(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혁신금융서비스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의 운영·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2021년 핀테크 지원사업 내 보조사업 예산편성 및 실적행 내역]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명	세부내역사업	당초 예산	변경 예산 <sup>1)</sup> (A)	실집행 (B)	이월	잔액	B/A
금융 테스트베드 운영 및 참여지원	테스트베드 참여지원	6,915	6,915	5,971	-	944	86.3
	제도홍보비	440	440	427	-	13	97.0
	운영비	268	268	268	-	0	100.0
소 계		7,623	7,623	6,666	-	957	87.4
맞춤형 성장지원 프로그램	사무공간 제공	723	723	719	-	4	99.4
	성장지원 프로그램	910	910	908	-	2	99.8
	운영비	160	160	156	-	4	97.5
소 계		1,793	1,793	1,783	-	10	99.4
국민참여 핀테크 행사	핀테크 체험 박람회	1,642	914	913	-	1	99.9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	101	229	229	-	0	100.0
	소 계	1,743	1,143	1,142	-	1	99.9
핀테크 보안지원	핀테크 보안지원	600	600	560	-	40	93.3
	보안지원 홍보 및 운영비	103	103	91	-	12	88.3
	소 계	703	703	651	-	52	92.6
핀테크 해외진출 지원	핀테크 해외진출 컨설팅	820	820	817	-	3	99.6
	해외진출 조사연구	150	750	351	90	309	46.8
	소 계	970	1,570	1,168	90	312	74.4
핀테크 일자리 매칭지원	핀테크 포털 및 매칭 시스템 개선·운영	60	60	60	-	0	100.0
	핀테크 일자리 매칭존 운영	200	200	199	-	1	99.5
	소 계	260	260	259	-	1	99.6
금융 클라우드 지원	클라우드 사용료 지원	3,300	3,300	3,174	-	126	96.2
	운영비	140	140	107	-	33	76.4
	소 계	3,440	3,440	3,281	-	159	95.4
핀테크 전문인력 양성	핀테크 특화 교육과정 운영	1,140	1,140	1,136	-	4	99.6
	핀테크 인턴십 과정	300	300	284	-	16	94.7
	소 계	1,440	1,440	1,420	-	20	98.6
합 계		17,972	17,972	16,370	90	1,512	91.1

주: 1) 보조금 변경승인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한국핀테크지원센터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1-1. 핀테크 해외진출 지원 관련 연구개발비 편성 및 집행 지양 필요 등

### 가. 현 황

핀테크 지원사업의 내역사업인 핀테크 해외진출 지원 사업은 핀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컨설팅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고 센터 내 통·번역존을 운영하며, 핀테크 산업동향 및 외국 규제·경쟁상황 등 해외시장 조사, 핀테크 관련 해외 주요 자료 번역 등 해외진출을 위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센터에 민간경상보조금을 지급한다. 2021년에는 15억 7,000만원이 편성되어 12억 7,200만원이 교부되었으며 2억 9,600만원이 불용되었다. 실집행을 기준으로 보면 교부액 12억 7,200만원 중 11억 6,8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9,000만원이 이월되고 1,400만원이 불용되었다.

[2021회계연도 핀테크 해외진출 지원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핀테크 지원	18,356	18,356	-	-	18,356	16,642	44	1,670
핀테크 해외진출 지원	970 <sup>1)</sup>	970 <sup>1)</sup>	-	-	1,570	1,272	-	296

주: 1) 보조금 변경승인 전 기준

1.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2021회계연도 핀테크 해외진출 지원 사업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시행주체 (기관명)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 행률 (B/A)
	본예산	최종(A)								
한국핀테크 지원센터	970 <sup>1)</sup>	1,570	1,272	1,272	-	1,272	1,168	90	14	74.4

주: 1) 보조금 변경승인 전 기준

1.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핀테크 해외진출 지원사업의 보조사업 예산은 당초 민간경상보조금 9억 7,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2021년 10월 보조금 경비 배분을 변경하여 연구개발비를 6억원 증액함에 따라 최종 예산은 15억 7,000만원으로 확정되었다. 실적행액 기준 연구개발비는 총 7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3억 5,1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9,9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1회계연도 핀테크 해외진출 지원 보조사업의 비목별 실적행내역]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	예산과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sup>1)</sup> (A)	사용 현황		예산잔액
	목	세목			사용액 (B)	B/A	
핀테크 해외진출 지원	운영비	일반수용비	28	28	28	100.0	-
		일반용역비	790	790	787	99.6	3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2	2	2	100.0	-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150	750	351 <sup>2)</sup>	46.8	399
	계		970	1,570	1,168	74.4	402

주: 1) 예산은 보조금 사용용도 변경승인 기준

2) 연구개발비 중 9,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자료: 금융위원회

## 나. 분석의견

핀테크 해외진출 지원 사업의 연구개발비 편성 및 연구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센터가 핀테크 해외진출 지원 사업 보조금으로 정책·제도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한 것은 민간보조사업의 추진 목적에 맞지 않으므로, 금융위원회는 정책·제도 관련 연구용역을 직접 수행하는 한편 보조사업자를 철저히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

센터가 2021년 핀테크 해외진출 지원 관련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실시한 연구용

역은 핀테크 기업 해외진출 현황 및 전략분석, 해외 주요국 핀테크 지원체계 현황 및 시사점, 디지털 혁신금융을 위한 발전전략 등 4건이다.

[2021년도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핀테크 해외진출 지원 관련 연구용역]

(단위: 백만원)

연번	연구용역명	수행자	계약시기	계약방식	계약액
1	핀테크 기업 해외진출 현황 및 전략분석	○○대학교 ○○산학협력단	2021. 5.~11.	경쟁	50
2	해외 주요국 핀테크 지원체계 현황 및 시사점	○○경제 연구원(주) 사단법인	2021. 5~9.	경쟁	50
3	해외 혁신적 금융서비스 사례 및 시사점	○○○○ 연구원	2021. 7.~12.	경쟁	41
4	디지털 혁신금융을 위한 발전전략	○○대학교 산학협력단	2021. 11.~	경쟁	300
계					441

자료: 금융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대해 센터는 동 보조금으로 현지 사업환경 조사 및 분야별 전략진출지역 발굴을 위한 연구를 수행해왔으며, 설문조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바탕으로 기업들의 요청에 따라 조사연구 주제를 발굴하였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간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국가 정책상 장려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핀테크 산업 육성 및 제도·정책 개선 등과 관련된 연구용역은 금융위원회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디지털 혁신금융을 위한 발전 전략” 연구용역의 경우 디지털금융 관련 규제방향 검토, 디지털 혁신금융 인프라 조성방안, 관련 산업 육성 및 규제개선 방향 검토 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여러 법제의 개정 및 정책 보완을 위한 연구인바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혁신금융을 위한 발전전략 연구용역 주요 연구범위(안)]

- 디지털 금융 다양한 이슈에 대해 폭넓고 종합적인 차원의 규제방향 검토
  - 미국, 영국, EU 등 해외 각국의 디지털 금융 관련 입법동향 및 정책 시사점 도출
- 데이터를 통한 디지털 혁신금융 전략 마련
  - 개인정보, 가명정보 등 데이터를 결합하고 유통할 수 있는 여건 활성화
  - 지속가능한 디지털 혁신금융을 위한 정보보호 인프라 조성
- 다양한 신기술 활성화 방안 연구
  - 다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증신원확인 기술 도입 방안
  - 新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금융서비스 이용환경 조사
  - 금융권에서의 AI 활성화 인프라 조성 방안
- 금융플랫폼 발전 전략 도출
  - 금융회사의 금융플랫폼 사업 진출을 지원하는 동시에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여 금융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안 연구
  - 금융플랫폼 특성을 감안한 소비자 보호와 금융안정 도모 방안
    - \* ① 금융보안 원칙 명확화, 보안의무 강화 등 금융플랫폼 보안 강화
    - ② 빅테크 시장지배력에 대한 관리·감독등 빅테크 플랫폼 리스크에 대한 규율체계
  - 플랫폼을 통한 디지털 금융서비스 활성화 방안
- 디지털 금융안정 방안 마련
  - 금융회사등의 보안역량 지원 및 금융보안 규제 개선 방안
  - 데이터 독점, 데이터 신뢰성 등 지속가능한 데이터 기반 구축
- 디지털 금융에서의 신기술 활용 방안 검토
  - 기존법 체계의 한계와 제약요인을 살피고 금융부문에서의 신기술 활용 방안
  - 신기술이 이질적인 금융부문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금융법 체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
  - CBDC 도입 추세에 맞추어 제도, 인프라 구축 방안
  - 금융법 관점뿐 아니라 여타 일반법적 쟁점에 대한 폭넓은 검토도 병행

자료: 한국핀테크지원센터, “디지털 혁신금융을 위한 발전전략” 연구용역 과업지시 및 제안요청서 (2021. 10.)

또한 금융위원회 일반회계 세부사업인 정책연구개발 사업<sup>4)</sup>으로 이미 디지털 금융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고, 핀테크 지원 사업 내 내역사업인 국제협력 강화·국제동향 연구 사업에 정책연구비가 편성되어 금융위원회 일반회계 예산으로 국제동향 및 해외진출 관련 연구용역을 직접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조금을 통해 연구용역을 수행할 필요성은 낮다고 보여진다.<sup>5)</sup>

[2020~2021년 금융위원회 수행 연구용역 중 핀테크 관련 연구용역]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내역사업)	연도	연구용역명	계약방식	계약액
정책연구개발	2020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한 금융플랫폼 영업규율 연구 및 제도개선 방안	수의	20
	2020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한 금융플랫폼 보안 강화 및 제도개선 방안	수의	20
	2021	디지털 샌드박스(가칭)제도 국내 도입 검토	경쟁→ 수의	34
핀테크 지원 사업 (국제협력 강화· 국제동향 연구)	2020	2020년 한국 핀테크 동향보고서	경쟁→ 수의	22
	2020	오픈뱅킹 지속성 및 확장성 확보를 위한 고도화 방안 연구	경쟁→ 수의	47
	2021	(가칭)핀테크육성지원법 입법방향 검토 및 제정안 마련	경쟁→ 수의	36
	2021	주요국의 선불지급수단 규율체계 사례 연구	경쟁	44

자료: 금융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향후 금융위원회는 민간보조사업 추진 목적에 맞게 핀테크 해외진출 지원 관련 정책·제도 관련 연구용역은 금융위원회가 직접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보조사업자의 연구용역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4) 코드: 일반회계 7135-302

5) 이에 대해 센터는 코로나 상황이 완화될 시 동 보조금으로 해외 주요 거점지역 현장 실사를 통한 심도있는 연구용역을 진행하고자 했으나 코로나19 확산세로 연구과제를 축소·조정하여 추진하였다는 입장이다.

둘째, 센터는 2021년 10월에 보조금 경비 배분 변경을 승인받아 핀테크 해외진출 지원 사업의 연구개발비를 6억원 증액하고 2021년 11월 “디지털 혁신금융을 위한 발전 전략” 연구용역에 착수하였는데, 이는 보조금 배분을 변경하여 시급하지 않은 연구용역을 실시한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이와 같은 보조금 집행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2021년도 예산 편성 및 민간보조사업 계획 당시에는 해외 최신 핀테크 산업동향 및 혁신서비스 등에 대한 조사연구를 위해 연구개발비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다. 그러나 센터는 2021년 10월 ‘국민참여 핀테크 체험 행사’ 내역사업의 박람회 개최 관련 보조금 16억 4,200만원 중 6억원을 핀테크 해외진출 지원 관련 연구개발비로 변경 승인받아 2021년 11월 “디지털 혁신금융을 위한 발전 전략” 연구용역에 착수하였으며 계약액 3억원 중 2억 1,000만원을 선지급하였고 9,000만원은 이월하였다.

[2021년 핀테크 지원 사업 관련 보조사업 내용 변경 내역]

변경시기	종류	내용
2021.10.	예산액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예산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테스트베드 비용 지원’(당초 5,565백만원)에 대한 예산 중 민간경상보조 일부(1,000백만원)를 일반용역비(955백만원) 및 일반수용비(45백만원)으로 변경하여 D-테스트베드 운영에 활용</li> <li>- ‘박람회’(당초 1,642백만원)에 대한 예산 중 일부(728백만원)를 아이디어 공모전(128백만원) 및 <u>핀테크 해외진출 지원(600백만원)</u>으로 변경하여 공모전 상금 증액 및 후속 지원과 해외진출 연구용역 추가 수행에 활용</li> </ul> </li> </ul>
2021.12.	사업 기간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진출 연구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사업기간 연장(12월말→차년도 5월말)</li> </ul>

자료: 금융위원회

센터는 2021년 4분기에 보조금 예산액을 변경하고 동 연구용역을 실시한 것에 관하여 글로벌 디지털 전환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국내 금융산업의 혁신 발전전략과 실천과제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여 보조금 배분 변경을 요청, 승인받아 수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연구용역 수행기간 및 보조사업 종료시기도 2021년말에서 2022년 5월

말로 연장되었고 2022년 6월말 기준 여전히 수행중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동 연구용역을 시급히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향후 센터는 2021년 4분기에 연구개발비 6억원을 변경하여 시급하지 않은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것과 같은 같은 보조금 집행은 지양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 1-2. 금융 테스트베드 운영 및 참여 지원 보조사업 집행시 주의 필요 등

### 가. 현 황

핀테크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금융 테스트베드 운영 및 참여 지원’ 사업은 핀테크 기업이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도록 혁신금융사업자 등에게 테스트 비용 지원, 책임보험료 지원,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1회계연도에는 78억 700만원이 편성되어 67억 6,600만원을 집행하고 10억 4,1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1회계연도 금융 테스트베드 운영 및 참여 지원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핀테크 지원	18,356	18,356	-	-	18,356	16,642	44	1,670
금융 테스트베드 운영 및 참여 지원	7,807	7,807	-	-	7,807	6,766	-	1,041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동 내역사업 예산 78억 700만원 중 민간경상보조금은 76억 2,300만원으로, 이 중 66억 6,600만원을 보조사업자인 한국핀테크지원센터에 교부하여 전액 집행하였다.

[2021회계연도 금융 테스트베드 운영 및 참여 지원 보조사업 실적행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시행주체 (기관명)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 률 (B/A)
	본예산	추경(A)								
한국핀테크지원 센터	7,623	7,623	6,666	6,666	-	6,666	6,666	-	-	87.4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센터는 금융 테스트베드 운영 및 참여 지원 보조사업자로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업, 지정대리인 지정 기업, 위탁테스트 선정 기업에 대한 테스트비용 지원, 책임보험료 지원, 테스트베드 홍보, 샌드박스 컨설팅 등 핀테크 관련 상담, D-테스트베드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센터의 금융 테스트베드 운영 및 참여 지원 사업수행 관련 보조금 교부·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세부내용	당초 교부액	변경 교부액	집행액
테스트비용 지원	◦ 테스트베드를 통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시험할 수 있도록 인건비 등 직·간접비를 1.2억원 한도 내 최대 75% 지원	5,450	4,515	4,468
책임보험료 지원	◦ 테스트베드 참여기업의 안정적 테스트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가입한 책임보험료를 1천만원 한도 내 최대 50% 지원	115	50	48
테스트베드 홍보	◦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보편적 인식 제고와 금융혁신 지속 및 가속화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 실행	440	440	427
샌드박스 컨설팅 등 핀테크 관련 상담	◦ 핀테크 기업이 테스트베드 신청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신청서 작성, 법률상담 등 컨설팅 진행	150	150	138
D-테스트베드	◦ 금융 데이터를 기반으로 핀테크 관련 초기 아이디어를 테스트하고 그 혁신성과 효과성을 시험	1,200	2,200	1,317
테스트베드 참여 지원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대리인, 위탁테스트 등 금융 테스트베드 참여 유도 및 절차 지원 등	268	268	268 (운영비)
계	-	7,623	7,623	6,666

자료: 「2021년 핀테크 지원 사업 국고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나. 분석의견

첫째, D-테스트베드 사업은 사업목적·지원대상·지원방식 등에서 금융 테스트베드 운영 및 참여 지원 사업과 상이한 신규사업임에도 국회의 사전 심의를 받지 않고 신규 보조사업을 실시한 것은 적정하지 않은 예산운용 방향이므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D-테스트베드는 핀테크 스타트업, 예비창업자 등이 금융권 데이터를 활용해 혁신적인 기술·아이디어의 사업성, 실현가능성 등을 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 환경을 의미한다. D-테스트베드 사업은 초기 단계의 핀테크 아이디어 검증 및 고도화를 위한 테스트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부와 공공·민간부문이 협업하여 활용가능한 대규모 데이터를 집적하고 이를 민간부문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D-테스트베드 사업은 2021년 시범 운영되었는데, 2021년 7월말부터 신청을 받아 3개 분야(신용평가고도화, 취약계층 금융지원, 자유주제) 20개팀 참여자를 선정하고 11주간 아이디어 검증을 수행한 후 우수사례로 선정된 6팀에 대해 총 6,000만원(최우수상 1,500만원, 우수상 5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되었다. D-테스트베드 사업 집행액은 내역사업인 ‘금융 테스트베드 운영 및 참여 지원’ 민간경상보조금 중 13억 1,700만원이었다.

[2021년 D-테스트베드 사업 보조금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교부액		집행액(B)	집행률(B/A)
		당초	변경(A)		
금융 테스트베드 운영 및 참여지원	7,623	7,623	7,623	6,666	87.4
D-테스트베드	-	1,200	2,200	1,317	59.8

자료: 금융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D-테스트베드 사업은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심사 당시에는 계획되지 않았으며, 2021년 초 금융위원회 업무계획<sup>6)</sup> 및 보조사업 계획에 포함되어 보조사업 예산 중 22억원(변경승인)이 계상되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및 센터는 D-테스트베드 사업은 각종 데이터 제공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실제 금융관련 데이터를 바탕으로 테스트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금융 테스트베드 운영 및 참여 지원 사업에 포함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금융 테스트베드 운영 및 참여 지원 사업은 혁신기업의 테스트베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상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 지정대리인 지정기업 등을 대상으로 테스트비용과 책임보험료를 지원하고 테스트베드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하는 반면, D-테스트베드 사업은 아이디어의 혁신성·사업성 테스트를 지원하기 위해 테스트가 필요한 누구든지 동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시 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평가하여 수상자를 선정하는 등 사업목적과 지원대상 및 지원방식이 상이하다. 오히려 D-테스트베드 사업은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수상자를 선정한다는 점에서 다른 내역사업인 ‘국민참여 핀테크 체험 행사’의 보조사업 중 하나인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sup>7)</sup>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6)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中(2021. 1. 12.)

2. 금융산업 혁신 및 디지털금융 확산

나. 핀테크 육성 가속화

㉔ 혁신적 아이디어만으로 사업성을 시험해볼 수 있는 “場”으로서 「디지털 샌드박스」 시범 운영

7)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은 핀테크 아이디어가 있는 누구든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일반 부문(핀테크 관련 모든 아이디어) 및 테마 부문(AI·블록체인·클라우드·사회적이슈 등 신기술 활용 관련 아이디어)에서 부문별 8개팀 내외의 수상작을 선정하고 상금 및 후속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금융 테스트베드 운영 및 참여지원 사업과 D-테스트베드 사업 비교]

구 분	금융 테스트베드 운영 및 참여지원	D-테스트베드
시행시기	2019년~	2021년(시범), 2022년~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핀테크 산업의 스케일업을 위해 혁신 기업의 테스트베드 참여 유도</li> <li>- 참여기업에 테스트비용·컨설팅 등을 제공하여 성공적인 제도 안착 및 서비스 출시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금융데이터를 바탕으로 초기 핀테크 아이디어의 혁신성, 사업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증</li> </ul>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 지정대리인 지정기업, 위탁테스트 참여기업 중 테스트비용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핀테크 기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기 핀테크 아이디어를 시험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개인(팀 포함)</li> </ul>
지원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테스트비용 중 최대 75% 지원 (1.2억원 한도)</li> <li>- 테스트베드 참여기업 책임보험료 지원</li> <li>- 테스트베드 신청기업 컨설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기업(개인·팀)에 금융유관기관 데이터, 민간 금융 데이터, 금융 공공 데이터 등 다양한 데이터 지원</li> <li>- 테스트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입상자에게 상금 지급</li> </ul>

자료: 핀테크 포털(www.fintech.or.kr) 및 D-테스트베드 포털(dtest.fintech.or.kr) 내용을 바탕으로 재작성

즉, D-테스트베드 사업은 금융 테스트베드 운영 및 참여지원 사업과는 다른 신규 사업인바, 국회의 사전 심의를 받지 않고 신규사업을 실시한 것은 적절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 권한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전에 명확하게 별도 사업으로 편성하여 국회의 심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한 예산운용 방향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금융위원회와 센터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금융 테스트베드 운영 및 참여 지원 보조사업의 경우 지속적으로 실행행률이 저조하므로, 금융위원회는 수요 부진의 원인을 분석하고 시장 수요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한 후 이를 바탕으로 보조사업의 지원목표 및 예산규모를 산출할 필요가 있다.**

2021회계연도 금융 테스트베드 운영 및 참여 지원 보조사업 예산 76억 2,300만원 중 총 66억 6,6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률은 87.4%이다. 다만, D-테스트

베드 사업이 예산 확정 이후 수행된 사업임을 감안할 때 본래의 금융 테스트베드 운영 및 참여지원 사업에 53억 4,9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률은 70.2%에 불과하다.

[2021년 금융 테스트베드 운영 및 참여지원 사업 예산 및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A)	집행액(B)			집행률	
		D-테스트 베드	D-테스트 베드 외 (C)	B/A	C/A	
금융 테스트베드 운영 및 참여지원	7,623	6,666	1,317	5,349	87.4	70.2

자료: 금융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과거 금융 테스트베드 운영 및 참여지원 사업의 집행률은 2019년 49.6%, 2020년 64.7%로 지속적으로 실적이 부진하였다. 예산집행률 뿐만 아니라 금융 테스트비용 지원 실적 역시 2019년부터 계속 목표 대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21년의 경우 테스트베드 비용 지원 목표달성률은 기업 수 기준 75%, 지원 금액 기준 67.2%에 불과하였다.

[2019~2021년 금융 테스트베드 운영 및 참여지원 사업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 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 · 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 률 (B/A)
	본예산	추경 (A)								
2019	4,832	6,082	6,057	5,918	-	5,918	3,014	-	2,904	49.6
2020	9,657	8,617	5,649	5,560		5,560	5,426	-	134	64.7
2021	7,807	7,807	6,766	6,666	-	6,666	6,666	-	-	87.4

자료: 금융위원회

[2019~2021년 테스트베드 비용 지원 사업목표 및 실적]

(단위: 개사, 백만원,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목표	실적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테스트베드 비용 지원	기업수	50	39 (78)	80	55 (68.8)	60	45 (75)
	지원금액	5,250	2,457 (46.8)	6,960	4,683 (67.3)	6,650	4,468 (67.2)

자료: 금융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대해 국회는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동 사업의 집행행 부진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시정요구하였고, 「2021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에서는 동 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하는 등 실적이 부진하여 보완이 필요하며 예산 집행을 제고를 위해 수요 재산출에 기반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응하고자 금융위원회는 2020년 대비 2021년도 비용지원 예상기업 수를 보수적으로 산출하였으며 비용지원 대상 항목을 회계·세무 관련 비용, 특허·기술비 등 간접비까지 포함하도록 제도개선하였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테스트베드 비용 지원기업 수가 2020년 55개사에서 2021년 45개사로 감소하였으며, 테스트베드 비용 지원한도를 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였음에도 지원금액이 감소하는 등 2021년에도 집행 부진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금융위원회 및 센터는 수요 부진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시장 수요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한 후 이를 바탕으로 지원목표 및 보조사업 예산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산출함으로써 집행률을 제고하고 예산 배분 및 집행의 효율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 가. 현 황

자금세탁방지추진 사업<sup>1)</sup>은 고액현금거래 보고(Currency Transaction Reporting, CTR) 정보제공 사실 당사자 통보,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 활동 등 국제협력 사업 등을 통해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회계연도 예산현액 9억 1,600만원 중 7억 7,400만원이 집행되고 1억 4,200만원이 불용되었다.

[2021회계연도 자금세탁방지추진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자금세탁 방지추진	916	916	-	2 △2	916	774	-	142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고액현금거래보고(CTR)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다른 금융회사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거래를 제외한 금융거래로서 1일 거래일 동안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이나 현금과 비슷한 기능의 지급수단의 입출금에 대해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을 금융정보분석원(Financial Intelligence Unit, FIU)에 자동보고 하도록 한 제도<sup>2)</sup>이다. CTR 정보가 검찰청·국세청·경찰청 등 법집행기관<sup>3)</sup>에 제공된 경우

김윤성 예산분석관(kimys1001@assembly.go.kr, 6788-4623)

1) 코드: 일반회계 1331-303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① 금융회사등은 5천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현금(외국통화는 제외한다)이나 현금과 비슷한 기능의 지급수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현금등”이라 한다)을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領收)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FIU는 10일 이내에 명의인에게 제공한 거래정보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제공일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sup>4)</sup>

한편, 의심거래보고(Suspicious Transaction Reporting, STR)은 금융거래등과 관련하여 수수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또는 자금세탁행위나 테러자금 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금융회사 등이 FIU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로, 이 경우 금융회사 등은 합당한 근거를 밝히도록 하고 있다.<sup>5)</sup>

## 나. 분석의견

**2021년 CTR 정보제공사실 당사자 통보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통보를 위한 등기우편 발송 관련 집행액도 늘었으나 반송률이 높아 통보의 실효성이 낮으므로 전자송달 방식 등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CTR은 1일 거래일 1천만원 이상의 거래인 경우 금융기관 등이 FIU에 보고하

- 
1. 다른 금융회사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과의 현금등의 지급 또는 영수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와의 현금등의 지급 또는 영수
  3.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없는 일상적인 현금등의 지급 또는 영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3) 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세청, 관세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
- 4) 동법 제10조의2(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의 통보)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4조의2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보고한 정보(제1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를 제10조에 따라 검찰총장등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표준양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5) 동법 제4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①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금융거래등과 관련하여 수수(授受)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2.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불법적인 금융거래등을 하는 등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 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종사자가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 ③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할 때에는 그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도록 되어 있으며, 집행기관에 제공하게 되는 경우 10일 이내에 명의인에게 등기우편을 통해 통보하게 된다. 2017년 CTR 당사자 통보건수가 47,372건에서 2020년 36,852건으로 감소하였으나 2021년 48,982건으로 증가함에 따라 2021년 통보비용으로 1억 1,955만원을 집행하였다.

[CTR 금융기관 보고 및 정보제공사실 당사자 통보 및 비용 집행 현황]

(단위: 건, 천원)

연도	CTR				
	금융기관 보고	집행기관 제공	당사자 통보 <sup>1)</sup>	예산액	집행액
2017	9,584,536	40,115	47,372	97,000	95,099
2018	9,538,820	47,670	45,629	97,000	95,774
2019	15,665,386	43,272	43,010	97,000	95,916
2020	20,414,540	34,549	36,852	108,000	92,330
2021	20,551,295	49,059	48,982	117,393	119,553 <sup>2)</sup>
2022. 6월말	9,270,493	50,423	22,579	176,000	58,067

주: 1) 당사자 통보는 당해 연도에 통보한 건수로, 직전 연도에 통보 유예로 이월된 건수가 합산됨

2) 예산 부족분 충당을 위해 입차료(210-07)에서 200만원 조정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CTR 통보 증가는 법집행기관에 STR 정보 제공 시 관련인의 CTR 정보도 같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이며, 특히 2021년 3월부터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도 STR 보고의무를 부과함에 따라 보고량이 증가 추세에 있어 STR 보고 건수 증가에 비례하여 STR정보의 법집행기관 제공건수 및 CTR 정보 제공건수도 증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CTR 및 STR 현황]

(단위: 건, 천원)

연도	CTR			STR	
	금융기관 보고	법집행기관 제공	당사자 통보	금융기관 보고	법집행기관 제공
2017	9,584,536	40,115	47,372	519,908	18,528
2018	9,538,820	47,670	45,629	972,320	24,638
2019	15,665,386	43,272	43,010	926,947	23,647
2020	20,414,540	34,549	36,852	732,536	30,903
2021	20,551,295	49,059	48,982	884,657	34,574

자료: 금융위원회

그러나 2021년 등기 반송률은 2020년 대비 7.23%p 증가한 36.60%로 크게 상승하였는데, 주요 반송 사유는 폐문 부재 73.84%, 수취인 불명 14.44% 등이다.

[CTR 정보의 법집행기관 제공 통보 및 반송 현황]

(단위: 건, %)

연도	당사자 통보	반 송	반송률
2017	47,372	9,849	20.79
2018	45,629	13,396	29.36
2019	43,010	10,764	25.03
2020	36,852	10,825	29.37
2021	48,982	17,928	36.60

자료: 금융위원회

(단위: %)

연도	폐문 부재	수취인 불명	이사 불명	주소 불명	수취인 부재	수취 거절
2019	73.87	14.40	8.02	2.70	0.93	0.03
2020	73.92	14.38	9.05	2.42	0.25	0.06
2021	73.84	14.44	7.62	2.66	1.29	0.12

자료: 금융위원회

즉, 등기우편을 통한 통보에 1억원 이상의 예금이 집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이후 반송률이 20% 이상이며 2019년 이후 반송률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금융위원회는 등기방식 외에 전자송달 등 보다 효과적인 통보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국세청은 세무조사·체납징수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이 금융거래 내역 조회 사실을 계좌 등 소유자에게 통보할 때 등기로 통보하였으나 2021년 8월부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sup>6)</sup> 및 금융위원회 유권해석<sup>7)</sup>을 바탕으로 모바일 등 전자적 통보방식을 추가하여 통보하였다. 또한, 근로·자녀장려금 통보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sup>8)</sup> 개정으로 2022년 8월부터 등기우편에서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결정통지가 가능하다.

6)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의2(전자문서의 서면요건) 전자문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본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
2. 전자문서가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7) 금융위원회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 문서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사실을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전자문서로도 금융거래 정보의 제공사실 통보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금융개혁 현장점검 검토의견을 금융결제원에 회신한 바 있다.

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9(근로장려금의 환급 등) ①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자가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 등에 계좌를 개설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계좌이체방식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근로장려금의 신청자에게 근로장려금의 결정내용 및 그 결정이유, 결정일자 등이 기재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결정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1. 신청자의 신청금액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한 결정금액이 같은 경우
2. 신청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결정통지 전자송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채무자대리인 선임 수요예측의 정확성 제고를 통한 적정예산 편성 필요

### 가. 현황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sup>1)</sup>은 대부업 및 미등록 대부업자의 고금리·불법 추심 등 불법 사금융의 피해자 또는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채무자대리인인 변호사 선임 비용 및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회계연도 예산액 6억 400만원 전액이 집행되었다.

[2021회계연도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채무자 대리인 선임	604	604	-	-	604	604	-	0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대부업 및 미등록대부업자의 불법적인 추심행위에 대해 채무자가 변호사를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채무자 대신 변호사가 추심과정의 일체를 대리<sup>2)</sup>함으로써 채무자의 추심대응에 관한 방어권을 보장하여 가혹한 채

김윤성 예산분석관(kimys1001@assembly.go.kr, 6788-4623)

1) 코드: 일반회계 1833-3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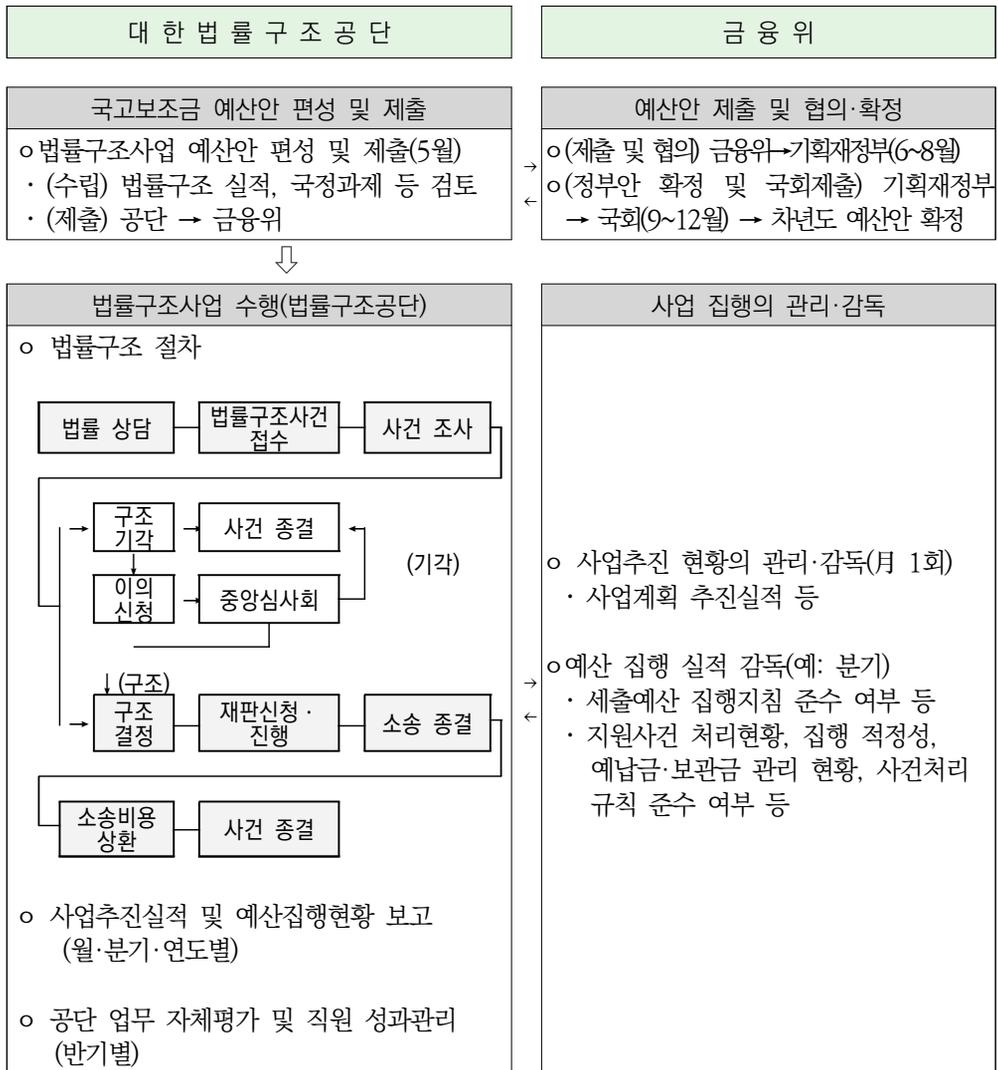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채무자와 대리인이 동의한 경우 또는 채권추심자가 대리인에게 연락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신금융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추심회사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자산관리자
4. 제2조제1호가목에 규정된 자를 제외한 일반 금전대여 채권자

무 독촉으로부터 채무자의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금융위원회는 채무자대리인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보조사업자로 하여 법률상담 및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에 대한 민간경상보조금을 편성·지급하고 있다.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 집행방식]



자료: 금융위원회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들을 위하여 고용되거나 같은 자들의 위임을 받아 채권추심을 하는 자(다만, 채권추심을 하는 자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 나. 분석의견

채무자대리인 선임 실적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증가하여 2021년 하반기 보조금이 보조사업자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지급되지 못하게 되자 지급방식을 변경하여 2022년도 예산으로 미지급금을 지급하였는데, 신청사건 수 및 수임사건 종결기간의 명확한 예측이 어렵다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단년도 예산편성이라는 예산원칙에 반하므로 향후 연간 수요 예측의 정확도를 제고하여 동 사업 예산규모를 적정하게 편성함으로써 미지급금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원회는 2021년도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예산 중 맞춤형 법률상담 및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1,575건, 부수사건 소송대리 200건 수행을 예상하여 예산을 산출하였다. 그러나 2020년 온라인 신청 시스템 개시, 채무자대리인 지원 시 소득요건 폐지 등 지원제도 개선과 최근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의 증가로 인해 2021년 채무자대리인 선임 신청건수가 4,747건으로 목표 건수를 초과하였다. 신청 건수 증가에 따라 2021년 7월에 이미 보조금 6억 400만원 전액을 공단에 지급하였으며, 2021년 말 기준 3억 5,300만원의 보조금 미지급액이 발생하였다.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제도 변천과정]

시기	주요내용				
2020. 1.	◦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제도 시행				
2020. 4.	◦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온라인 신청 시스템 개시				
2020. 8.	◦ 상담구조 트랙 신설 * 전담 변호사를 지정, 1회성이 아닌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법률조력·상담을 통해 법률구제 실시(중전의 무료법률상담과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 등록대부업 피해 관련 지원대상 확대				
	구 분	당초		변경	
		미등록대부	등록대부	미등록대부	등록대부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원지원	중위소득 125% 이하	전원지원	전원지원	
소송대리	중위소득 125% 이하	중위소득 125% 이하	중위소득 125% 이하	중위소득 125% 이하	

자료: 금융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1년도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예산 산출내역 및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산출근거	발생액	교부액	미지급액
부수사건 소송대리	76	625건(고금리피해자 신고건수) × 75%(저신용자 비중) × 40%(소송의사자비중) × 38만원	5	76	△71
송달료 등 실비	63	1,775건 × 35.5천원	0.1	63	△63
홍보비	150	라디오, 대중교통, 포스터 등	150	150	0
계	604	-	957	604	353

자료: 금융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1년도 채무자대리인 선임 및 소송대리 추진목표 및 실적]

(단위: 건)

구 분	채무자대리인 선임			소송대리		
	목표	신청(착수)	지원(완료)	목표	신청(착수)	지원(완료)
2021년	1,575	4,747	3,258	200	30	21

자료: 금융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예비비 확보 방안을 협의하였으나, 「국가재정법」상 예비비 편성목적<sup>3)</sup>인 예측할 수 없는 예산초과지출 또는 예산 외 지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예비비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이에 보조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3) 「국가재정법」

제22조(예비비) ①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목적용 지정해 놓은 예비비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사업의 중단없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2021년 10월~11월 보조사업자인 공단과 협의를 거쳐 보조금 지급 시기를 지원 결정사에서 지원 종료시로 변경하였다.<sup>4)</sup> 금융위원회는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6개월간 지원하므로, 지급시기 변경에 따라 2021년 하반기 비용은 2022년에 지급하게 되어 2021년 미지급금 3억 5,300만원은 2022년 4월 및 6월에 전액 교부하였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sup>5)</sup>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근거하여 보조사업 역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이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보조금 지급시기를 지원 종료시로 변경하여 하반기 보조금 집행액을 차년도에 지급하는 것은 예외적인 보조금 지급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사업 안정화 및 계속사업성이 인정됨에 따라 보조금 지급 시기 기준을 변경하였으나 2021년도 하반기 당시 보조금 부족으로 인한 변호사 보수 등 부담을 단기간 공단에 지운 것이라고 보여진다.

또한, 2022년 6월말 기준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이 완료된 건수는 2,329건이며, 2022년 말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완료 건수는 산술계산상 4,658건으로 2021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근 불법사금융 신고접수가 증가하는 추세임을 고려하면 채무자대리인 선임 및 소송대리 신청 및 지원건수가 증가할 수 있다.

4) 「채무자대리인 선임사건 운영지침(대한법률구조공단 내부규정, 2020. 8. 21. 개정)」 제14조(비용상환 등) ① 이사장 또는 지부장 등은 사건이 종료된 경우 지체 없이 비용부담에 대한 상환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변호사보수에 대하여는 구조결정 후 지체 없이 상환결정 하여야 한다. 「채무자대리인 선임사건 운영지침(2021. 10. 25. 개정)」 제14조(비용상환 등) ① 이사장 또는 지부장 등은 사건이 종료되면 지체 없이 지출한 비용과 변호사 보수에 대한 상환결정을 하여야 한다.

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20~2022년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및 소송대리 실적]

(단위: 건)

구 분	채무자대리인 선임		소송대리	
	신청(착수)	지원(완료)	신청(착수)	지원(완료)
2020	893	74	22	8
2021	4,747	3,258	30	21
2022. 6월말	1,891	2,329	12	11

자료: 금융위원회

[불법사금융 신고 접수 현황]

(단위: 건)

구 분	미등록 대부	고금리	채권추심	기타	계
2016	2,306	1,016	2,465	2,257	8,044
2017	2,818	787	719	1,613	5,937
2018	2,969	518	569	974	5,030
2019	2,464	569	402	1,551	4,986
2020	3,368	1,219	580	2,183	7,350
2021	4,163	2,255	870	1,951	9,239

자료: 금융위원회

실제로 2022년 6월말 기준 보조금 지급 현황을 보면, 2022년도 예산액 11억 4,400만원 중 2021년 미지급액 3억 5,300만원 및 2022년 상반기 5억 5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미교부된 잔액이 2억 8,600만원에 불과하다. 2022년 상반기 채무자대리인 선임 및 소송대리 실적을 감안할 때 2022년에도 보조금 부족에 따른 미지급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2022년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 보조금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예산액	교부액 (2022. 6월말 기준)		보조금 잔액
		2021년분 <sup>1)</sup>	2022년분	
맞춤형 법률상담 및 채무자대리인 변호사 보수	1,005	353	401	251
부수사건 소송대리	8	0	6	2
송달료 등 실비	131	0	98	33
계	1,144	353	505	286

주: 1) 2021년도 채무자대리인·소송대리 변호사 선임 구조결정 기준

1. 교부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최근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실적 등을 바탕으로 연간 수요 예측의 정확도를 제고하여 동 사업 예산규모를 적정하게 편성함으로써 미지급금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 가. 현 황

팩토링금융 사업<sup>1)</sup>은 신용보증기금이 상거래 매출채권을 매입하면서 판매기업에 자금을 제공하고, 매출채권 만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회계연도 계획현액 397억 5,000만원 중 202억 4,000만원을 집행하고 195억 1,0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1회계연도 팩토링금융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계획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팩토링금융	39,750	39,750	-	-	39,750	20,240		19,510

자료: 금융위원회

기업 간 상거래에서 자금 지급이 물품·용역 제공 시기와 불일치할 경우 판매기업에 대금 제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매출채권보험제도<sup>2)</sup>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sup>3)</sup>가 주로 이용되었다. 그러나 매출채권보험은 순수 손해보장 제도로 매출채권을 유동화(현금화)하는 기능이 없으며,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은 판매기업에 대한 상환청구권 행사가 가능함에 따라 구매기업이 부도될 경우 판매기업에 대해 상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연쇄부도를 초래하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세계 주요국가들은 매출채권을 활용한 팩토링(factoring) 제도를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 팩토링은 매출채권을 팩터(factor)가 매입하여 판매기업에 자금을 제공하고 채권만기일에 팩터가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제도로 상환

김윤성 예산분석관(kimys1001@assembly.go.kr, 6788-4623)

- 1) 코드: 신용보증기금 2431-314
- 2) 판매기업이 외상으로 물품을 납품하고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으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손실을 보상해 주는 제도
- 3) 구매기업이 물품 구매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대신, 판매업체가 그 어음(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는 제도

청구권이 없는 방식과 상환청구권이 있는 방식으로 운용이 가능하다. FCI(Factors Chain International)<sup>4)</sup>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세계 팩토링시장은 약 4,194조 원 규모이며 우리나라 시장규모는 국내 기준 22.2조원<sup>5)</sup>으로 이제 성장하기 시작한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2020년 4월에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2021년부터 팩토링금융을 제공하였으며, 2021년 12월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의 고유업무가 되었다.<sup>6)</sup>

신용보증기금의 팩토링금융 서비스는 구매기업에게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발행한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을 인수하면서 해당 판매기업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매출채권 만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신용보증기금이 매입한 매출채권은 상환청구권이 없는데, 이는 만기일에 구매기업의 지급불능으로 인해 신용보증기금이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판매기업에게는 상환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신용보증기금이 판매기업을 대신하여 구매기업의 결제 지연 및 연쇄부도 등의 신용위험을 부담함으로써 판매기업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의의가 있다.

4) 세계 최대 팩토링협회로, 90개국 400개 회원사 참여

5) 2021년말 163억 8,700만 유로(환율 1,355.76원 적용)

[참고] 주요 국가 팩토링 규모

(단위: 백만유로)

구분	2018		2019		2020		2021	
	Total	Domestic	Total	Domestic	Total	Domestic	Total	Domestic
미국	87,821	72,100	83,757	77,953	64,150	62,500	94,300	90,000
영국	320,193	292,222	328,966	303,946	272,677	251,675	328,429	306,495
중국	411,573	371,784	403,504	363,154	433,162	389,845	469,575	397,212
일본	49,348	42,135	49,446	48,143	51,255	49,845	58,666	57,000
한국	25,645	16,413	26,927	17,233	25,604	16,387	25,604	16,3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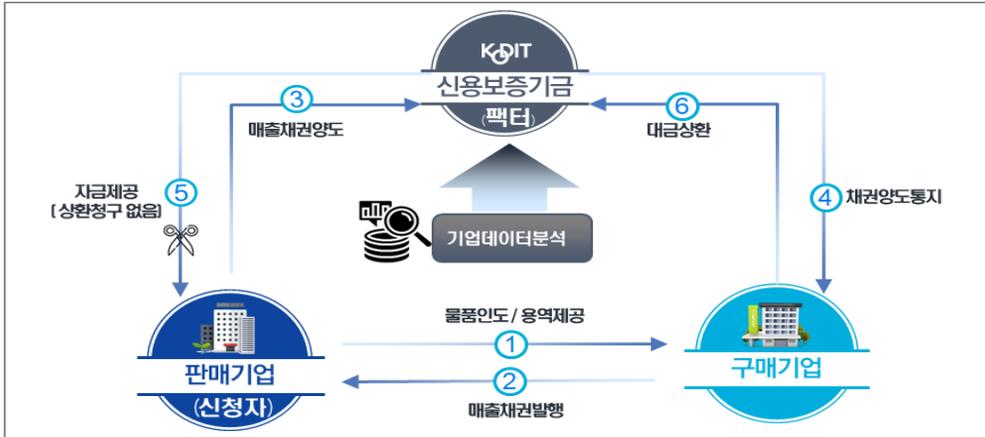
자료: FCI, 「Annual Review 2022」

6)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업무) ① 기금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의3.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팩토링 운용

[팩토링금융 운용 구조]



자료: 신용보증기금

팩토링금융 대상채권은 결제기일이 30일 이상 90일 이하인 매출채권으로, 대상기업은 구매기업의 경우 상장기업 또는 감사 적정의견을 받은 외감기업 중 신용도가 보통 이상인 기업이며 판매기업은 구매기업의 관계기업이 아니면서 구매기업과 6개월 이상 계속 거래 중인 신용도 보통 이하 등급의 중소기업이다. 기업당 팩토링 매입한도는 구매기업 최고 30억원, 판매기업 최고 100억원 이내에서 기업의 신용등급 및 매출액 등을 반영하여 한도에 차등을 두어 운용 중이다.

[팩토링금융 지원대상 기업 요건]

구 분	구매기업	판매기업
대상채권	결제기일이 30~90일인 매출채권	
대상기업	상장기업 또는 감사 적정의견을 받은 외감기업 중 신용도가 보통 이상인 기업	구매기업의 관계기업이 아니면서 구매기업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래 중인 신용도 보통이하 등급 이상인 중소기업
매입한도	최고 30억원 (신용등급 등에 따라 한도 상이)	최고 100억원 (매출액 규모별, 구매기업 신용도별 한도 상이)

자료: 신용보증기금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1년 팩토링금융은 기본재원 100억원을 바탕으로 회전별 매입한도 100억 원 이내로 운용하여 4회전에 연간 397.5억원<sup>7)</sup> 공급을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2021년말까지 47개 구매기업에 대하여 44개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을 양도받아 총 202.4억원을 공급하였다.

[2021년 팩토링금융 공급실적]

(단위: 백만원, 개)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공급 실적	-	-	58	136	136	1,063	2,384	5,117	11,610	13,216	16,173	20,240
판매 기업	-	-	1	2	2	6	9	18	41	42	44	44
구매 기업	-	-	1	1	6	6	8	16	29	35	47	47

자료: 신용보증기금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나. 분석의견

신용보증기금의 대상기업 범위가 중소기업으로 축소된 반면, 2022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보증기금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팩토링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영역에서도 중소기업 대상 매출채권 팩토링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신용보증기금은 민간영역을 구축하지 않으면서 효과적으로 팩토링 금융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21년 신용보증기금이 혁신금융서비스로 팩토링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당시에는 판매기업의 범위가 중소기업·중견기업이었으나 2022년 4월부터는 개정법률<sup>8)</sup>에 따라

7) 100억원 × 4회전 - 할인수수료 2.5억원(연 2.5% 적용)

8) 「신용보증기금법」

23조의5(중소기업팩토링 운용) ① 정부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중소기업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자”라 한다)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자가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매입하여 해당 중소기업자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매출채권 만기일에 채무자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업무(이하 “중소기업팩토링”이라 한다)를 신용보증기금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중소기업팩토링 운용규모,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자로 축소되었다. 신용보증기금은 2021년에는 시범사업으로 실시함에 따라 사업 착수 과정에서 실적이 저조한 측면이 있었으나, 2022년에는 596억원 제공을 목표로 하여 2022년 6월말 공급액이 291억원이므로 실적이 양호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2022년부터 기술보증기금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팩토링금융을 제공하게 되었다. 각 기관에서는 대상 기업의 신용등급 및 업역이 다르다는 의견이나 신용등급 구간 상 중복성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지원대상 중복 여부에 대하여 현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신청 시 체크리스트에 중복 수혜 여부를 자가진단하고 허위로 기재 시 1년간 팩토링 신청이 제한되는 것 외에는 별도의 중복 방지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팩토링금융 비교]

구 분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상채권	결제기일이 30~90일인 매출채권	결제기일이 30~90일인 매출채권	신청일자 전월 1일 이후 발생한 1천만원 이상의 전자세금계산서
판매기업	신용도 보통이하 등급(신용보증기금의 유효신용등급 AR14) 이상인 중소기업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 * 기보의 기술평가결과 기술사업평가등급이 BB등급 이상이고, 기술사업성장등급이 G8등급 이상인 기업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 * BB등급 이상 기업, 코스닥 상장기업, 중진공 신용등급 최상위(CR1) 등급기업, 자본 200억원 또는 자산 700억원 초과기업 제외
매입한도	구매기업: 최고 30억원 판매기업: 최고 100억원	구매기업 · 판매기업: 최고 30억원	구매기업: 최고 30억원 판매기업: 최고 10억원
매출채권 매입계획	596억원	400억원	375억원

자료: 신용보증기금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팩토링금융 신청 자가진단 목록]

1. 지원제외 업종 영위 기업	지원제외 업종 확인	<input checked="" type="radio"/> 해당	<input type="radio"/> 미해당
2. 휴폐업중인 기업		<input checked="" type="radio"/> 해당	<input type="radio"/> 미해당
3. 세금제납중인 기업		<input checked="" type="radio"/> 해당	<input type="radio"/> 미해당
4. 다음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input checked="" type="radio"/> 해당	<input type="radio"/> 미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 파산 기업(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함)</li> <li>- 중진공 및 금융권의 대출금을 연체중인 기업</li> <li>-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제3차 부당개입 등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신청</li> <li>- 최근 3년 이내 사업장 임대 등 정책자금 지원시설의 목적 외 사용</li> <li>- 최근 1년 이내 약속어음 감축 특약 미이행</li> <li>- 최근 3년 이내 중기부 소관 정부연구개발비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용으로 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된 기업</li> <li>-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li> <li>-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li> <li>- 최근 3년 연속 '이자보상배(비)를 1.0미만'이고, 3년 연속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인 기업'(단,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과 R&amp;D투자금액이 모두 전년도 대비 2.5% 이상 증가한 기업은 예외)</li> </ul>			
5. 신청 예정인 매출채권이 동일기업집단간 거래여부		<input checked="" type="radio"/> 해당	<input type="radio"/> 미해당
<b>동일기업집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기업과 개인기업 : 대표자(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가 동일인인 경우</li> <li>- 개인기업과 법인기업 : 개인기업의 대표자(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가 법인의 출자 지분 또는 발행 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분사기업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li> <li>- 법인기업과 법인기업 : 출자지분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동일주주 지분의 합이 각각 30% 이상인 경우 또는 한 법인이 다른 법인의 출자지분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분사기업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li> <li>- 그 밖에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자가 동일인인 경우</li> </ul>			
6.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등 타금융권 팩토링 사용 매출채권여부		<input checked="" type="radio"/> 해당	<input type="radio"/> 미해당
7. [판매기업에 한함] 다음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구매기업은 미해당 체크)		<input checked="" type="radio"/> 해당	<input type="radio"/> 미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확인서상 소상공인으로 확인된 기업(단, 제조업 소상공인은 지원가능)</li> <li>- 유가증권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용평가 회사의 BB등급 이상 기업(단,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은 상장 후 3년까지 예외)</li> <li>-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 등급(CR1)</li> <li>-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기업</li> </ul>			

자료: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hp.kosmes.or.kr](http://hp.kosmes.or.kr))

또한, “어음제도 개편 및 혁신금융 활성화”<sup>9)</sup> 정책의 일환으로 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부가 공동으로 매출채권 팩토링을 추진하였음에도 전체 정책금융기관의 팩토링 공급목표 및 기관간 배분규모 등에 대해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도 2019년부터 매출채권 팩토링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2019년 지정받은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가 빅데이터를 활용해 매출의 진위 여부와 예측부도율 등의 자료를 제공하면 금융회사가 이를 바탕으로 심사하여 일정

9) 관계부처,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납품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어음제도 개편 및 혁신금융 활성화’ 발표”

할인율로 매출채권을 매입하는 체계로, 민간사업자 및 시중은행 등이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중소기업 매출채권 팩토링 서비스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신용보증기금 뿐만 아니라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민간부분이 중소기업의 매출채권 팩토링금융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팩토링금융 서비스가 시장에 안착되고 판매 중소기업이 구매기업의 결제지연 및 연쇄부도 등의 신용위험과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정책금융기관 모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대상기업이 일부 중복되는데, 팩토링 중복 지원이 발생할 경우 기금 집행의 비효율성이 유발될 수 있다. 또한 민간에서도 팩토링금융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민간영역을 구축하지 않는 한도에서 효과적으로 팩토링 시장을 성장시키고 팩토링금융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가. 현 황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이하 '주택연금계정')의 담보 설정비용 사업<sup>1)</sup>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담보설정 시 발생하는 등록면허세 및 제반비용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 계획액에 신탁방식 신규설정과 저당권 방식에서 신탁방식으로 전환 설정비용으로 계상된 17억 1,700만원 중 5억 7,900만원을 집행하고 11억 3,8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1회계연도 담보설정비용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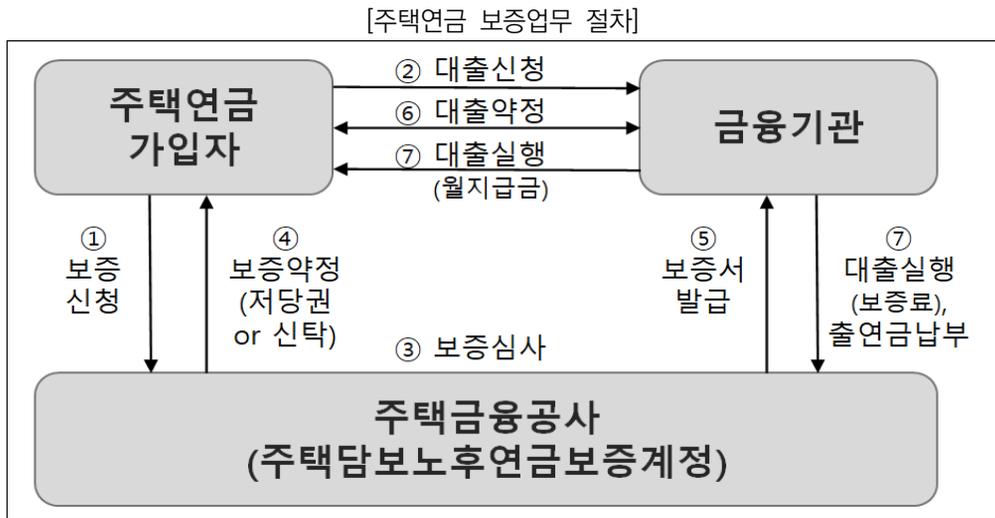
사업명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담보설정 비용	1,747	1,717	-	-	1,717	579	-	1,138

자료: 금융위원회

주택담보노후연금(이하 '주택연금')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나 노후소득이 부족한 55세 이상 고령자들이 자기 집에 계속 살면서 종신까지 또는 일정기간 매월 연금 형식으로 지급받는 장기주택저당대출(역모기지론)을 의미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는 2007년부터 주택연금에 대한 보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가입자가 공사의 보증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받은 뒤 시중 금융기관에서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이 실행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김윤성 예산분석관(kimys1001@assembly.go.kr, 6788-4623)

1) 코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2631-305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사와 주택연금가입자 간 담보취득방식에는 저당권 설정방식과 신탁방식이 있다. 저당권 설정방식은 가입자가 담보주택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공사는 저당권만을 취득하는 방식이며, 신탁방식은 가입자와 공사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담보주택의 소유권을 신탁등기를 통해 공사에 이전하는 방식이다. 주택연금은 당초 저당권 설정방식으로만 운영되었으나 2020년 12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sup>2)</sup>에 따라 2021년 6월 신탁방식 주택연금이 도입되었다.

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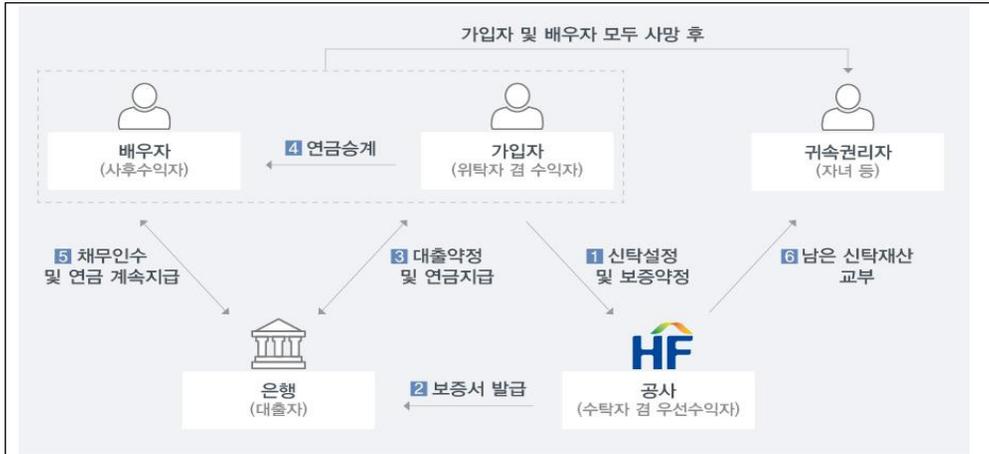
8의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이란 주택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 설정 또는 주택소유자와 공사가 체결하는 신탁계약(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를 수익자로 하되, 공사를 공동수익자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에 따른 신탁을 등기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공사가 계정의 부담으로 보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이어야 하며, 그 연령은 공사의 보증을 받기 위하여 최초로 주택에 저당권 설정 등기 또는 신탁 등기를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제22조(업무의 범위)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9.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 9의2. 제9호와 관련된 신탁

제43조의12(신탁 설정에 대한 특례) 공사가 제22조제1항제9호의2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탁을 설정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탁방식 주택연금 구조]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보증의 담보취득상 저당권 설정방식과 신탁방식의 차이]

구분	저당권 설정방식	신탁방식
담보제공방법 (소유권)	- 근저당권 설정(가입자)	- 신탁등기(공사)
담보주택 관리	- 연금가입자가 담보주택의 소유자로서 관리의 주체	- 연금가입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담보주택 관리의 주체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 승계	- 배우자가 자녀 등 공동상속인의 동의를 얻어 주택소유권을 100% 확보	- 신탁계약에 따라 배우자가 수익권 취득 공동상속인의 동의나 별도 등기절차 없이 승계 가능
잔여재산 귀속	- 담보주택 처분 후 잔여재산은 민법에 따라 법정상속인에게 귀속	- 담보주택 처분 후 잔여재산은 사전에 연금가입자가 지정한 귀속권리자에게 귀속
임대차	- 보증금 있는 임대차 불가 (보증금 없는 월세만 가능)	- 보증금 있는 임대차 가능 * 보증금은 공사가 지정하는 은행에 예치
담보취득비용	- 등록면허세 등 세금, 법무사수수료 등 비용을 가입자가 부담	- 등록면허세 등 세금, 법무사수수료 등 비용을 가입자가 부담하나 저당권 설정방식보다 저렴
담보주택 유형	- 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 - 주거면적이 50%이상인 복합용도 주택	- 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 * 복합용도주택, 농업인·어업인 주택 등 일부 주택 이용 제한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신탁방식 주택연금은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는 경우 연금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승계<sup>3)</sup>되어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확보하는 데 유리할 뿐만 아니라, 주택 일부에 대해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 주택에 대한 가입 및 가입주택에 대한 부분임대도 가능함에 따라 추가적인 노후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신탁방식의 경우 담보취득비용에 약 7천원이 소요되는 등 저당권 설정방식에 비해 등록면허세<sup>4)</sup> 및 지방교육세 등 행정비용이 절감된다.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2021년 기금운용계획에서는 신탁방식 주택연금 신규가입시 담보설정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저당권 설정방식에서 신탁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공사가 담보설정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다.

## 나. 분석의견

**2021년도 담보설정비용 집행이 부진한 것은 주택연금의 저당권 설정방식에서 신탁방식<sup>5)</sup>으로의 전환설정 도입이 1년 이상 지연된 것에 기인하는데, 이는 제도 운영을 면밀하게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여지므로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탁방식 주택연금으로의 전환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수요계층인 고령층 맞춤형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다.**

2021년도 담보설정비용의 집행액은 5억 7,900만원으로, 집행률이 당초 계획 기준 33.1%(수정계획액 기준 33.7%)에 불과하며 특히 신탁방식 전환설정 대상 담보설정비용은 집행되지 않았다. 이는 금융위원회와 공사가 저당권 설정방식에서 신탁방식<sup>5)</sup>으로의 전환제도 도입을 2022년 하반기<sup>5)</sup>로 연기하였기 때문이다.

---

3) 저당권 설정방식의 경우 가입자 사망시 해당 주택의 상속인 모두가 동의해야 배우자가 연금수급권을 승계받을 수 있는데, 가입자 사망시 직계비속 등 공동상속인이 상속권을 주장하여 가입자의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승계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4) 2024년까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에 따라 가입자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는 경우 등록면허세의 75%를 감면하고 있다.

5) 2022. 7. 11. 도입 발표

[2021년도 담보설정비용 사업 계획편성 및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획액 (A)	산출근거	집행액 (B)	B/A
신탁방식 전환설정	1,557	68,395건(2020년말 예상 유지건수) × 13.5%(신탁전환 의향 비율) × {7.2천원(건당 담보설정비용) + 162천원(법무사수수료)}	-	0
기타 <sup>1)</sup>	-	-	99	순증
계	1,747	-	579	33.1

주: 1) 신탁방식 담보관리비용 및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설정비용

1. 계획액은 2021년도 당초 기금운용계획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및 공사는 2021년 6월 출시한 신탁방식 주택연금의 안정화 기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전산시스템 구축, 내규 제·개정 등 제반 업무 준비에 기간이 소요되어 2022년 하반기에 도입하는 것으로 변경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신탁방식 주택연금 제도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을 전제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편성<sup>6)</sup>되었고 공포 후 6개월 뒤인 2021. 6. 9. 시행되었는바 제도 운영방식 검토 및 준비 기간은 충분했다고 보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환 설정 방식 실시가 1년 이상 지연된 것은 제도 운영방식 및 절차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금융위원회 및 공사는 향후 제도 도입 및 운영방식 설계·준비에 있어 실현가능성 및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제도 운영방식 등이 확정된 이후에 기금 운용계획에 관련 비용을 계상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2021년 6월 이후부터 신탁방식 주택연금의 신규가입 건수가 공사의 당초 계획인 연 1,123건보다 많은 2,558건이었다는 측면에서 향후 전환가입이 실시

6) 신탁방식 주택연금 제도 도입 관련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국회에 제출(2020. 9. 3.)된 이후인 2020. 9. 25. 정무위원회 의결 및 2020. 11. 18. 본회의 의결이 되었다.

될 경우 전환 수요가 많아질 수 있다. 따라서 공사는 신탁방식 전환설정 운영에 대해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여 차질없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하고, 수요계층이 고령층인 만큼 접근성 높은 맞춤형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2021년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가입건수	보증규모	관련 담보설정비용
신규가입	2,558	3,646,095	480
저당권→신탁방식 전환가입	-	-	-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 I 결산 개요

## 1 현황

### 가. 세입·세출 결산

2021회계연도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회적참사특조위’)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800만원이며, 전액 수납하였다.

[2021회계연도 사회적참사특조위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0	0	0	8	8	0	0	100.0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사회적참사특조위

2021회계연도 사회적참사특조위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200억 3,500만원이며, 이 중 58.7%인 117억 6,700만원을 지출하고 33억 7,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8억 9,5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21회계연도 사회적참사특조위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5,782	5,782	20,035	11,767	3,372	4,895	58.7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사회적참사특조위

한편, 사회적참사특조위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의 총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 결산 총계와 같다.

김국찬 예산분석관(gckim@assembly.go.kr, 6788-3736)

## 나. 재무 결산

2021회계연도 말 현재 사회적참사특조위의 자산은 15억 700만원, 부채는 4억 8,600만원으로 순자산은 10억 2,100만원이다.

자산은 유동자산 7억 400만원, 일반유형자산 5억 4,600만원, 무형자산 2억 5,8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3억 9,500만원(△20.8%) 감소하였다. 이는 상각으로 인한 무형자산 4억 9,400만원 감소 등에 기인한다.

부채는 유동부채 500만원, 장기충당부채 4억 8,1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3억 7,500만원(337.8%) 증가하였다. 이는 복구충당부채 계상 등에 따른 기타 장기충당부채 3억 7,500만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2021회계연도 사회적참사특조위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회계연도(A)	2020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자 산	1,507	1,902	△395	△20.8
Ⅰ. 유동자산	704	586	118	20.1
Ⅱ. 투자자산	0	0	0	0
Ⅲ. 일반유형자산	546	563	△17	△3.0
Ⅳ. 사회기반시설	0	0	0	0
Ⅴ. 무형자산	258	752	△494	△65.7
Ⅵ. 기타비유동자산	0	0	0	0
부 채	486	111	375	337.8
Ⅰ. 유동부채	5	5	0	0
Ⅱ. 장기차입부채	0	0	0	0
Ⅲ. 장기충당부채	481	106	375	353.8
Ⅳ. 기타비유동부채	0	0	0	0
순 자 산	1,021	1,791	△770	△43.0

자료: 사회적참사특조위

사회적참사특조위는 2021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129억 3,9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 총원가 27억 8,000만원, 관리운영비 101억 6,6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비배분수익 8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32억 1,400만원(△19.9%) 감소한 129억 3,900만원이며, 이는 일반연구개발비 감소 등으로 프로그램 총원가가 24억 8,400만원 감소한 것에 주로 기인한다.

[2021회계연도 사회적참사특조위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회계연도(A)	2020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I. 프로그램순원가(가-나)	2,780	5,264	△2,484	△47.2
가. 프로그램 총원가	2,780	5,264	△2,484	△47.2
나. 프로그램 수익	0	0	0	0
II. 관리운영비	10,166	10,895	△729	△6.7
III. 비배분비용	0	0	0	0
IV. 비배분수익	8	5	3	60.0
V. 재정운영순원가(I+II+III-IV)	12,939	16,153	△3,214	△19.9
VI. 비교환수익 등	0	0	0	0
VII. 재정운영결과(V-VI)	12,939	16,153	△3,214	△19.9

자료: 사회적참사특조위

사회적참사특조위의 2021회계연도 기초순자산은 17억 9,1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10억 2,100만원으로 기초 대비 7억 7,000만원(△43.0%) 감소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는 기초 대비 32억 1,400만원 감소한 반면, 순자산 가산항목인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기초 대비 34억 7,400만원 감소하여 순자산 차감항목이 가산항목을 초과하였기 때문이다.

[2021회계연도 사회적참사특조위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회계연도(A)	2020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I. 기초순자산	1,791	2,302	△511	△22.2
II. 재정운영결과	12,939	16,153	△3,214	△19.9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12,169	15,643	△3,474	△22.2
IV. 조정항목	0	0	0	0
V. 기말순자산(I-II+III+IV)	1,021	1,791	△770	△43.0

자료: 사회적참사특조위

1

예비비 과다 신청에 따른 불용 및 이월 최소화 필요

가. 현 황

사회적참사특조위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이 제정(2017. 12. 12.)됨에 따라 독립된 기구로 설립되었다. 사회적참사특조위는 전원위원회 및 4개의 소위원회로 구성되어, 각 소위원회마다 ① 가슴기살균제사건의 발생원인·수습과정·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 규명, ② 4·16 세월호참사의 발생원인 규명 및 사건 당시 정부대응의 적정성 등에 대한 조사, ③ 가슴기살균제사건 및 4·16세월호참사의 피해자 지원대책 마련, ④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재해·재난 예방 및 대응 방안 마련 등의 활동을 수행하였다.

[사회적참사특조위의 소위원회별 주요 활동 내용]

소위원회	주요 활동 내용
가슴기살균제사건 진상규명 소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상규명·피해지원·제도개선 연계</li> <li>· 직권조사 사건 관련 업무 수행</li> <li>· 이의신청에 따른 신청사건 처리</li> </ul>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소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16세월호참사의 원인 규명</li> <li>· 구조·구난 작업 및 정부대응의 적정성 조사</li> <li>· 세월호 선체에 대한 정밀조사 및 인양과정 점검</li> <li>· 세월호 유류품에 대한 정밀조사·분석·관리</li> </ul>
안전사회 소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li> <li>· 국가의 재난안전관리 개혁방안 마련</li> <li>·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체계 구축</li> <li>· 해양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방안 마련</li> </ul>
지원 소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재해에 대한 피해지원 제도 조사·분석</li> <li>· 가슴기살균제사건 피해 지원대책 마련</li> <li>· 4·16세월호참사 피해 지원대책 마련</li> </ul>

자료: 사회적참사특조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김국찬 예산분석관(gckim@assembly.go.kr, 6788-3736)

사회적참사특조위는 2018. 12. 21. 진상규명 조사개시를 결정한 이후 사회적 참사진상규명법 제7조<sup>2)</sup>에 따라 2019. 4. 23. 사회적참사특조위 의결로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함으로써 2020. 12. 20. 에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개정안<sup>3)</sup>이 2020. 12. 22. 국회에서 의결되면서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2022. 6. 10. 까지로 변경되었다. 이후 사회적참사특조위 사무처가 위원회의 잔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2022. 9. 10. 까지 존속할 예정이다.

한편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개정안 통과로 위원회 활동기간이 연장되던 때에 사회적참사특조위의 2021회계연도 예산은 잔존사무 처리에 필요한 약 3개월분의 예산만 편성되어 있었다. 이에 사회적참사특조위는 ① 2021회계연도 예산 편성 시에는 2020. 12. 22.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개정안 의결에 따른 활동기간 연장을 미리 예측할 수 없었던 점, ② 2021회계연도 예산에는 3개월분의 인건비 등만 편성되어 임금체불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활동기간 내 조사를 완료하여야 하므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점, ③ 사회적참사특조위 내부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전무한 점 등을 제시하면서, 133억 7,460만원 규모의 예비비 사용을 2021. 4. 20. 에 신청하였다. 이후 기획재정부의 심사, 국무회의의 심의 및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2021. 5. 12. 에 신청 내용 그대로 예비비 사용 규모가 확정되었다.

[회계연도별 사회적참사특조위 세출예산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회계연도	세출예산액(A)		예산결정 후 증감액(B)		예산현액 (C=A+B)	집행액 (D)	집행률 (D/C)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전년이월	예비비					
2018	0	0	0	11,794	11,794	6,664	56.5	2,152	2,977
2019	20,785	20,785	2,152	0	22,937	15,235	66.4	2,447	5,256
2020	17,978	17,978	2,447	0	20,425	14,783	72.4	878	4,764
2021	5,782	5,782	878	13,375	20,035	11,767	58.2	3,372	4,895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사회적참사특조위

- 2)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법률 제15213호, 2017. 12. 12. 제정)  
제7조(위원회의 활동기간) 위원회는 최초로 제25조에 따른 조사개시 결정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3)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법률 제17751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7조(위원회의 활동기간 및 국회 보고) ① 위원회는 최초로 제25조에 따른 조사개시 결정이 있는 날부터 2022년 6월 10일까지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 나. 분석의견

2021년 사회적참사특조위에 사용 승인된 예비비의 47.5%만이 연내 집행되었는바, 정부는 향후 예비비 사용 규모를 결정할 때 지출 소요를 면밀히 고려한 후 가급적 연내 집행함으로써 이월 또는 불용을 최소화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의결로 인한 조사기간 연장은 2021회계연도 예산 편성 시에 미리 예측할 수 없었으므로, 정부가 사회적참사특조위의 예비비 사용을 승인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예비비 133억 7,460만원 중 63억 5,500만원(47.5%)만이 연내 집행되었고 29억 5,400만원(22.1%)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되었으며 나머지 40억 6,560만원(30.4%)은 불용 처리되었다.

[사회적참사특조위 세부사업별 2021년 예비비 편성 및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편성액(A)	집행액(B)	집행률(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인건비(총액)	4,372	2,939	67.2	0	1,433
기관운영 기본경비 (총액·비총액)	2,645	2,181	82.5	0	464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조사	150	0	0.0	22	128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5,055	696	13.8	2,575	1,784
안전사회 건설	549	339	61.7	121	88
피해자 지원대책 수립	389	123	31.6	236	30
청문회 개최 지원 및 자료 검증	108	0	0.0	0	108
대국민 소통 강화	107	76	71.0	0	31
합 계	13,375	6,355	47.5	2,954	4,066

자료: 사회적참사특조위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사회적참사특조위는 예비비 미집행액의 발생 사유로 ① 예비비가 5월 이후에 배정되어 사업 집행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하였고, ② 코로나19 사태 악화로 피해자 면담·청문회 등 회의 진행·용역계약 추진 등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절차가 2022년 이후까지 지연되었으며, ③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홍보 사업을 비롯한 일부 사업을 수행할 수 없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예비비(豫備費)는 예산을 편성할 때 미리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용도미정비의 재원으로,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청 후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가 작성한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도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 요구에 앞서 연도 중에 시급하게 지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하며, 예비비를 집행함에 있어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예비비 사용 규모를 결정할 때 지출 소요를 면밀히 고려하여 이월 또는 불용을 최소화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I 결산 개요

## 1 현 황

### 가. 세입·세출 결산

2021회계연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42억 8,400만원이며, 179억 8,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89.1%인 160억 2,600만원을 수납하고 19억 5,400만원을 미수납하였다.

[2021회계연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4,284	4,284	4,284	17,980	16,026	1,954	0	89.1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1회계연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368억 4,200만원이며, 이 중 96.5%인 355억 4,000만원을 지출하고 12억 4,9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21회계연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36,842	36,842	36,842	35,540	52	1,249	96.5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의 총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 결산 총계와 같다.

김국찬 예산분석관(gckim@assembly.go.kr, 6788-3736)

## 나. 재무 결산

2021회계연도 말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자산은 29억 4,700만원, 부채는 18억 5,200만원으로 순자산은 10억 9,500만원이다.

자산은 유동자산 13억 8,100만원, 일반유형자산 7억 9,600만원, 무형자산 7억 7,0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년 대비 7억 7,600만원(35.7%) 증가하였다. 이는 미수제재금수익 증가 등에 따른 유동자산 7억 9,200만원 증가, 소프트웨어 신규취득 등에 따른 무형자산 7,900만원 증가에 기인한다.

부채는 장기충당부채 18억 5,200만원이며, 전년 대비 18억 4,600만원(30,766.7%) 증가하였다. 이는 소송충당부채 등의 발생에 기인한다.

[2021회계연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회계연도(A)	2020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자 산	2,947	2,171	776	35.7
Ⅰ. 유동자산	1,381	589	792	134.5
Ⅱ. 투자자산	0	0	0	0
Ⅲ. 일반유형자산	796	891	△95	△10.7
Ⅳ. 사회기반시설	0	0	0	0
Ⅴ. 무형자산	770	691	79	11.4
Ⅵ. 기타비유동자산	0	0	0	0
부 채	1,852	6	1,846	30,766.7
Ⅰ. 유동부채	0	0	0	0
Ⅱ. 장기차입부채	0	0	0	0
Ⅲ. 장기충당부채	1,852	6	1,846	30,766.7
Ⅳ. 기타비유동부채	0	0	0	0
순 자 산	1,095	2,165	△1,070	△49.4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1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378억 7,2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 총월가 222억 7,800만원, 관리운영비 150억 5,300만원, 비배분비용 19억 9,2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비배분수익 14억 5,0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월가(프로그램순월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 대비 261억 2,700만원 순증하였다. 이는 인건비, 출연비, 보조비 등의 증가로 프로

그럼 총원가가 158억 4,600만원 증가한 것과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의 증가로 관리운영비가 102억 3,100만원 증가한 것에 주로 기인한다.

프로그램순원가는 단일 프로그램인 개인정보보호 프로그램 222억 7,753만원이며,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120억 1,464만원과 경비 30억 3,795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대손상각비 1억 3,496만원, 이자비용 367만원 및 기타비용 18억 5,3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1회계연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회계연도(A)	2020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I. 프로그램순원가(가-나)	22,278	6,432	15,846	246.4
가. 프로그램 총원가	22,278	6,432	15,846	246.4
나. 프로그램 수익	0	0	0	0
II. 관리운영비	15,053	4,822	10,231	212.2
III. 비배분비용	1,992	491	1,501	305.7
IV. 비배분수익	1,450	0	1,450	순증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37,872	11,745	26,127	222.5
VI. 비교환수익 등	0	0	0	0
VII. 재정운영결과(V - VI)	37,872	11,745	26,127	222.5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2021회계연도 기초순자산은 21억 6,500만원이고, 기말 순자산은 10억 9,500만원으로 기초 대비 10억 7,000만원(△49.4%) 감소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는 전년 대비 261억 2,700만원 증가한 반면, 순자산 가산항목인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전년 대비 233억 1,100만원 증가하여 순자산 차감항목이 가산항목을 초과하였기 때문이다.

[2021 회계연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회계연도(A)	2020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I. 기초순자산	2,165	420	1,745	415.5
II. 재정운영결과	37,872	11,745	26,127	222.5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36,801	13,490	23,311	172.8
IV. 조정항목	0	0	0	0
V. 기말순자산(I - II + III + IV)	1,095	2,165	△1,070	△49.4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안전한 개인정보, 신뢰하는 데이터 시대’를 2021회계연도 비전으로 설정하고, ① **국민이 신뢰하는 확실한 개인정보 보호**, ② **데이터 가치를 높이는 안전한 활용**, ③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고도화** 등을 위한 사업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21회계연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출연·피보조기관이 직접 수행하지 않고 용역계약 등으로 수행한 출연·보조사업의 내용을 검토 후, 성격상 피출연·피보조기관의 전문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직접 용역계약을 수행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미수납액에 대해 다양한 징수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체납액의 효율적 징수를 도모하는 한편, 징수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체납액에 대해서는 불납결손 처분을 검토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 가. 현 황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행정안전부의 공공·민간 분야, 방송통신위원회의 온라인 분야, 금융위원회의 상거래 조사·처리 분야로 각각 분산되었던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통합하여 2020년 8월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개편되었으며, 개편 과정에서 주요사업비 기준 행정안전부 소관 3개 세부사업과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1개 세부사업의 예산을 이관받았다.<sup>1)</sup>

한편 이관 대상 사업 중 출연 또는 민간보조 등의 방법으로 수행되었던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관 과정에서 해당 사업들의 시행방법에 대한 변경점은 없었다. 그 결과 이관 전 출연 또는 민간보조 등의 방법으로 수행되었던 사업은 이관 후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2021회계연도 예산액 중 위원회 운영지원비, 인건비 및 기본경비를 제외한 예산액은 194억 7,600만원이다. 이 중 출연사업의 예산액과 보조사업의 예산액은 각각 190억 300만원(97.6%)과 4억 3,000만원(2.2%)이며, 위원회에 의해 직접 수행된 사업의 예산액은 4,300만원(0.2%)에 불과하다.

출연사업의 경우 예산액 190억 300만원 중 개인정보유출 및 오남용방지(정보화) 사업에서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을 목적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5억 600만원을 출연하였고, 나머지 184억 9,700만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출연하였다. 보조사업의 경우 예산액 4억 3,000만원 중 개인정보보호강화(정보화) 사업에서 웹사이트 및 모바일앱 보안서버 구축 모니터링 및 개선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보호협회에 3억 5,000만원을 보조하였고, 동 사업에서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장제

김국찬 예산분석관(gckim@assembly.go.kr, 6788-3736)

1) 기존 행정안전부 소관 세부사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정보화), 개인정보보호 유출 및 오남용 방지(정보화), 개인정보보호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정보화)  
· 기존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세부사업: 개인정보보호 강화(정보화)

도 홍보를 목적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8,000만원을 보조하였다.

2021회계연도 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세부사업 중 위원회 운영지원비, 인건비 및 기본경비를 제외한 세부사업의 출연 및 민간보조 비중은 다음과 같다.

[2021회계연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세부사업의 출연 및 민간보조 비중]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액	위원회 직접수행 (비중)	출연 (비중)	보조 (비중)
개인정보보호강화(정보화)	7,778	5 (0.1)	7,343 (94.4)	430 (5.5)
개인정보유출 및 오남용방지(정보화)	7,895	28 (0.4)	7,867 (99.6)	-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	1,763	-	1,763 (100.0)	-
기술개발전문인력 양성	1,400	-	1,400 (100.0)	-
개인정보보호 협력체계 구축(정보화)	640	10 (1.6)	630 (98.4)	-
합 계	19,476	43 (0.2)	19,003 (97.6)	430 (2.2)

주: 1. 예산액은 2021년 제2회 추경 기준

2. 개인정보보호강화 사업 보조액 430백만원에는 개인정보보호협회에 보조한 350백만원 및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보조한 80백만원이 포함됨

3. 개인정보유출 및 오남용방지 사업 출연액 7,867백만원에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출연한 506백만원이 포함됨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나. 분석의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출연·피보조기관이 직접 수행하지 않고 용역계약 등으로 수행한 출연·보조사업의 내용을 검토 후, 성격상 피출연·피보조기관의 전문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직접 용역계약을 수행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피출연·피보조기관별 사업 예산액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21회계연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피출연·피보조기관별 사업 예산액 현황]

(단위: 백만원, %)

기관명	예산액	피출연·피보조기관 직접수행 (비중)	용역계약 (비중)
한국인터넷진흥원(출연)	18,497	7,557 (40.9)	10,940 (59.1)
한국지역정보개발원(출연)	506	119 (23.5)	387 (76.5)
개인정보보호협회(보조)	350	350 (100.0)	0 (0.0)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보조)	80	33 (41.2)	47 (58.8)
합 계	19,433	8,059 (41.5)	11,374 (58.5)

주: 예산액은 2021년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출연·보조한 사업의 예산액 중 해당 출연·보조를 받은 기관에 의해 직접 수행된 사업의 예산액의 비중은 41.5%고, 나머지 사업의 예산액은 해당 기관들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별도의 주체에 의해 수행되었다. 용역계약 비중을 기관별로 살펴보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출연받은 184억 9,700만원 중 109억 4,000만원(59.1%)을 용역계약 방식으로 집행하였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출연받은 5억 600만원 중 3억 8,700만원(76.5%)을 용역계약 방식으로 집행하였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보조 받은 8,000만원 중 4,700만원(58.8%)에 대해 용역계약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출연·피보조기관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대신하여 용역계약을 발주할 경우 피출연·피보조기관의 용역계약 관련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피출연·피보조기관이 수행한 용역계약 중, ①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손해배상 책임의무화 정책홍보(80백만원)’, ②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보호 실태 통계조사(60백만원)’, ③ ‘개인정보보호 행사 및 캠페인 운영(80백만원)’ 등의 경우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였을 때 피출연·피보조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단기간 내에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수행방식을 전환하여도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손해배상 책임의무화 정책홍보(80백만원)’ 용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9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실시하여야 하는 조치를 홍보하는 것으로, 방송매체 및 언론 등을 활용한 홍보·SNS 홍보·온라인 퀴즈 이벤트 등을 진행한다. 이와 같은 홍보 사업의 경우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로 보기 어려운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용역계약 수행 과정에서 전문성을 활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보호 실태 통계조사(60백만원)’ 용역은 국민,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 수준과 법 준수현황, 개인정보 관리실태 및 신규 정책 수요 등의 파악을 목적으로 수행되는바, 출연사업을 통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직접 통계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청의 국가통계 대행사업 활용을 추진하는 것이므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용역계약 수행 과정에서 전문성을 활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보호 행사 및 캠페인 운영(80백만원)’ 용역은 개인정보보호의 날 행사 및 관련 캠페인 운영 과정에서 시상식 및 부대행사 진행, 홍보자료 제작 및 홍보전략 수립, 행사 진행을 위한 인력 및 물품 준비, 캠페인 슬로건 등의 개발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업무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로 보기 어려운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용역계약 수행 과정에서 전문성을 활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업 성격상 피출연·피보조기관의 전문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피출연·피보조기관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대신하여 용역계약을 발주할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용역비의 상세 집행 내역을 직접 확인하고 관리하기 어렵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단독으로 직접 용역계약을 수행하는 것에 비해 행정 절차 상 비효율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아닌 피출연·피보조기관에 의해 용역계약이 발주됨으로써 사업설명자료에 명시된 것과 다른 단가로 용역계약이 체결되는 등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 편성의 취지와 실제 사업수행주체의 집행 내역 간 불일치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출연·피보조기관이 직접 수행하지 않고 용역계약 등으로 수행한 출연·보조사업들을 검토 후, 성격상 피출연·피보조기관의 전문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직접 용역계약을 수행하는 것을 검토하되, 피출연·피보조기관의 관련 전문성, 담당 인력 등을 확보할 시간이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단계적·점진적으로 직접수행 전환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가. 현 황

과태료 과목<sup>1)</sup>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sup>2)</sup>에 따라 동법을 위반하거나 이와 관련한 시정명령,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거부 등에 대하여 금전적 납부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항목이며, 가산금 과목<sup>3)</sup>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의2제3항<sup>4)</sup> 및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24조<sup>5)</sup> 등에 따라 과징금 및 과태료 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의무이행을 독촉하기 위해 금전적 납부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항목이다.

2021년도 과태료 예산현액은 15억 4,700만원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중 15억 3,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50.4%인 7억 7,400만원을 수납하고 7억 6,200만원은 미수납하였다.

김국찬 예산분석관(gckim@assembly.go.kr, 6788-3736)

1) 코드: 일반회계 56-563

2)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하 생략)

3) 코드: 일반회계 58-581

4)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의2(과징금 부과 등) ① ~ ② (생략)

③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과징금을 낸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하 생략)

2021년도 가산금 예산현액은 700만원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9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6.8%인 400만원을 징수하고 5,500만원은 미수납하였다.

[2021회계연도 과태료 및 가산금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이체등 증감액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과태료	1,547	1,547	-	1,547	1,536	774	762	-	50.4
가산금	7	7	-	7	59	4	55	-	6.8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나. 분석의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미수납액에 대해 다양한 징수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체납액의 효율적 징수를 도모하는 한편, 징수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체납액에 대해서는 불납결손 처분을 검토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2021회계연도 과태료 및 가산금 미수납액의 기간별 체납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21회계연도 과태료 및 가산금의 체납 기간별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구분		체납 기간						합계
		5년 이상	4~5년	3~4년	2~3년	1~2년	1년 미만	
과태료	부과건수	39 (42.4)	4 (4.3)	10 (10.9)	13 (14.1)	15 (16.3)	11 (12.0)	92 (100.0)
	부과금액	228 (29.9)	43 (5.6)	136 (17.8)	157 (20.6)	131 (17.2)	67 (8.8)	762 (100.0)
가산금	부과건수	29 (38.7)	4 (5.3)	10 (13.3)	13 (17.3)	12 (16.0)	7 (9.3)	75 (100.0)
	부과금액	16.9 (30.5)	12.4 (22.4)	8.6 (15.5)	9.9 (17.9)	4.5 (8.1)	3.1 (5.6)	55.4 (100.0)
합계	부과건수	68 (40.7)	8 (4.8)	20 (12.0)	26 (15.5)	27 (16.2)	18 (10.8)	167 (100.0)
	부과금액	244.9 (29.9)	55.4 (6.8)	144.6 (17.7)	166.9 (20.4)	135.5 (16.6)	70.1 (8.6)	817.4 (100.0)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과태료 및 가산금 미수납액을 체납 기간별로 살펴보면, 미수납 건수의 40.7%, 미수납액의 29.9%가 5년 이상 체납된 것이다. 이와 같이 5년 이상 체납된 미수납액의 비중이 높은 이유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2020. 8. 5.) 이전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다수의 체납 건이 장기 체납된 상태로 이관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과태료의 경우 5년 이상 체납된 건수 중 33.3%, 금액 중 26.8%가 10년 이상 체납된 상황이며, 5년 이상 체납된 건수 중 94.9%, 금액 중 94.3%가 체납자의 거소불명으로 인한 체납인바, 이들 건수에 향후 행정력을 투입하였을 때 징수 가능성이 높은 건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년 이상 체납된 과태료 및 가산금 미수납액의 체납 기간별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구분		체납 기간				합계
		20년 이상	15~20년	10~15년	5~10년	
과태료	부과건수	2 (5.1)	7 (17.9)	4 (10.3)	26 (66.7)	39 (100.0)
	부과금액	4 (1.8)	13 (5.7)	44 (19.3)	167 (73.2)	228 (100.0)
가산금	부과건수	-	-	3 (10.3)	26 (89.7)	29 (100.0)
	부과금액	-	-	3.4 (20.1)	13.5 (79.9)	16.9 (100.0)
합계	부과건수	2 (2.9)	7 (10.3)	7 (10.3)	52 (76.5)	68 (100.0)
	부과금액	4 (1.6)	13 (5.3)	47.4 (19.4)	180.5 (73.7)	244.9 (100.0)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5년 이상 체납된 과태료 및 가산금 미수납액의 체납 사유별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구분		체납 사유		합계
		체납자 거소불명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분할납부	
과태료	부과건수	37 (94.9)	2 (5.1)	39 (100.0)
	부과금액	215 (94.3)	13 (5.7)	228 (100.0)
가산금	부과건수	27 (93.1)	2 (6.9)	29 (100.0)
	부과금액	13.8 (81.7)	3.1 (18.3)	16.9 (100.0)
합계	부과건수	64 (94.1)	4 (5.9)	68 (100.0)
	부과금액	228.8 (93.4)	16.1 (6.6)	244.9 (100.0)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 방문 독촉, 재산 압류 등의 다양한 징수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체납액의 효율적 징수에 만전을 기하되, 징수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에 비해 징수 가능성 등이 현저히 낮을 것으로 판단되는 건에 대해서는 불납결손 계획을 수립하고 체납자 재산조회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불납결손처분의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sup>6)</sup>.

6)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4(결손처분)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15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2.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이 없는 등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5조(과태료의 시효) ①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7조의5(결손처분) ① 법 제24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자가 행방불명되어 「민법」 제27조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체납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는 등 재산이 없어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결산분석시리즈 II  
2021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

발간일 2022년 8월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임익상  
편 집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주)케이에스센세이션 (tel 02-761-0031)

---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http://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ISBN 979-11-6799-062-4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22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http://www.nabo.go.kr)

발 간 등 록 번 호

31-9700460-001471-10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